

서울市 米穀流通改善方案

糧穀都賣市場育成을 중심으로

朱 龍 宰(研究委員)
李 永 錫(責任研究員)
尹 錫 元(研究員)
韓 斗 鳳(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政府糧穀管理의 規模擴大와 二重穀價制는 막대한 糧特赤字를 累積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政府米와 一般米間의 二重價格을 형성함으로써 流通秩序를 교란시키는 등 여러 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 또한, 政府의 糧穀管理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民間流通部門은 크게 萎縮되었고, 특히 糧穀都賣市場은 그의 主要機能인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與件下에서 政府의 지나친 糧穀市場介入은 限界에 달하였으며, 現 米穀流通上의 當面問題點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民間流通部門의 건전한 育成이 요청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써 政府에서는 가락동 綜合農水產物 都賣市場 內에 糧穀都賣市場의 建設을 計劃中에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現 재 米穀流通의 當面問題點을 綜合的으로 分析함으로써 米穀流通의 改善方案을 提示하는 동시에 가락동 綜合都賣市場 內에 糧穀都賣市場建設의 妥當性 檢討와 이의 育成方案을 모색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끝으로 本 研究는 當研究院의 朱龍宰博士 研究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當研究院의 公式見解와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1984. 8.

目 次

要 約	1
-----------	---

第1章 序 論

1. 序 言	26
2. 研究目的	27
3. 研究方法	27

第2章 米穀의 國民經濟的 位置

1. 食生活面	29
2. 農家所得面	30
3. 都市家計面	32
4. 一般物價에 미치는 効果	34

第3章 米穀의 需給, 流通 및 價格動向

1. 米穀消費量 推移 및 展望	36
가. 1人當 米穀消費量 推移	36
나. 米穀의 消費展望	37
2. 米穀의 需給動向	40
3. 米穀의 價格動向	43
4. 米穀의 流通組織 및 經路	51

第4章 서울市 米穀流通現況 및 當面課題

1. 서울市 米穀流通現況	56
가. 商人의 種類 및 分布	56
나. 서울市 米穀消費量 推移 및 展望	59
다. 서울市 米穀流通經路別 米穀搬入量 推定	61
2. 米穀流通의 當面課題	63
가. 政府糧穀管理의 當面課題	63
나. 民間流通部門의 當面課題	71
다. 產地直結去來의 現況 및 當面課題	77
라. 流通下部構造의 脆弱性	84

第5章 糧穀都賣市場 育成方案

1. 糧穀都賣市場 育成의 必要性	92
2. 糧穀都賣市場 建設의 妥當性 檢討	94
가. 糧穀都賣市場의 立地條件	95
나. 糧穀都賣市場의 規模 및 施設	97
다. 糧穀都賣市場建設의 期待效果	101
3. 糧穀都賣市場의 育成方案	103
가. 政府糧穀管理制度의 改善	104
나. 附加價值稅의 免稅	105
다. 政府米의 糧穀都賣市場 放出	107
라. 農協의 系統出荷 強化 및 一般米 收買擴大	107
마. 糧穀都賣市場 下部構造改善	109
바. 產地都賣·小賣組織과의 連繫對策	111
사. 糧穀都賣市場의 運營體系 및 去來秩序의 確立	114

第6章 糧穀都賣市場의 管理 및 運營體系

1.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의 管理體系 概要	117
-----------------------------------	-----

2. 糧穀都賣市場의 運營主體 및 役割	120
가. 指定都賣人	121
나. 競賣士	121
다. 仲買人	122
3. 糧穀都賣市場의 入住業體 選定	123
가. 指定都賣人	123
나. 仲買人	130
參考文獻	136

表 目 次

第2章

表 2 - 1	年度別 1人1日當 營養供給量 및 構成比	30
表 2 - 2	年度別 農家所得중 米穀所得比重(戶當平均)	31
表 2 - 3	耕地規模別 農家所得중 米穀所得의 比重, 1982 (戶當平均)	31
表 2 - 4	年度別 家計費중 米穀支出比重(家口當 月平均)	33
表 2 - 5	所得階層別 家計費중 米穀支出比重, 1982	33
表 2 - 6	年度別 米穀의 物價指數 加重值 推移	35

第3章

表 3 - 1	年度別 1人當 年間 米穀消費量 推移, 1970 ~ 83	37
表 3 - 2	쌀 需要函數 計測 結果	38
表 3 - 3	米穀의 需要 展望	39
表 3 - 4	米穀의 自給率 推移	40
表 3 - 5	水稻品種別 段收 및 植付面積 推移, 1975 ~ 83	42
表 3 - 6	年度別 一般米價格 推移, 1970 ~ 83	44
表 3 - 7	年度別 市中 米價 動向, 1960 ~ 83	46
表 3 - 8	年度別 쌀 收買 및 放出價格動向, 1960 ~ 83	47
表 3 - 9	年度別 쌀의 生産, 收買 및 放出量과 一般米 價格振幅 推移, 1960 ~ 83	50
表 3 - 10	米穀의 流通經路別 流通量	53

第4章

表 4 - 1	全國 및 서울시 糧穀商 分布	57
表 4 - 2	서울市 地域別 小賣商 및 農協販賣店 分布	58

表 4 - 3	年度別 서울市 米穀消費量 推移 및 展望	60
表 4 - 4	年度別 流通經路別 서울市 米穀搬入量 推移	62
表 4 - 5	年度別 穀種別 糧特赤字 內譯	64
表 4 - 6	糧特赤字의 要因別 缺損內譯, 1970 ~ 83	64
表 4 - 7	月別, 營農規模別 一般米 出荷比率 (政府收買分 除外)	66
表 4 - 8	年度別 政府糧穀 放出實績, 1978 ~ 83	67
表 4 - 9	年度別 品種別 米穀收買實績, 1977 ~ 83	68
表 4 - 10	年度別 政府米 放出價格과 市中米價 比較, 1978 ~ 83	69
表 4 - 11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一般米 月別 搬入量 推移, 1977 ~ 83	72
表 4 - 12	適正季節價格 振幅率 推定	73
表 4 - 13	서울市 糧穀小賣商들의 主要米價情報 入手處別 分布.....	75
表 4 - 14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	77
表 4 - 15	年度別 서울市 一般米 流通經路別 搬入量 推移	79
表 4 - 16	小賣商의 產地直結去來 選好 理由	80
表 4 - 17	米穀의 流通經路別 마진 (이천 → 서울間, 1984.6.19基準)...	82
表 4 - 18	米穀의 產地直結去來에 대한 制度的 禁止에 관한 小賣商의 反應	83
表 4 - 19	米穀의 產地直結搬入의 制度的 禁止에 대한 反對事由別 小賣商 分布	84
表 4 - 20	小賣商의 等級區分基準別 分布.....	87
表 4 - 21	小賣商의 取扱等級別 分布.....	87
表 4 - 22	小賣商이 年中 취급하는 一般米의 主要產地別 分布	88
表 4 - 23	米穀 包裝單位에 대한 消費者 選好度.....	89

第5章

表 5 - 1	京畿道の 地域別 서울市 쌀 搬入路.....	96
---------	-------------------------	----

表 5 - 2 可樂洞 糧穀都賣市場의 規模 및 施設內譯..... 100

表 5 - 3 可樂洞 糧穀都賣市場 建設工事費 內譯 100

表 5 - 4 農協共販場의 年度別 糧穀取扱 物量 108

第 6 章

表 6 - 1 代案別 指定都賣人의 年間 經營收支 推定結果 126

表 6 - 2 指定都賣人의 年間 運營費用 推定內譯 128

表 6 - 3 代案別 仲買人의 適正取扱物量 및 適正數 推定結果 133

表 6 - 4 瑞草洞 糧穀都賣市場의 委託商 經營收支分析結果
（月間） 134

圖 目 次

第 3 章

圖 3 - 1	米穀의 實質價格 變動推移, 1970 ~ 83.....	45
圖 3 - 2	米價 (都賣價格)의 季節變動 指數, 1960.1 ~ 1983.10 平均	48
圖 3 - 3	米穀流通組織 및 經路	52
圖 3 - 4	米穀의 商人流通經路	54
圖 3 - 5	農協組織을 통한 米穀流通經路	55
圖 3 - 6	政府管理下의 米穀流通經路	55

第 4 章

圖 4 - 1	政府管理 糧穀의 流通經路	68
圖 4 - 2	月別 一般米 都賣價格 및 政府米 放出價格 動向, 1982.11 ~ 1984.5	70

第 5 章

圖 5 - 1	서울市 主要搬入路別 米穀搬入量 推定結果	97
圖 5 - 2	糧穀都賣市場의 長期平均 費用曲線	98

第 6 章

圖 6 - 1	可樂地區 綜合都賣市場 管理・運營體系圖.....	119
圖 6 - 2	糧穀都賣市場 流通體系圖	120

要 約

1. 米穀의 國民經濟的 位置

1) 米穀은 韓國人의 主食糧源으로서 不動의 位置를 점하고 있으며 米價의 安定은 政治, 經濟, 社會的인 安定과 直結되므로 主穀의 安定的 自給과 價格安定은 기필코 달성되어야 할 政策課題이다.

2) 米穀은 國民營養의 供給面에서 아주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예컨대 1982年度 쌀에서 供給되는 에너지는 國民 1人 1日當 1,218kcal로써 全體 에너지供給量(2,588kcal)의 47.1%나 되며, 쌀의 蛋白質 供給量은 全體 蛋白質 供給量의 약 30%나 된다.

3) 우리나라 全體農家の 約 86%가 米作農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1983年 現在 米穀은 農家所得의 26.9%, 그리고 農業所得의 41.4%를 점하고 있다. 耕地規模別로 農業所得 중 米穀所得의 비율을 보면 0.5ha미만의 零細農은 9.2%, 1.0~1.5ha의 農家は 28.2% 그리고 2.0ha以上の 大農의 그것은 40.7%로 規模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4) 都市家口의 家計費支出額 중에서 米穀支出額이 차지하는 比重은 1965年の 28.4%에서 1982년에는 11.4%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米穀이 都賣物價指數에 점하는 加重值 역시 1965年の 105.0에서 1980년에

는 46.1로 크게 감소하였다.

耕地規模別 農家所得中 米麥所得의 比重, 1983 (戶當平均)

單位: 千원

規 模 別	農家所得 (A)	農業所得	米穀所得 ¹⁾ (B)	麥類所得 ²⁾ (C)	B/A%	C/A %
0.5 ha미 만	3,640	1,368	333	37	9.2	1.0
0.5 ~ 1.0	4,402	2,524	893	94	20.3	2.1
1.0 ~ 1.5	5,280	3,712	1,487	110	28.2	2.1
1.5 ~ 2.0	6,316	4,687	2,195	95	34.8	1.5
2.0 이 상	8,016	6,590	3,261	151	40.7	1.9
평 균	5,128	3,331	1,379	93	26.9	1.8

1) 米穀收入×米穀所得率

2) 麥類收入×麥類所得率 (과맥)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 農産物 生産費 調査結果報告」, 1984.

農家所得中 米穀 所得比重, 戶當平均

單位: 千원

年 度 別	農 家 所 得 (A)	農 業 所 得	米穀所得 ¹⁾ (B)	B/A %
1975	872.9	714.8	360.5	41.3
1976	1,156.3	921.2	482.0	41.7
1977	1,432.8	1,036.1	581.1	40.6
1978	1,884.2	1,355.7	648.7	34.4
1979	2,227.5	1,531.3	839.5	37.7
1980	2,693.1	1,754.8	741.3	27.5
1981	3,687.9	2,476.5	1,196.3	32.4
1982	4,465.2	3,031.4	1,381.7	30.9
1983	5,128.2	3,331.0	1,379.0	26.9

1) 年度別 米穀收入에 年度別 米穀所得率을 적용하여 推定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 農産物生産費調査結果報告」, 1984.

5) 米價 10 %의 상승은 都賣物價를 약 0.5 %, 消費者物價를 약 1.3 %, 그리고 消費者家計費를 1.1 % 각각 上昇시킬 것으로 推定된다. 反面에 米穀이 農家所得에 占하는 比率(1983年)은 27%나 되므로 米價 10 % 상승은 農家所得을 약 3 % 증가시킬 것으로 推算된다.

이와 같이 米價가 農家所得에 미치는 效果는 物價나 家計費에 미치는 效果에 비하여 월등히 크므로 쌀收買價格은 새로운 農家所得源이 開發될 때까지는 農家所得面에 보다 重點을 두는 方向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2. 米穀의 需給 및 價格

1) 國民 1人當 年間 쌀消費量은 1970 年의 136.4 kg에서 1976 년에는 120.1 kg으로 감소하였고, 그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136 kg에 달하였으며, 그후에는 감소하여 1983 년에는 127 kg에 이르렀다.

地域別로 보면 非農家の 消費量은 1970 年의 147.6 kg을 頂點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3 년에는 120.1 kg으로 감소한 반면에 農家の 쌀消費量은 年度間에 起伏은 있으나 1970 年의 123 kg에서 1983 년에는 160.0 kg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農家の 쌀消費量 160.0 kg은 거의 最高

年度別 쌀 需要 推定結果

區 分	1983	1986	1991	'86/'83	'91/'83
1 人當 米穀 消費量(kg) ¹⁾	126.9	122.8	116.3	96.8	91.6
食用總消費量(千%) ²⁾	5,068	5,138	5,217	101.4	102.9
非食用總消費量(千%) ³⁾	229	232	236	101.3	103.1
總 消 費 量(〃)	5,297	5,370	5,453	101.4	102.9

1) 1人當 實質所得增加率은 6 %로 假定하였으며 實質價格은 1983 年과 同一한 것으로 假定함.

2) 食用은 1人當消費量에 人口數(經濟企劃院 推定值)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3) 非食用은 1983 년도 食用, 非食用의 比率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水準에 달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農家の 쌀 消費量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米穀의 需要推定을 위하여 지역별 쌀의 所得彈性値를 計測한 結果, 農家は 0.26, 非農家は -0.24로 각각 推定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農家の 쌀消費量은 1983 年の 水準을 上廻할 展望이 희박하므로 農家の 쌀 所得彈性値는 零으로 간주하고 非農家の 그것은 -0.24를 적용하여 쌀의 總需要量을 推定하였다. 本 推定結果에 의하면 쌀의 年間 總消費量은 1986 年に 5,370 千%, 1991 년에는 5,453 %으로 1983 年に 비해 1.4 %와 2.9 %가 각각 增加할 展望이다.

3) 米穀의 自給率은 1970 年に 93.1 %에 그쳤으나 1977 年과 1978 년에는 多收性新品種의 栽培擴大 등으로 한 때 쌀自給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所得向上에 따른 一般米選好傾向과 新品種段收의 不安定性 등으로 新品種의 栽培面積이 激減됨에 따라 쌀自給率은 1982 년에 93.7 %로 하락하였고, 1983 년에는 作況이 비교적 양호하여 쌀自給率은 97.7 %로 거의 自給水準에 접근하고 있다.

米穀의 自給率 推移

單位: 千%, 精穀

米穀年度	生 産 量	需 要 量	自 給 率 %
1970	4,090	4,394	93.1
1975	4,445	4,699	94.6
1977	5,215	5,045	103.4
1978	6,006	5,784	103.8
1979	5,797	6,764	85.7
1980	5,136	5,402	95.1
1981	3,550	5,366	66.2
1982	5,063	5,404	93.7
1983	5,175	5,297	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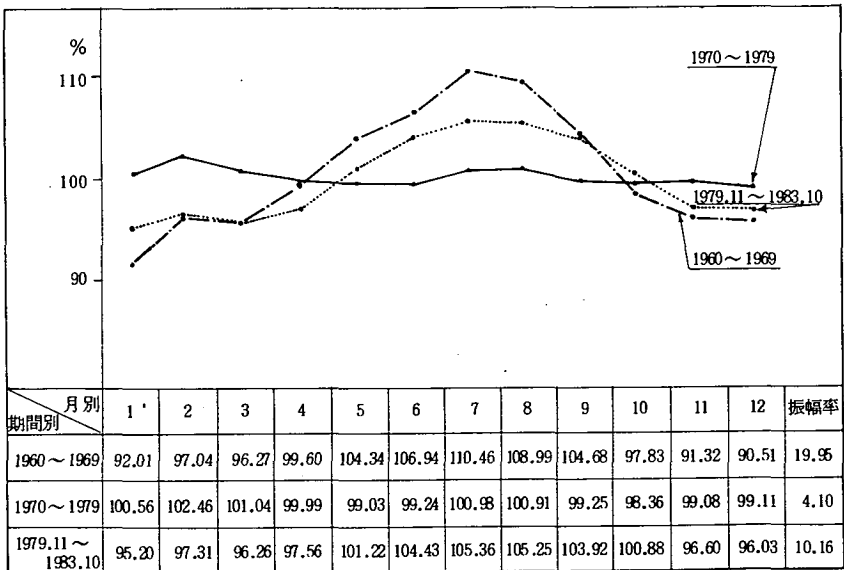
資料: 農水産部, 「糧政資料」

4) 所得向上에 따른 消費者의 一般米選好傾向과 政府糧穀管理의 限界

性 등을 고려할 때 벼品種選擇은 農民의 自律意思에 맡기되, 新品種栽培의 積極한 감소로 인한 쌀自給率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新品種에 대한 優先收買는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消費者의 嗜好에 부합되는 米質이 양호한 새로운 品種의 開發과 在來種의 段收提高에도 보다 注力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米穀流通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一般米의 효율적인 需給 및 價格安定對策도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5) 一般米價格의 季節價格振幅率은 1960~69年사이에는 19.95%나 되었으나, 1970~79年사이에는 4.1%로 크게 緩和되었는데 이는 政府米의 大量搬出과 放出價格의 年中 平準化施策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1980~83年 사이에 米價의 季節價格振幅은 10.2%로 1970年代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所得向上으로 一般米의 選好도가 높아져 政府米의 一般米價格에 대한 調節機能이 弱화된 데 주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政府米만으로는 현재 米穀流通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一般米의 價格安定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一般米에 대한 効率的인 需給 및 價格安定對策도 수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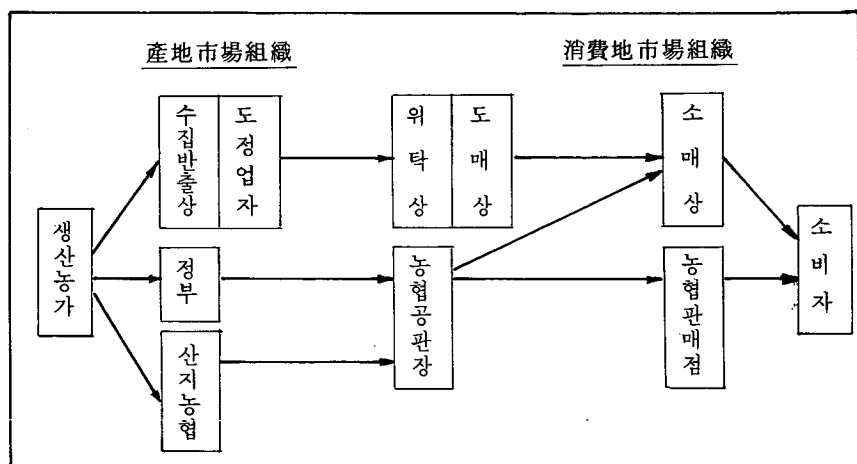
一般米 都賣價格의 季節變動指數



3. 서울시 米穀流通現況

1) 米穀流通組織은 政府管理組織과 民間部門인 自由市場組織으로 大別되며, 自由市場組織은 다시 商人組織과 農協組織으로 區分된다. 즉, 米穀의 流通은 政府, 農協, 商人의 三主體에 의해서 遂行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米穀流通組織 및 經路



2) 서울시의 1人當年間 消費量은 앞으로 所得向上과 더불어 1986년에는 115.0 kg, 1991년에는 106.9 kg으로 줄어 들 것으로 展望되나

서울市 쌀 消費量 推定結果¹⁾

年 度	人 口 (千名)	1人當年間消費量 (kg)	總 消 費 量 (千%)
1970	5,525	147.6	815
1975	6,890	120.1	827
1980	8,367	125.5	1,050
1983	9,204	120.1	1,105
1986	10,482	115.0	1,205
1991	12,330	106.9	1,318

1) 자료 및 추정방법은 제 4 장 참조

人口增加로 서울시의 總米穀消費量은 1986 年에는 1,205 千%, 1991 年에는 1,318 千%으로 1983 年 對比 각각 9 %, 19 % 증가할 것으로 推定된다.

3) 1983 年度 서울시의 流通經路別 米穀搬入量의 비율을 보면 政府米의 比重이 29.2 %로 비교적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農協系統米의 比重은 2.5 %, 都賣市場經由의 比重은 7.3 %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0.9 %는 產地直結去來로서 수많은 無許可都賣商 등을 통하여 去來된 것으로 추정된다.

4) 流通經路別 搬入量比率의 推移를 보면 都賣市場經由의 비율은 1975 年에 23.6 %에서 1983 년에는 7.3 %로 감소한 반면에 產地直結去來는 이 기간에 37%에서 60.9%로 현저한 增加趨勢에 있다. 특히, 서울시 米穀流通에 있어서 都賣市場經由의 比重이 크게 감소한 것은 政府米의 放出量이 增加함에 따라 自由市場經路의 流通量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다가 최근에 產地蒐集, 搬出商과 消費地小賣商과의 直結去來가 성행하게 된 데 주로 기인된다.

서울市 流通經路別 쌀 搬入量 推定結果¹⁾

單位: 千%, %

年度別	總搬入量	政府放出量	農協系統出荷	都賣市場經由	直搬入量
1975	827(100.0)	276 (33.4)	50 (6.0)	195 (23.6)	306 (37.0)
1978	1,011(//)	501 (49.6)	13 (1.3)	59 (5.7)	438 (43.4)
1979	1,050(//)	725 (69.0)	18 (1.7)	37 (3.2)	270 (26.1)
1980	1,050(//)	655 (62.4)	21 (2.0)	28 (2.7)	346 (33.0)
1981	1,091(//)	575 (52.7)	15 (1.4)	47 (4.3)	454 (41.6)
1982	1,086(//)	277 (25.5)	27 (2.5)	101 (9.3)	681 (62.7)
1983	1,105(//)	323 (29.2)	28 (2.5)	81 (7.3)	673 (60.9)

1) 資料 및 推定方法은 第 4 章 참조.

4. 米穀流通의 當面課題

가. 政府糧穀管理의 當面課題

1) 糧特赤字의 累積

○ 1960年代 후반부터 실시하여 온 二重穀價制는 收穫期 穀價安定을 통한 農家所得保障과 端境期 米價安定을 통하여 物價와 消費者家計의 安定에 기여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糧特赤字의 累積과 이에 따른 通貨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問題가 되고 있다.

○ 1983年末 現在의 糧特赤字累積額은 總 15,835 億원에 달하며, 1983년도 한해에 발생한 糧特赤字만도 3,370 억원이나 되므로 이에 대한 効率的인 對策이 요청된다.

2) 政府米의 放出低調와 價格調節機能의 弱화

○ 政府米의 放出量은 1979年과 1980年에는 약 1,200 만점에 달하였으나 1983년에는 633 만점으로 현저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所得向上에 따른 一般米 選好度 增大에 크게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所得向上으로 良質米의 需要가 増加함에 따라 政府米과 一般米間의 代替性이 弱化되어 政府米放出에 의한 一般米價格의 安定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 政府糧穀放出節次의 複雜性과 硬直性으로 米價急變에 즉각 對應하지 못하고 米價急變이 일어난 연후에야 政府放出糧穀이 市場에 放出되어 價格安定의 成果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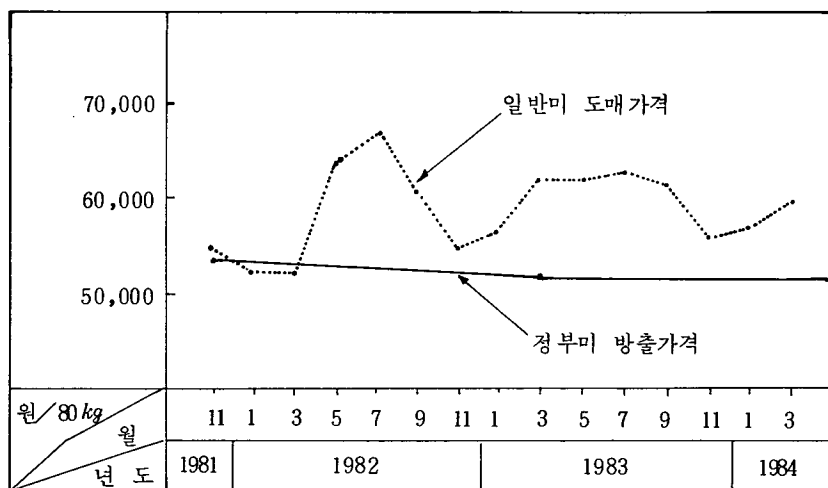
3) 穀價의 二重構造와 政府放出價格의 年中 平準化

○ 1983年度 一般米의 相當 平均價格은 59,691 원으로 政府米上品の 放出價 52,280 원에 비해 7,411 원이나 높으며, 이같은 穀價의 二重構造는 政府米가 一般米로 둔갑되어 販賣되는 등 米穀流通을 교란시키

는 要因이 되고 있다.

○ 糧穀의 保管過程에는 減耗, 保管, 管理 등의 費用이 發生하여 價格이 上昇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인데도 불구하고 政府米의 放出價格을 年中 固定시킨 결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다.

月別 一般米 都賣價格과 政府米 放出價格動向(1981. 11~'84. 5)



— 政府米과 一般米間의 二重價格構造를 심화시켜 政府米가 一般米로 위장되어 販賣되거나 또는 政府米과 一般米를 混合하여 一般米로 販賣되는 등 不正流通을 促進시키며,

— 農民이나 商人들이 米穀을 貯藏하려는 誘因이 없기 때문에 收穫期의 集中出荷를 加速化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는 政府의 收買負擔을 加重시키는 主 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 全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한 確立적인 低放出價格政策은 쌀의 偏重消費를 유발하여 쌀의 도입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糧特赤字累積의 主要要因이 되어 왔다.

— 이와 같은 諸問題點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放出價格을 市中價格의 變動에 連動시키는 동시에 段階의 으로 市中價格에 접근시켜야 할 것

으로 判斷된다.

나. 民間流通部門의 當面課題

1) 糧穀都賣市場의 機能萎縮

○ 政府糧穀管理의 規模가 擴大되고 최근에 產地直結去來가 成行함에 따라 都賣市場의 機能이 크게 위축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米穀搬入量은 1975年만 하더라도 서울시 全體 米穀消費量의 24%이던 것이 1983년에는 7.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격감됨에 따라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糧穀都賣市場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서초동 糧穀委託都賣市場의 搬入物量を 크게 감소시킨 主原因은 아래와 같다.

- 政府의 過多한 糧穀市場介入
- 適正季節價格振幅을 감안하지 않은 劃一的인 年中 低米價施策
- 糧穀都賣市場內의 委託商手數料에 대한 附加價値稅의 徵收

○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량이 격감되어 都賣市場의 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主要問題點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 政府의 糧穀市場介入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그의 介入效果도 그만큼 制限되어 있으며,

— 中間商人들의 陰性去來와 買占賣惜, 價格造作의 可能性과 不合理한 等級마진(等級造作)의 發生可能性이 크며,

— 이로 인한 價格의 不安定性은 生産者의 生産意慾減退와 消費者家計에 惡影響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施設未備

○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6,000坪의 垆地에 1,050坪의 荷置場과 延建坪 276坪의 事務室 그리고 나머지는 通路 및 駐車場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모든 垆地 및 施設은 「韓國트럭터미날會社」로부터 賃借한

것으로써 施設主에게 精穀 80 kg 以當 77 원 (委託手數料 800 원의 9.6 %)의 높은 荷置場賃借料를 支拂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900 萬이 넘는 서울市民의 主穀을 供給하는 대표적인 都賣市場으로서 施設規模가 不足한 실정이며, 施設擴大에도 限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荷置場 以外의 糧穀保管施設 등은 全無한 實情이다.

○ 특히 保管施設의 未備는 日氣不順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需給不均衡에도 効率的으로 對應하지 못함으로써 급격한 價格變動을 초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3) 產地直結去來의 盛行

가) 直結搬入의 類型

○ 서울시 小賣商調査結果에 의하면 產地直結去來의 類型은 크게 小賣商이 直接 產地에 가서 米穀을 購入하는 경우와 小賣商이 門前에서 購入하는 경우로 區分되며, 이를 다시 購入先에 따라 分類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8 가지의 類型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

單位: %

購 入 處 및 購 入 經 路			購 入 比 率 ¹⁾	
產地直結搬入	小 賣 商 的 產 地 購 入	生 產 農 家	3.6	75.9
		搗 精 業 者	25.3	
		5 日 市 場	7.8	
		產 地 商 人	1.2	
	小 賣 商 的 門 前 購 入	搗 精 業 者	11.6	
		產 地 商 人	49.1	
		生 產 農 家	0.5	
		地 區 組 合	0.9	
小				

1) 購入處別 購入比率를 1回購入量에 대하여 加重平均함.

○ 產地直結去來의 類型別 小賣商의 米穀購入比率을 보면 小賣商이 門前에서 購入하는 경우가 62.1%로 產地에 가서 購入하는 경우(37.9%)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으며, 購入先別로 보면 產地商人이 50.3%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搗精業者가 36.9%로서 상당히 높은 比率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 서울시 糧穀小賣商들의 產地直結搬入에 의한 米穀購入比率이 크게 增加한 主要要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交通 및 通信手段의 發達로 產地直結去來가 容易 해졌고

— 委託手數料 등의 流通費用節減을 통해서 商人自身들의 利潤을 增大시킬 수 있으며

— 糧穀都賣市場의 附加價值稅納付에 따른 流通費用增大와 稅源露出을 우려한 나머지 糧穀都賣市場의 利用을 회피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나) 產地直結去來의 當面問題點

○ 產地直結去來는 都賣市場을 經由하지 않음으로써 委託手數料에 대한 附加價值稅와 上下車費 등의 流通費用을 절감시킬 수 있으나 절감된 流通費用은 商人들의 利潤에 귀속될 뿐, 生産者와 消費者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 產地直結搬入은 去來規模가 영세하기 때문에 流通의 効率化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 영세한 多數의 類似都賣商과 無許可糧穀商들의 類似都賣行爲는 糧穀의 積滯量을 增加시킴으로써 糧穀流通의 원활화를 阻害하게 되며,

○ 產地直結去來는 稅源의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脫稅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產地直結去來의 防止對策

— 產地直結去來가 성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交通 및 通信 등 流通下部構造의 發達에 힘입어 流通費用을 줄여 利潤을 극대화하려는 商人의 근본적인 慾求인 관계로 이를 制度的으로 禁止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서울市の 糧穀小賣商 120 명을 對象으로 直搬入의 制度的 禁止에 대한 調査結果 全體 小賣商중 63.3 %에 해당되는 小賣商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提示한 反對事由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米質의 쌀을 都賣市場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28.8 %), 자신들의 商活動이 制限되지 않아야 하며 (23.7 %), 都賣市場에서 쌀을 구입할 경우 流通費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收益面에서 不利하다 (20.3 %)로 나타났다.

— 따라서 產地直結搬入을 制度的으로 規制하는 것 보다는 糧穀都賣市場의 적극적인 育成을 통하여 產地直結搬入量이 糧穀都賣市場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產地直結搬入의 制度的 禁止에 대한 反對事由別 小賣商 分布

反 對 事 由 別	應答者數	構 成 比 (%)
都賣市場의 米質을 믿을 수 없다	17	28.8
商活動의 自律性이 침해된다	14	23.7
流通費用의 增加로 利潤減少	12	20.3
都賣市場의 米穀流通獨占化가 우려됨	7	11.9
人力不足으로 都賣市場出入이 곤란함	3	5.1
流通段階의 多段化	2	3.4
零細小賣商의 米穀確保가 어려워짐	2	3.4
其 他	2	3.4
計	59	100.0

4) 流通下部構造의 脆弱性

○ 客觀的인 等級基準의 未備

— 米穀의 等級化는 直觀的인 目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객觀적인 等級基準이 設定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결과 부당한 등급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서울市 小賣商에 대한 米穀의 等級區分基準을 조사한 結果, 產地

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小賣商이 全體 小賣商의 54 %로 가장 높았으며 米質 또는 品種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小賣商의 비율은 38 %, 경험과 目測으로 한다는 小賣商은 8 %의 順으로 나타났다.

○ 包裝 및 規格의 多樣化

— 米穀의 去來單位規格은 一般的으로 80 kg으로 되어 있으나 產地에 따라 一部地域에서는 85 kg, 87 kg, 90 kg 등으로 多樣化되어 있다.

— 糧穀都賣市場에 搬入되는 糧穀은 거의 全量이 80 kg단위의 PP袋로 포장되어 있으나 小賣商段階에서는 이를 解包하여 消費者의 購入量에 따라 小量單位로 販賣되기 때문에 小賣段階에서 物量 및 等級마진의 發生可能性이 높다.

○ 市場情報體系의 未備

— 객관적인 市場情報의 提供者가 없는 실정이며, 商人들간의 口傳 또는 전화연락에 의하여 불확실한 市場情報가 交換되고 있는 실정이다.

— 農民들이 一般米 販賣時 價格情報의 入手處를 보면 產地商人(搗精業者포함)이나 5日市場이 84.4 %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農協이나 간행물은 12.8 %로서 대부분 商人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5. 糧穀都賣市場의 育成方案

가. 糧穀都賣市場育成的 必要性

1) 현재 糧穀都賣市場은 價格 및 需給調節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결과 全國을 代表할 수 있는 公正한 穀價形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市場의 價格메카니즘을 통하여 主穀의 需給調節을 기하기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이 요청된다.

2) 政府米가 비교적 낮은 價格으로 小賣段階에 직접 放出되는 관계로 政府米과 一般米간의 二重價格構造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政府米가 一般米로 둔갑되어 販賣되는 등 不正流通을 誘發시킴으로서 流通秩序를 저

해하고 있다. 이같은 二重價格構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民間流通組織 특히 都賣市場의 育成을 통하여 政府의 市場介入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政府米를 현재와 같이 小賣段階에 직접 放出하는 대신 都賣市場에 競賣를 통하여 市價로 放出한다면 穀價의 二重構造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糧特赤字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所得向上에 따른 消費者의 一般米 選好傾向과 政府糧穀管理의 硬直性 등으로 政府米放出에 의한 一般米價格의 調節機能은 최근에 크게 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一般米의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해서는 市場의 與件變化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對應할 수 있는 競爭體制를 갖춘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이 요청된다.

4) 政府에서는 糧特赤字의 해소를 위하여 政府糧穀管理規模를 줄이고 放出價格을 現實化시키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民間流通組織이 未發達되어 있는 與件下에서 政府收買物量의 減縮은 격심한 價格變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政府의 糧穀管理規模를 段階의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民間流通組織의 中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都賣市場의 育成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5)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產地直結去來는 都賣市場經由에 비하여 流通費用이 절감된다는 利點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 節減된 流通費用이 生産者나 消費者에게 配分되지 못하고, 오직 中間商人들의 利潤에 귀속되고 있으며

— 產地直結去來는 대부분 去來規模가 零細하여 大規模流通에 의한 流通의 効率化를 기대하기 어렵고,

— 產地直結去來는 대부분 陰性去來로써 稅源의 포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流通秩序를 沮害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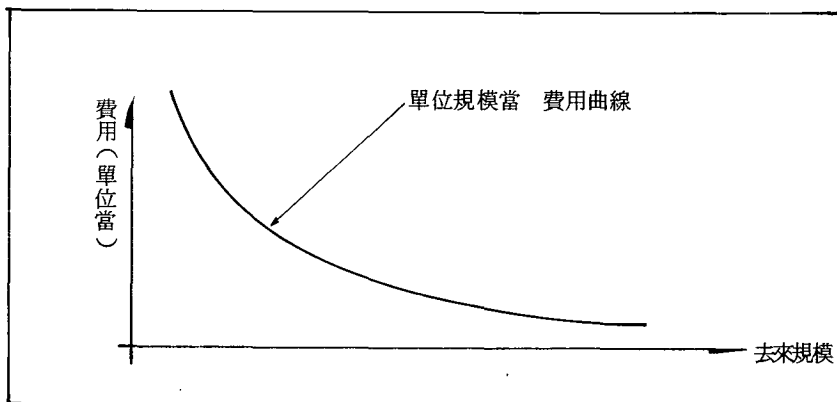
— 上記 產地直結去來의 當面問題點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의 活性化를 통한 產地直結去來의 억제가 요청된다.

나. 糧穀都賣市場의 適正規模 및 期待效果

1) 適正規模

○ 糧穀都賣市場의 去來規模에 따른 單位物量當 長期平均費用曲線은 規模가 클수록 下降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適正規模는 都賣市場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去來物量의 確保可能性과 敷地 및 施設의 制約條件 등을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할 課題이다.

糧穀都賣市場의 長期 平均費用 曲線



○ 현재 農水産部가 計劃하고 있는 가락동 糧穀都賣市場의 規模는 서울시 米穀消費量의 약 30% 정도(1日平均 약 1,030%)를 去來할 수 있는 水準으로 設定되어 있다. 이 物量은 서울시의 米穀流通을 主導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市場에서 形成되는 價格은 서울시는 물론 全國을 代表할 수 있는 價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糶搬入量이 서울시 糶消費量의 7%밖에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糧穀都賣市場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都賣市場의 糶搬入量 比率이 30% 이상 대폭 증가한다는 保障도 없으며, 이 수준이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上限線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糶搬入量이 서울시 糶消費量의 30%가 된다면 가락동 糧穀都賣市場의 規模는 都賣市場의 機能面과 費用面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期待效果

○ 糧穀都賣市場建設의 效果分析을 위해서는 市場建設에 따른 費用(cost)과 利益(benefit)에 對한 計量化가 필요하다. 그러나 糧穀都賣市場의 效果를 計量化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本分析에서는 새로운 都賣市場의 建設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效果의 內容만을 서술코자 한다.

○ 糧穀의 貯藏施設을 포함한 現代式 糧穀都賣市場의 建設은 市場與件의 變化에 신속히 能率的으로 對應함으로써 價格 및 需給安定에 기여할 것이며,

○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는 前近代의인 去來方法에 의하여 去來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公정한 價格形成을 기대하기 어려운 實情이나, 競賣制度의 導入 등을 통한 去來秩序의 確立과 競爭體制를 갖춘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은 糧穀의 원활한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에 기여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主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통하여 農家所得과 消費者의 家計保護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통한 民間流通部門의 活性化는 米穀流通의 效率性 提高는 물론 都賣市場을 통한 等級化와 規格化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都賣市場機能의 正常化는 產地市場과 消費地市場의 정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통하여 民間流通部門에 의한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이 強化된다면 政府의 市場介入을 段階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政府糧穀管理의 當面問題點解消, 특히 糧特赤字의 解消에도 기여할 것이다.

○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은 陰性的인 去來인 產地直結去來를 相對的으로 축소시킴으로써 產地直結去來에 따른 諸問題點을 완화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稅金을 賦課할 수 없었던 產地直結去來의 相對的인 감소는 새로운 稅源의 確保와 稅收增大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 糧穀都賣市場의 育成方案

가. 政府糧穀管理制度의 改善

○ 현재와 같은 政府의 過多한 市場介入下에서는 都賣市場의 育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서는 政府의 直接的인 市場介入을 段階的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自律的인 市場機能의 促進과 活性化에 注力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糧穀流通을 全的으로 民間流通部門에 依存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收買量의 減少는 收穫期의 價格下落을 초래할 것이므로 收買量減少를 補完할 수 있는 收穫期의 價格安定對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예컨대 政府는 新品種收買에 局限하는 反面에, 農協으로 하여금 一般米收買를 專擔토록 함으로써 一般米의 需給및 價格安定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 適正 季節價格振幅을 도외시한 放出價格의 年中 平準化施策은 二重價格構造를 형성함으로써 유통질서를 沮害할 뿐만 아니라 糧特赤字累積의 主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政府米의 放出價格은 適正價格振幅을 허용하는 範圍內에서 市場價格 變動에 따라 彈力的으로 決定되어야 한다.

나. 附加價值稅의 免除

○ 현재 서초등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激減한 反面에 產地直結去來가 盛行하는 主原因의 하나는 附加價值稅에 있다. 즉, 產地의 蒐集, 搬出商이나 未登錄商人들은 都賣市場에 出荷時 稅源露出을 우려한 나머지 都賣市場出荷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小賣商들이 產地直結去來를 選好하는 근본적인 原因은 流通費用을 줄여 收益을 極大化하려는 商人의 기본적인 慾求인 관계로 이를 制度的으로 금지하는 데는 限界가 있으며, 制度的으로 금지하더라도 實效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서는 都賣段階의 附加價値稅는 全面 免稅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1980년 12월 13일에 改正된 附加價値法 第12條의 規定에 따라 糧穀에 대한 附加價値稅는 마땅히 免稅되어야 할 것이다.

다. 政府米의 糧穀都賣市場 放出

○ 현재 政府糧穀의 管理體系는 막대한 量의 政府糧穀을 小賣段階에 直接 放出함으로써 政府米과 一般米間에 二重價格構造를 形成하고 있으며, 이로써 政府米이 一般米로 둔감되어 去來되는 등 流通秩序가 교란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또한, 放出節次의 複雜性과 硬直性은 需給不均衡 發生時 즉각적으로 對應하지 못함으로써 政府米의 放出은 一般米의 價格安定에 큰 效果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政府米을 都賣市場에 放出하여 一般米과 함께 競賣한다면 政府米에 대한 公正한 市場價格이 形成될 것이므로 現在와 같은 二重價格構造와 不正流通이 解消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또한, 政府米의 都賣市場放出은 그만큼 都賣市場의 去來物量이 增大됨으로써 都賣市場의 活性化에도 기여할 것이며, 政府米放出價格이 현실화됨으로써 現在 問題되고 있는 糧特赤字解消面에서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라. 農協의 糧穀都賣市場 參與度增大

○ 糧穀都賣市場에서 商人組織과의 競爭體制를 구축함으로써 公正한 價格形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農協共販場의 都賣機能을 強化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產地出荷組織이 強化되어야 하며, 小賣商과의 効

率의인 連繫對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 農協의 產地出荷組織을 強化하려면 우선 農協이 一般商人組織과 대등한 立場에서 競爭力을 갖추 수 있도록 業務體系가 改善되어야 한다. 또한, 政府의 직접적인 統制는 가급적 止揚하고 備蓄物量으로 價格을 調節 함으로써 農協共販機能을 正常化시켜야 할 것이다.

마. 糧穀都賣市場의 下部構造改善

○ 糧穀都賣市場의 機能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都賣市場施設의 擴充과 流通環境의 改善은 물론 去來標準化, 規格化, 包裝化 그리고 流通情報改善과 金融 및 稅制上的 改善이 요청된다.

○ 米穀流通의 効率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米穀의 客觀的인 等級의 決定과 이의 定着化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等級基準에 관한 調查研究가 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生産者, 商人, 消費者를 對象으로 等級基準에 관한 弘報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包裝單位가 流通段階別로 多樣化되어 있어 再包裝過程에서 부당한 等級 및 物量마진의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一般米도 政府米과 같이 搗精工場에서부터 消費者가 選好하는 規格으로 包裝되어 消費者에게 流通되도록 包裝의 規格化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消費家口의 쌀消費量을 감안하여 包裝의 規格을 現實化하는 동시에 賃搗精工場에 대한 指導와 적절한 支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農民들은 市場情報를 주로 產地商人이나 5日市場에서 入手하고 있으며, 이들의 市場情報는 一般的으로 客觀性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小賣商들은 糧穀都賣市場의 價格情報를 별로 活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流通段階別 市場情報를 신속히 蒐集, 정확히 傳達할 수 있는 綜合的인 糧穀流通情報體系의 確立이 요청된다.

바. 產地 都賣, 小賣組織과의 連繫對策

○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은 都賣市場 자체만을 局限하여 생각할 수 없

다. 즉, 糧穀都賣市場이 育成되려면 糧穀의 蒐集 및 分散機能이 都賣市場을 軸으로 하여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產地 都賣, 小賣段階의 效率的인 連繫對策이 요청된다.

○ 產地市場에서 蒐集, 搬出商이 米穀流通過程에 차지하는 比重이 상당히 큰만큼 產地의 米穀流通改善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合理的인 育成對策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產地의 米穀蒐集 및 搬出機能을 담당하는 商人들에 대한 流通金融의 支援擴大와 稅制上的 支援이 檢討되어야 한다.

○ 搗精業者들은 法的으로는 搗精業만 허용되어 있을 뿐 米穀의 買取販賣 또는 委託業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搗精業者들은 商行爲를 陰性的으로 하고 있으며, 米穀流通에 있어 중요한 比重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搗精業者의 陰性的인 商行爲를 방지하는 것 보다는 이를 陽性化하여 米穀流通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方向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搗精業者들도 米穀流通에 合法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法的根據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함께 搗精工場을 중심으로한 產地의 米穀流通改善方案은 물론 道청공장과 道매시장과의 효율적인 連繫對策이 검토되어야 한다.

○ 小賣商들이 주로 糧穀都賣市場에서 米穀을 購入할 수 있도록 都賣段階의 流通費用 節減對策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糧穀都賣市場 經由時 所要되는 上場手數料, 下役手數料, 雜賦金徵收 등의 流通費用節減對策은 물론 關聯商人에 대한 金融支援對策이 요청된다. 또한 小賣商들이 원하는 良質의 米穀을 안심하고 購入할 수 있도록 去來秩序가 確立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競賣制度를 도입하여 價格形成機能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小賣商들도 糧穀都賣市場에서 米穀을 구입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 穀價調節用 備蓄糧穀의 確保와 價格安定帶 設置運營

○ 糧穀都賣市場의 主要機能인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을 원활히 수행

하는 동시에 氣候不順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需給不均衡에 効率的으로 對處하기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內의 糧穀保管倉庫에 積貯한 備蓄量의 確保와 이를 위한 制度的인 對策이 요청된다.

○ 穀價의 季節振幅 등을 감안하여 價格安定帶를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穀價가 安定될 수 있도록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穀價가 이미 설정된 價格安定帶를 下廻할 경우에 한하여 農協이나 指定都賣人으로 하여금 糧穀을 買取하여 糧穀都賣市場內의 保管倉庫에 備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穀價가 價格安定帶를 上廻할 경우에는 비축한 糧穀을 仲買人에게 競賣를 통하여 販賣도록 制度化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한다.

아. 糧穀都賣市場의 管理 및 運營體系의 確立

1) 管理體系

○ 糧穀都賣市場은 가락동의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內에 建立될 計劃이므로 그의 管理는 이미 確定된 가락地區 綜合都賣市場의 管理體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2) 糧穀都賣市場의 運營主體 및 役割

○ 糧穀都賣市場에서 糧穀流通에 直接的으로 參與하게 되는 運營主體는 指定都賣人, 競賣人, 仲買人, 賣買參加人을 들 수 있으며,

○ 指定都賣人은 一種의 法人體로써 販賣를 委託받은 糧穀을 上場, 競賣를 통해서 仲買人 또는 賣買參加人에게 販賣함으로써 價格調節과 需給調節機能을 수행 하며,

○ 競賣士는 指定都賣會社에 所屬되어 上場될 糧穀의 等級, 產地 등을 소개하여 呼價를 需給狀況에 부합되도록 競爭시킴으로써 公正한 價格이 形成되도록 競落者를 결정하는 重要的 機能을 수행 하며,

○ 仲買人은 競賣에 응하여 指定都賣人으로부터 糧穀을 購入하여 落札價格에 대한 一定率의 仲買手數料만을 징수하고 小賣商이나 大量需要

者에게 糧穀을 販賣하는 機能을 수행하며,

○ 賣買參加人は 주로 大型小賣業體, 料食業所, 加工業體 또는 構內 食堂 등의 大量實需要者로서 都賣市場에서의 商活動과 役割은 仲買人の 그것과 大同小異하다.

3) 糧穀都賣市場의 入住業體 選定

가) 指定都賣人

○ 指定都賣人は 農安法 第17條의 資格要件을 充足하여야 하며, 또한 아래의 事項도 고려하여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糧穀 및 이와 類似한 商品의 流通業務에 經驗이 있는 法人

— 購買者와 出荷者 쌍방의 납득이 가는 公正한 業務遂行을 위한 組織과 經驗이 있는 法人

— 構成員은 仲買人 또는 賣買參加人이나 이들의 雇傭人인 아닌 者

○ 糧穀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數는 糧穀이 國民經濟에 佔하는 比重을 고려할 때 單數制 보다는 複數制가 바람직하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糶搬入量이 서울市 消費量의 7%에 不過한 점을 고려할 때 指定都賣人 1人和 農協共販場의 複數制를 우선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 商人組織으로서 이 分野에 오랜 經驗이 있는 現在 서초동 糧穀都賣市場內에 있는 「韓國糧穀委託商協會」를 우선적으로 指定都賣會社로 育成하는 한편 서초동 糧穀都賣市場內의 既存 農協組織을 都賣會社形態로 育成할 것을 건의한다.

나) 仲買人

○ 仲買人は 農安法 第23條와 同 施行令 第18條에 따라 選定하되 아래의 要件을 充足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指定都賣會社の 構成員이 아닌 者

— 仲買業을 効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知識, 經驗, 資本金 및 信用을 갖춘 者

○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이 制限되어 있는 以上 仲買人數의 過多

는 이들의 經營收支를 惡化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仲買人の 數는 糧穀
都賣市場의 搬入量과 仲買人 手數料 등을 고려하여 仲買人の 適正收益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本文 第6章 試算結果 參照).

第 1 章

序 論

1. 序 言

政府糧穀管理의 規模擴大와 米麥의 二重穀價制는 막대한 糧特赤字를 累積시켜 왔으며 이는 주로 韓銀借入으로 充當된 관계로 인플레이션의 한 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政府의 糧穀管理規模가 增大됨에 따라 民間流通部門은 크게 萎縮되었고 최근에 產地直結去來가 成行함으로써 去來가 零細化되고 陰性化되는 傾向마저 있다.

1983 年度 서울市 쌀搬入量의 流通經路別 비율을 보면 政府放出米가 29.2 %, 農協의 系統出荷가 2.5 %이고, 都賣市場經由가 7.3 % 그리고 產地直結去來가 60.9 %로서 產地直結去來가 大宗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격감됨에 따라 糧穀都賣市場은 價格 및 需給調節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政府에서는 糧特赤字의 解消를 위하여 政府糧穀의 管理規模를 점차적으로 축소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民間流通組織이 未發達된 條件下에서 政府의 糧穀管理規模를 減縮할 경우에는 穀價의 격심한 變動을 초래할 可能性이 높다.

그러므로 현재 政府糧穀管理制度의 當面問題點을 해소하는 동시에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해서는 民間流通組織의 中추적인 役割을 담당하는 糧穀都賣市場의 건전한 育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糧穀의 民間流通部門을 活性化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서울시 가락동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內에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할 計劃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現米穀流通의 當面問題點을 綜合적으로 分析하는 동시에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糧穀都賣市場 建設의 妥當性 檢討와 이의 育成方案을 모색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2. 研究目的

本研究의 主目的은 現 政府糧穀管理制度와 民間流通部門의 現況 및 當面問題點들을 綜合적으로 調查·分析함으로써 米穀流通의 效率化를 기하는 동시에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도모할 수 있는 건전한 糧穀都賣市場의 育成方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세부적인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米穀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분석
- (2) 米穀의 需給, 流通 및 價格動向分析
- (3) 서울시 米穀流通現況 및 當面問題點 調查分析
- (4) 糧穀都賣市場 育成方案摸索
- (5) 糧穀都賣市場의 管理 및 運營體系 改善方案

3. 研究方法

本研究에서는 關聯資料의 分析和 文獻調查를 實施하였고, 서울시의 米穀流通現況 및 當面問題點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現地調查를 併行하였다. 現地調查는 서초동 糧穀都賣市場, 한국糧穀委託商協會, 全國 糧穀商聯合會, 農協共販場 및 서울시에 散在되어 있는 120個 糧穀小賣商을 對象으로 실시하였다.

第 2 章

米穀의 國民經濟的 位置

米穀은 韓國人의 主食으로서 農家所得의 大宗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家計費에도 상당히 큰 比重을 占하기 때문에 米穀政策은 오래 전부터 學界나 社會의 論爭의 對象이 되어 왔다.

1980 년 현재 全國農家の 86 %가 米作農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全體 農作物收入額中 米穀이 차지하는 比重은 48 %에 이르고 있다. 또한 쌀은 主食인 관계로 쌀需給이 不安定하고 쌀값이 暴騰한다면 이는 곧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主穀의 安定的인 自給과 價格安定은 食糧安保上 기필코 達成하여야 할 政策課題의 하나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米穀流通構造의 改善을 위한 施策도 積極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米穀은 豊凶에 따라 生産量이 크게 변동할 뿐만 아니라 需要가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근소한 需給의 不均衡도 價格의 격심한 季節變動을 초래한다. 米價의 격심한 下落은 農家所得의 減少를 초래하며, 반대로 米價의 격심한 上昇은 都市家計 특히 低所得層의 家計에 큰 壓迫을 주게 됨은 물론 인플레이션의 한 要因이 된다. 때문에 米價를 어느 水準에 어떻게 安定시킬 것인가는 主要政策課題의 하나로서 항상 논란의 對象이 되어 왔으며, 米價水準은 政策立案者들의 價値判斷과 그때 그때의 政治的, 經濟的 및 社會的 與件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동안 政府에서는 主穀自給에 總力を 傾注하여 왔으며, 多收穫 新品種의 開發과 普及 그리고 栽培技術의 改善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米穀增産을 이룩하였다. 米穀生産이 增加함에 따라 收穫期の 米價安定을 위하여 糶收買量 역시 증가하게 되었고, 物價安定과 消費者 家計 保護를 위하여 二重穀價制를 실시한 결과 糧特赤字는 해마다 累積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政府의 米穀管理規模의 增大는 民間流通部門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이는 市場의 메카니즘에 의한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저해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한편, 所得이 向上됨에 따라 消費者들은 米質이 良好한 一般米를 選好하는 경향이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政府米의 放出需要를 상대적으로 격감시켜 政府의 財政負擔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綜合的인 米穀의 需給 및 流通改善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本章에서는 우선 米穀의 國民經濟的 側面에서의 比重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1. 食生活面

우리나라의 食生活樣式은 經濟成長에 따른 所得水準向上으로 점차 高級化 내지 多樣化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人當 에너지供給량을 보면 1970년에 2,370 Kcal 이던 것이 1982년에는 2,588 Kcal 로 크게 늘어났다 <表 2 - 1>. 에너지 供給量中 穀物이 점하는 比重은 1982년에 68.1%로서 日本(1980년)의 43.8%, 臺灣(1977년)의 44.8%보다 훨씬 높은 水準이다. 즉, 우리나라의 食生活樣式은 아직도 澱粉質 食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2년에 米穀에서 섭취한 1人 1日當 에너지는 1,218 Kcal로서 總에너지攝取量の 47.1%나 되며, 米穀에서 섭취한 蛋白質은 23.3g으로 總蛋白質供給量 78.3g의 약 29.8%를 차지했다. 이처럼은 米穀은 우

表 2 - 1 年度別 1人 1日當 營養供給量 및 構成比

區 分	年 度	總 量 (A)	穀 物 (B)	米 穀 (C)	B / A (%)	C / A (%)
熱 量 (kcal)	1970	2,370	1,818	1,215	76.7	51.3
	1975	2,390	1,801	1,116	75.4	46.7
	1980	2,485	1,730	1,234	69.6	49.7
	1981	2,531	1,783	1,229	70.4	48.6
	1982	2,588	1,763	1,218	68.1	47.1
蛋白質 (g)	1970	65.2	40.2	23.2	61.7	35.6
	1975	71.1	40.4	21.3	56.8	30.0
	1980	73.6	36.9	23.6	50.2	32.1
	1981	76.9	38.3	23.5	49.8	30.6
	1982	78.3	37.8	23.3	48.3	29.8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食品需給表」，1982.

리나라에 있어 主穀으로써 國民食糧供給面에 대단히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農家所得面

米麥의 價格이 農家所得에 미치는 效果는 農家所得중 米穀所得이 차지하는 比重에 따라 決定되며 이 비율이 클 수록 크게 나타난다.

農家所得중 米穀所得이 점하는 비율을 보면 <表 2 - 2>와 같이 1975년 이후 減少趨勢에 있다. 이같은 減少傾向은 所得向上에 따라 畜產物과 經濟作物 등의 需要가 크게 增加하였고 農外所得의 比重도 점차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3년 현재 農家所得中 쌀이 점하는 比重은 26.9%나 되므로 米價는 아직도 農家所得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도 耕地規模別 農家所得중 米穀所得의 비율을 보면 <表 2-3>과 같이 0.5 ha미만의 영세농은 9.2%, 0.5~1.0 ha의 농가는 20.3%,

表 2-2 年度別 農家所得 중 米穀 所得比重 (戶當平均)

單位: 千원

年 度 別	農家所得 (A)	農 業 所 得	米穀所得 ¹⁾ (B)	B / A (%)
1975	872.9	714.8	360.5	41.3
1976	1,156.3	921.2	482.0	41.7
1977	1,432.8	1,036.1	581.1	40.6
1978	1,884.2	1,355.7	648.7	34.4
1979	2,227.5	1,531.3	839.5	37.7
1980	2,693.1	1,754.8	741.3	27.5
1981	3,687.9	2,476.5	1,196.3	32.4
1982	4,465.2	3,031.4	1,381.7	30.9
1983	5,128.2	3,331.0	1,379.0	26.9

1) 年度別 米穀收入에 年度別 米穀所得率을 적용하여 推定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 農産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 1984.

1.0 ~ 1.5 ha의 농가는 28.2%, 1.5 ~ 2.0 ha의 농가는 34.8%, 그리고 2.0 ha이상의 大農의 그것은 40.7%로 推定된다. 이와 같이 耕地規模가 클 수록 米價가 農家所得에 미치는 영향은 增加하게 된다. 즉 米價의

表 2-3 耕地規模別 農家所得 중 米麥所得의 比重, 1983 (戶當平均)

單位: 千원

規 模 別	農家所得 (A)	農 業 所 得	米穀所得 ¹⁾ (B)	麥類所得 ²⁾ (C)	B / A (%)	C / A (%)
0.5 ha 미만	3,640	1,368	333	37	9.2	1.0
0.5 ~ 1.0	4,402	2,524	893	94	20.3	2.1
1.0 ~ 1.5	5,280	3,712	1,487	110	28.2	2.1
1.5 ~ 2.0	6,316	4,687	2,195	95	34.8	1.5
2.0 이 상	8,016	6,590	3,261	151	40.7	1.9
평 균	5,128	3,331	1,379	93	26.9	1.8

1) 米穀收入 × 米穀所得率

2) 麥類收入 × 麥類所得率 (과맥)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 農産物生産費 調査結果報告」, 1984.

引上은 都農間の 所得隔差 완화에는 기여하겠으나 農家階層間에 所得隔差를 증가시킨다는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가계층간 所得隔差를 줄이기 위해서는 農外就業擴大 등 영세농의 효율적인 所得増大方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都市家計面

米穀은 主食糧으로서 家計費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기 때문에 米價의 上昇은 都市零細民에게 더 큰 負擔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物價上昇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米價는 低水準에 維持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主張하여 왔다.

都市家計費中 米穀支出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所得増加와 低米價施策에 의하여 1965년의 28.4%에서 1970년의 15.5%로 減少하였으나 그 후에는 高米價施策에 의하여 약간 增加하여 1975년에 家計費中 쌀支出額의 比重은 18.1%이었다. 그후 所得向上과 高米價施策의 후퇴 등으로 쌀支出額의 比重은 1982년에는 약 11%로 현저히 줄어 들었다 <表 2-4>. 그리하여 米價의 10%引上은 家計費를 약 1.1%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82년 기준 米價가 農家所得에 미치는 效果(30.9%, 表 2-2 참조)의 약 1/3에 해당된다.

所得階層別로 家計費中 米穀支出費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表 2-5>와 같이 所得이 높은 階層일수록 米穀支出의 絕對額은 增加하나 家計費中 米穀支出의 비율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家計費中 米穀支出의 비율은 月所得이 10만원미만인 低所得階層의 경우 16.4%나 되지만 50만원以上の 高所得階層은 4.7% 밖에 되지 않는다.

月所得이 25만원以下の 低所得層에 있어서 家計費中 米穀支出이 점하는 比重이 14~16%로서 아직도 비교적 높은 水準이므로 격심한 米價의 上昇은 低所得層의 家計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低所得層의 家計保護를 위해서는 보리쌀 등 代替穀의 價格을 상대적으로 낮

表 2 - 4 年度別 家計費중 米穀支出 比重(家口當 月平均)

단위 : 원

年 度 別	家 計 費 (A)	米穀支出費 (B)	B / A (%)
1965	9,780	2,777	28.4
1970	29,950	4,630	15.5
1971	34,970	5,471	15.6
1972	38,560	6,728	17.4
1973	41,490	6,610	15.9
1974	50,100	8,855	17.7
1975	65,310	11,799	18.1
1976	81,460	14,448	17.7
1977	95,400	15,496	16.2
1978	127,710	17,343	13.6
1979	173,442	20,622	11.9
1980	214,357	24,941	11.6
1981	264,646	29,284	11.1
1982	265,596	30,394	11.4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각년도

表 2 - 5 所得階層別 家計費중 米穀支出比重, 1982

단위 : 원

階 層 別	家 計 費 (A)	食料品費 (B)	米穀支出費 (C)	米 穀 支 出 比 重	
				C / A (%)	C / B (%)
10 萬 원 미 만	82,665	41,223	13,524	16.4	32.8
10 萬 ~ 15 萬 원	133,885	63,931	21,317	15.9	33.3
15 萬 ~ 20 萬 원	184,476	82,695	27,120	14.7	32.8
20 萬 ~ 25 萬 원	236,311	101,229	32,697	13.8	32.3
25 萬 ~ 30 萬 원	288,438	116,742	35,685	12.4	30.6
30 萬 ~ 35 萬 원	342,195	133,360	38,765	11.3	29.1
35 萬 ~ 40 萬 원	397,002	147,673	41,250	10.4	27.9
40 萬 ~ 45 萬 원	447,460	155,661	40,691	9.1	26.1
45 萬 ~ 50 萬 원	502,528	165,783	44,599	8.9	26.9
50 萬 원 以 上	815,648	172,828	38,480	4.7	22.3
平 均	265,596	101,652	30,394	11.4	29.9

* 米穀支出費 = 穀類支出費 × 穀類中 쌀支出比重 (88.6 %)

資料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82.

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4. 一般物價에 미치는 效果

米穀은 國民生活에 必須의인 主食糧으로서 그 比重이 크기 때문에 米價의 上昇은 他物價를 先導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한 要因이 된다고 一般的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政策立案者에게 적지 않은 心理的 負擔을 줌으로써 1970 년까지도 低米價政策을 固守하여 왔던 것이다.

米價가 다른 物價를 先導한다는 두 가지 중요한 根據는 첫째 都賣物價算出時 米穀의 加重値가 크므로 米價가 上昇하면 一般物價가 上昇한다는 것이고 다른 見解는 米穀은 主要食糧의 하나로 比重이 크기 때문에 米價 上昇은 家計費에 壓迫을 주게 되고 이는 勞賃上昇을 유발하여 그 결과 生産費가 증가함으로써 一般物價가 騰貴한다는 것이다.

米價가 物價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物價指數編制上 米穀이 차지하는 加重値에 의하여 決定된다. 쌀의 都賣物價加重値는 1965 년의 105에서 1980 년에는 46.1로 절반이하로 감소하였고, 消費者物價의 加重値 역시 이 기간중에 196에서 130으로 현저히 줄었다. <表 2 - 6>.

이같은 현상은 米價가 一般物價에 미치는 效果는 相對的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쌀값 10% 上昇은 都賣物價를 0.5%, 消費者物價를 1.3% 정도를 각각 上昇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米價가 物價에 미치는 間接的인 영향은 家計費에서 차지하는 米穀購入支出費의 比重과 商品生産原價에서 차지하는 賃金支出費의 比重에 달려 있다. 1982년도 都市家計의 경우 米穀의 購入支出費가 家計費에 占하는 比率이 11.4%였으므로 米價가 10% 上昇할 경우 家計費 負擔은 1.14% 늘어나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農家所得中 米穀所得이 차지하는 比重이 약 30%나 되므로 米價는 아직도 農家所得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米價가 農家所得에 미치는 效果는 耕地規模가 클 수록 크게

表 2 - 6 年度別 米穀의 物價指數 加重值 推移

年 度 別	都 賣 物 價	消 費 者 物 價	農 販 價
1 9 6 5	105.0	195.5	498.9
1 9 7 0	88.3	179.9	401.8
1 9 7 5	58.4	182.4	411.6
1 9 8 0	46.1	130.1	372.2

資料：韓國銀行，經濟企劃院

나타나며 零細農은 中農 내지 大農에 비하여 米價上昇의 惠澤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米價上昇은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줄이는데 寄與할 것이나 農家階層間의 所得隔差를 增大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米穀은 都賣物價算出時 加重值가 46.1로서 1970년의 88.3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家計費중 米穀支出費가 차지하는 比重역시 1970년의 15.5%에서 1982년에는 11.4%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變化는 米價가 物價나 消費者家計에 미치는 效果가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예컨대 米價 10% 상승은 都賣物價를 0.46%, 消費者家計負擔을 약 1.1%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적절한 米價上昇은 物價나 消費者家計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穀價政策의 目標는 農家所得의 增大, 穀價安定, 政府財政負擔減少, 消費者家計保護 등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서로 競合되는 諸目標를 동시에 완전히 充足시킬 수 있는 穀價의 策定은 사실상 거의 不可能하며, 그때 그때의 經濟與件과 政策目標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政策的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傾向이다. 그러나 米價가 農家所得에 미치는 效果는 物價나 家計費에 미치는 效果에 비하여 월등히 크므로 糶收買價格은 새로운 農家所得源이 開發될 때까지는 農家所得面에 보다 重點을 두는 方向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第 3 章

米穀의 需給·流通 및 價格動向

1. 米穀消費量 推移 및 展望

가. 1人當 米穀消費量 推移

米穀의 1人當 年間 消費量推移를 보면 1970년의 136.4 kg에서 1976년에는 120.1 kg으로 감소하였다가 그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136 kg에 달하였고 그후에는 계속 감소하여 1983년에는 127 kg에 이르렀다〈表 3 - 1〉. 地域別로 보면 農家の 1人當 쌀消費量은 연도간에 起伏은 있으나 1970년의 123 kg에서 1983년에는 160.0 k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非農家の 쌀消費量은 1970년의 147.6 kg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120.1 kg에 머물고 있다. 1983년 현재 非農家の 1인당 쌀消費量 120.1 kg은 農家の 쌀消費量 보다는 40 kg이 낮은 수준이나 日本 (1982년)의 全國 平均 1人當 쌀消費量 76.4 kg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非農家の 쌀消費量은 所得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현재보다 더욱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1983년도 農家の 쌀消費量 160.0 kg은 非農家の 쌀消費量이 가장 높았던 1972년의 147.6 kg보다도 12.4 kg이나 높은 수준으로서 거의 최고 수

表 3 - 1 年度別 1人當 年間 米穀消費量 推移, 1970~83

單位: kg

年 度	農 家	非 農 家	全 體 平 均
1 9 7 0	123.0	147.6	136.4
1 9 7 5	129.4	120.1	123.6
1 9 7 6	127.4	115.7	120.1
1 9 7 7	135.3	121.7	126.4
1 9 7 8	145.8	129.2	134.7
1 9 7 9	149.9	129.4	135.6
1 9 8 0	150.7	125.5	132.4
1 9 8 1	147.3	125.8	131.5
1 9 8 2	155.1	121.8	130.2
1 9 8 3	160.0	120.1	126.9

資料: 農水産部, 「糧穀消費量調査結果報告」, 各年度.

준에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農家の 쌀消費量도 1983 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農家の 쌀消費量마저 감소하기 시작할 경우 쌀消費量的 감소추세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 米穀의 消費展望

米穀의 消費量은 自體價格, 代替財價格, 所得, 嗜好 및 政府施策 등 여러 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쌀消費量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중에는 計測이 곤란하거나 資料의 부족으로 모델 (Model)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變數도 있다. 그리하여 本分析에서는 쌀消費는 自體價格, 代替財價格 및 所得의 函數라는 假定下에서 쌀需要函數를 계측하였다.

쌀에 대한 需要函數의 計測結果는 여러 研究結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쌀需要函數의 計測結果로부터 쌀의 所得彈力値의 計測結果를 정리하면 0.004 ~ 0.22 로 비교적 非彈力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쌀의 所得彈力値의 부호는 모두 正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쌀의 消費量은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쌀의 所得彈性値가 正으로 計測된 것은 分析期間 동안에 全國 平均 쌀의 消費量이 所得增加와 더불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쌀消費패턴이 地域間 즉, 農家와 非農家間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쌀의 需要函數를 地域별로 推定하여볼 필요가 있겠다.

1967 ~ 1981 年間の 地域別(農家 및 非農家) 時系列資料를 利用하여 地域별로 쌀의 需要函數를 計測한 결과를 수록하면 <表 3 - 2>와 같다¹⁾

本 需要推定結果에 의하면 쌀의 所得彈性値는 農家の 경우 0.26, 非農家の 경우 -0.24 로 計測되었다. 즉, 所得向上에 따라 非農家の 쌀消費量은 감소할 전망인데 반하여 農家の 쌀消費量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나

表 3 - 2 쌀 需要函數 計測 結果

구 분	방 정 식	R ²	D·W
非 農 家	$\log CRC_1 = 8.46 - 0.0162 \log PRC_1 - 0.2448 \log GNP_1$ (-0.13) (-2.17)	0.88	1.99
農 家	$\log CRC_2 = 4.19 - 0.0706 \log PRC_2 + 0.2634 \log GNP_2 + 0.0433 D$ (-0.47) (3.52)	0.74	1.75

단 CRC_1 : 1人當 非農家 쌀消費量 (年間 kg)

CRC_2 : 1人當 農家 쌀消費量 (年間 kg)

PRC_1 : 消費者 米價를 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한 實質價格
(1975 = 100)

PRC_2 : 農家 쌀販賣價格을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한 實質價格
(1975 = 100)

GNP_1 : 1人當 非農家 GNP (1975年 不變價格)

GNP_2 : 1人當 農家 GNP (1975年 不變價格)

D : 더미변수 (1978, 1979년 = 1, 其他年度 = 0)

1) 구체적인 分析方法과 分析에 사용된 자료에 관해서는 「長期食糧需給에 관한 研究」(朱龍宰外, 1982)를 參考하기 바람.

타났다. 農家の 경우 쌀 所得彈性値의 부호가 正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까지 農家の 쌀消費量은 계속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農家の 쌀消費量이 最高水準에 달한 것으로 본다면 農家の 쌀 所得彈性値 0.26 을 적용하여 쌀消費量을 推定할 경우 農家の 쌀消費量은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本 需要推定에 있어서는 農家の 쌀所得彈性値는 零(所得增加에 따라 1人當 消費量은 변동이 없다는 假定)이고, 非農家の 쌀所得彈性値는 - 0.24 라는 前提下에서 1986 년과 1991 년에 대한 1人當 쌀消費量을 推定한 결과는 <表 3-3>과 같다. 本 쌀需要推定에서는 1人當 實質所得增加率은 6%로 假定하였고, 實質價格은 1983 년과 동일한 것으로 假定하였다. 이와 같은 前提下에서 推定된 1人當 쌀消費量은 1986 년에 122.8 kg, 1991 년에 116.3 kg으로 1983 年 對比 각각 3.2%, 8.4% 감소할 것으로 推定된다. 1人當 쌀消費量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人口增加로 食用 總消費量은 1986 년에 5,138 千㎏, 1991 년에는 5,217 千㎏으로 1983 년 對比 각각 1.4%, 2.9%씩 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非食用消費量은 食用消費量과 非食用消費量의 比率이 1983 년도 水準을 유지한다는 假定下에서 食用消費量으로부터 推定하였다<表 3-3>.

위와 같이 推定된 食用 總消費量에 非食用消費量을 加算한 總米穀需要量은 1986 년에 5,370 千㎏으로 1983 년 對比 1.4% 증가할 전망이다,

表 3-3 米穀의 需要 展望

區 分	1983 ¹⁾	1986 ²⁾	1991 ²⁾	'86/'83	'91/'83
1人當米穀消費量(·kg)	126.9	122.8	116.3	96.8%	91.6%
食用總消費量(千㎏)	5,068	5,138	5,217	101.4	102.9
非食用總消費量(〃)	229	232	236	101.3	103.1
總消費量(〃)	5,297	5,370	5,453	101.4	102.9

1) 實績値임.

2) 食用은 1人當消費量에 人口數(經濟企劃院推定値)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非食用은 1983 년도 食用, 非食用의 比率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1991년의 總消費量은 5,453千ㄱ으로 1983년 對比 약 2.9% 증가할 것으로 推定된다<表 3-3>.

2. 米穀의 需給動向

米穀의 生産動向을 보면 1960 米穀年度의 2,391千ㄱ에서 1978년에는 6,006千ㄱ으로 크게 늘어났다. 米穀生産量은 1960~73년간에는 1970년을 제외하고는 400만ㄱ 수준을 上廻한 적이 없다.

그러나 1973년 이후부터 多收穫 新品種의 栽培面積이 擴大됨에 따라 米穀生産量이 매년 急増하여 1974년에는 4,212千ㄱ, 1978년에는 6,006千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表 3-4>. 1960~78년간에 植付面積은 1,121千ha에서 1,230千ha로 9.7% 증가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중의 米穀生産量 증가는 대부분 段收增加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米穀生産量은 <表 3-4>와 같이 1973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多收穫新品種의 植付比率이 1974년의 15.2%에서 1978년에는 76.2%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米穀生産量이 急増

表 3-4 米穀의 自給率 推移, 1970~83

單位: 千ㄱ, (精穀基準)

米 穀 年 度	生 産 量	需 要 量	自 給 率 %
1970	4,090	4,394	93.1
1975	4,445	4,699	94.6
1977	5,215	5,045	103.4
1978	6,006	5,784	103.8
1979	5,797	6,764	85.7
1980	5,136	5,402	95.1
1981	3,550	5,366	66.2
1982	5,063	5,404	93.7
1983	5,175	5,297	97.7

資料: 農水産部, 「糧政資料」, 1983.

함에 따라 1976 米穀年度부터 한 때 쌀自給이 되었으나 '79 米穀年度에는 新品種의 심한 病虫害로 生産量이 격감한 반면 消費量의 急増으로 쌀導入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쌀自給率은 1979 年에 85.7 %, 1980 년에는 88.8 %로 하락하였다.

특히 1980 년에는 冷害로 史上 유례없는 쌀의 大凶作을 기록함으로써 1981 년에는 무려 244 만 8 천톤의 外米를 導入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1981 년도 쌀自給率은 66.2 %로 대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후 쌀作況이 비교적 良好하여 쌀自給率은 1982 년에 93.7 %, 1983 년에는 97.7 %로서 거의 自給水準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水稻品種別 段收를 살펴 보면 新品種의 段收는 '74 년에 473 kg에서 '77 년에는 553 kg으로 最高水準을 記錄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病虫害 등으로 '78 년에 486 kg, '79 年 463 kg, '80 년에는 287 kg으로 계속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表 3 - 5>. '74 ~ '77 年間に 新品種의 段收는 在來種에 비하여 21.0 ~ 43.3 %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78 년에는 11.7 %, '79 년에는 5.9 %로 떨어졌고 '80 년에는 오히려 1.7 %가 減收됐다 <表 3 - 5>. 이같은 新品種段收의 不安定성과 消費者의 一般米 選好傾向 때문에 新品種 植付比率은 1978 년의 76.2 %에서 계속 감소하여 1983 년에는 34.3 %에 이르렀다. 新品種의 植付比率이 감소함에 따라 新品種의 段收와 在來種의 段收의 差異는 늘어나 1983 년도 新品種의 段收는 在來種의 그것보다 15 % (10 a 當 63 kg) 정도 높은 수준이다.

1983 년도 현재 在來種의 段收 420 kg은 日本의 段收 458 kg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試驗場의 在來種 段收 558 kg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在來種의 段收增加의 潜在力은 상당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政府에서는 多收穫 品種開發에 力點을 둔 나머지 在來種의 育種事業에는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消費者의 嗜好에 부합되는 米質이 양호한 品種開發에 보다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며, 在來種의 段收提高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米穀의 需要는 1986 년에 5,370 %, 1991 년에

表 3 - 5 水稻品種別 段收 및 植付面積 推移, 1975~83

年 度	段 收 (kg)				植 付 面 積 (千ha)		
	新品種 (A)	在來種 (B)	平 均	A/B %	新品種	在來種	計
1975	503	351	386	143.3	274.1 (22.9)	924.0 (77.1)	1,198.1 (100.0)
1976	479	396	433	121.0	533.2 (44.6)	663.0 (55.4)	1,196.2 (100.0)
1977	553	423	494	130.7	660.1 (54.6)	548.2 (45.4)	1,208.3 (100.0)
1978	486	435	474	111.7	929.0 (76.2)	290.1 (23.8)	1,219.1 (100.0)
1979	463	437	453	105.9	744.3 (60.8)	479.9 (39.2)	1,224.2 (100.0)
1980	287	292	290	98.3	604.1 (49.5)	615.7 (50.5)	1,219.8 (100.0)
1981	437	408	415	107.1	321.3 (26.5)	890.9 (73.5)	1,212.2 (100.0)
1982	489	413	438	118.4	386.4 (32.9)	789.6 (67.1)	1,176.0 (100.0)
1983	483	420	441	115.0	418.5 (34.3)	801.1 (65.7)	1,219.6 (100.0)

()內는 構成比임.

資料: 農水産部

는 5,453 千ㄱ으로 1983 年 對比 각각 1.4%, 2.9% 増加할 것으로 推定되었다. 한편, 1983 년도 米穀生産量 5,175 千ㄱ을 기준으로 볼 때 쌀 自給을 위해서는 米穀生産量은 年間 0.7%씩 증가하면 된다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安定的인 쌀自給基盤의 擴充과 生産性提高를 위한 노력이 持續된다면 쌀自給의 可能性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政府에서는 1984 年 부터 米品種選擇을 農民의 自律意思에 全적으로 맡기는 品種選擇의 自律化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新品種의 植付比率이 더욱 下落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1983 年 현재 新品種의 段收는 在來種보다 약 15%나 높은 수준이므로 新品種 栽培面積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토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新品種 優先收買는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편, 消費者의 지나친 一般米 選好경향과 政府米 流通組織의 硬直性 등으로 政府米의 一般米價格 調節機能이 弱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米穀流通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一般米의 效率의인 需給 및 價格安定對策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米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한 方案으로서 政府에서 一般米의 收買를 확대하는 方案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쌀收買量 水準은 新品種 收買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政府의 一般米 收買擴大는 政府財政형편상 限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우기 政府糧穀管理의 硬直性 등을 고려할 때 一般米의 流通은 自律市場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農協으로 하여금 一般米流通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는 方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米穀의 價格動向

一般米價格의 年度別 變動推移를 살펴 보면 <表 3 - 6>과 같이 1970 ~ '83 年間に 農家販賣價格은 약 9.6 배로 上昇하였으며, 都賣價格은 약 10.6 배, 消費者價格은 약 10.8 배로 각각 상승하였다. 그러나 同期間中 農家購入價格指數는 10.0 배 都賣物價指數는 6.8 배, 消費者物價指數는 6.1 배로 上昇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한 1983 年度 一般米의 實質價格은 1970 年 對比 農販價格은 약 4 % 하락하였으나 都賣價格과 消費者價格은 각각 57 %, 78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 ~ '83 년간의 一般米 實質米價의 年度別 推移를 살펴 보면 <圖 3 - 1>과 같이 農家販賣價格은 1975 年까지는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그후에는 연도간의 起伏은 있으나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實質都賣價格은 1979 年까지 그리고 實質小賣價格은 1981 年까지 대체로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그후에는 약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3 - 6 年度別 一般米 價格 推移, 1970~83

單位: 원 / 80 kg

區 分		'70年	'75年	'80年	'83年	'83/'70 (%)	'83/'80 (%)
一般米 價格 (A)	農 販 價 格	6,106	18,653	48,893	58,827	963.4	120.3
	都 賣 價 格	5,784	18,367	47,663	61,164	1057.5	128.3
	消 費 者 價 格	6,320	20,120	53,230	68,080	1077.2	127.9
物 價 指 數 (B)	農家購入價格指數	15.6	37.1	100.0	156.2	1001.3	156.2
	都 賣 物 價 指 數	18.7	44.4	100.0	126.3	675.4	126.3
	消 費 者 物 價 指 數	22.2	45.2	100.0	134.5	605.9	134.5
實 質 價 格 (A/B)	農 販 價 格	39,141	50,278	48,893	37,661	96.2	77.0
	都 賣 價 格	30,930	41,367	47,663	48,428	156.6	101.6
	消 費 者 價 格	28,468	44,513	53,230	50,617	177.8	95.1

1) 해당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가격임.

자료: 農協中央會, 「農協調查月報」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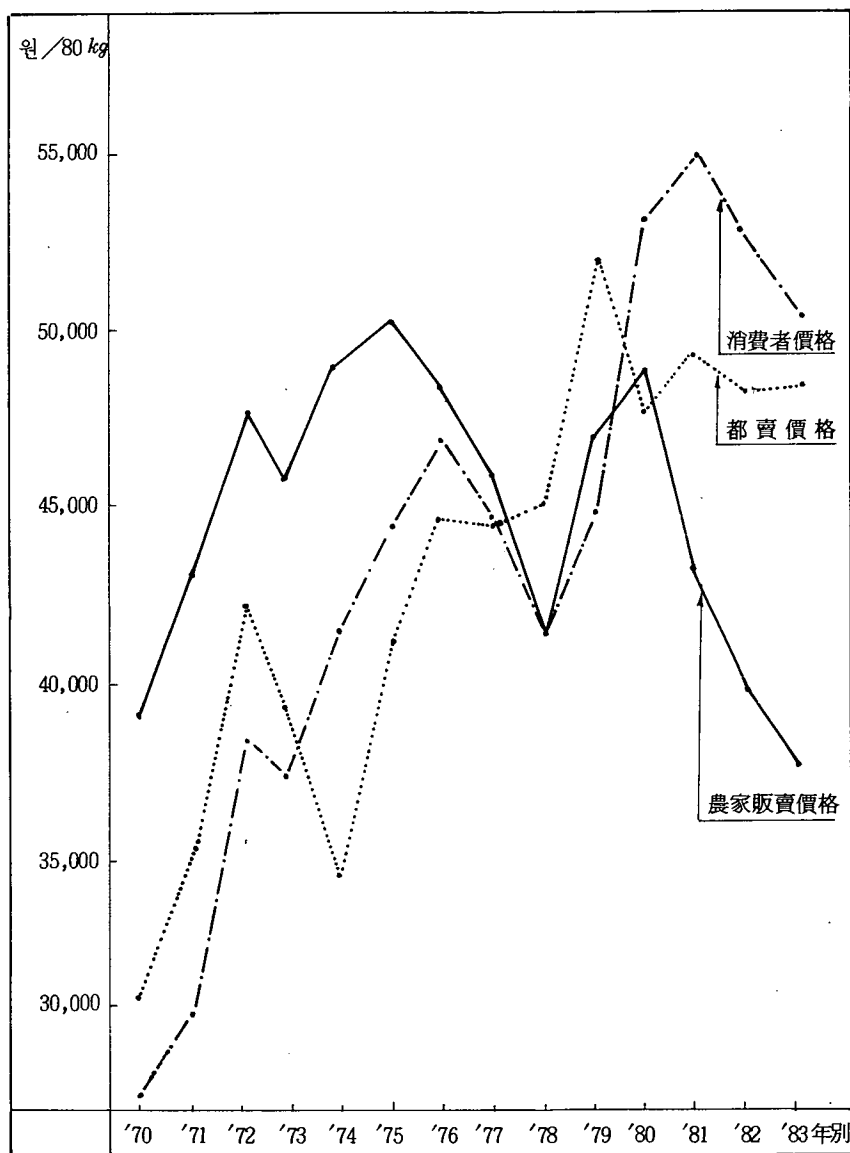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米價의 前年對比 上昇率을 보면 <表 3 - 7>에서와 같이 1960 ~ '62 年間に 農家販賣價格은 6.2 ~ 24.0 % 상승에 머물렀으나 1963년에는 穀價波動으로 前年對比 59.3 %나 上昇하였다.

1964 ~ '68 년간의 米價上昇率은 年平均 10.3 %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1968 ~ '80 年間에는 高米價施策 등에 의하여 비교적 높은 米價上昇率을 보이고 있다. 즉, 農家販賣價格의 경우 1971년에는 前年對比 25.7 %, 1974년에는 44.5 % 上昇하였다. 특히, 1980년에는 쌀의 大凶作으로 농가판매 가격은 前年對比 29.4 % 상승하였고, 소비자 가격은 소비자의 假需要현상 때문에 前年對比 52.4 %나 올랐다.

그러나 1982 년과 1983 년에 米價는 前年對比 불과 2 ~ 3 % 상승에 머물러 크게 안정되었다. 이 기간에 市中米價가 크게 안정된 것은 政府의 物價安定施策에 힘입어 物價가 크게 안정되었고, 收買價格 引上率도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1982 년도에 精穀 80 kg 가마당 쌀收買價格은 55,970 원으로 前年對比 7.3 % 引上에 머물렀고 1983 년의 收買價格은 55,

圖 3 - 1 米穀의 實質價格 變動 推移, 1970~83



資料：農協中央會，「農協調查月報」
韓國銀行，「調查統計月報」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表 3 - 7 年度別 市中 米價 動向, 1960~83

단위 : 원 / 80 kg, %

年 度	農家販賣價格		都 賣 價 格		消 費 者 價 格	
	價 格	前年對比 上 昇 率	價 格	前年對比 上 昇 率	價 格	前年對比 上 昇 率
1960	1,311	19.3	1,368	18.2	-	-
1961	1,626	24.0	1,687	23.3	-	-
1962	1,726	6.2	1,768	4.8	1,885	-
1963	2,750	59.3	2,801	58.4	3,010	59.7
1964	3,422	24.4	3,470	23.9	3,680	22.3
1965	3,210	△6.2	3,324	△4.2	3,515	△4.5
1966	3,386	5.5	3,449	3.8	3,650	3.8
1967	3,730	10.2	3,750	8.7	3,955	8.4
1968	4,390	17.7	4,289	14.4	4,660	17.8
1969	5,435	23.8	5,140	19.8	5,390	15.7
1970	6,106	12.3	5,784	12.5	6,320	17.3
1971	7,674	25.7	7,153	23.7	7,760	22.8
1972	9,742	26.9	9,844	37.6	10,790	39.0
1973	10,204	4.7	7,728	△1.2	10,830	0.4
1974	14,749	44.5	12,175	25.2	14,970	38.2
1975	18,653	26.5	18,367	50.9	20,120	34.4
1976	22,468	20.5	22,235	21.1	24,450	21.5
1977	24,843	10.6	24,196	8.8	25,680	5.0
1978	29,131	17.3	28,196	16.5	27,200	5.9
1979	37,787	29.7	37,555	33.2	34,930	28.4
1980	48,893	29.4	47,663	26.9	53,230	52.4
1981	55,564	13.6	59,384	24.6	66,740	25.4
1982	57,462	3.4	60,694	2.2	68,250	2.3
1983	58,827	2.4	61,164	0.8	68,080	0.2

자료 : 農協中央會, 「農協調查月報」.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表 3 - 8 年度別 쌀 收買 및 放出價格動向, 1960~83

단위 : 원 / 80 kg

年 度	收 買 價 格 (A)		放 出 價 格 (B) ¹⁾		價 格 差 (B - A)
	價 格	前年對比 上 昇 率	價 格	前年對比 上 昇 率	
		%		%	
1 9 6 0	1,059	0	1,216	0	157
1 9 6 1	1,550	46.4	1,792	47.4	242
1 9 6 2	1,650	6.5	1,888	5.4	238
1 9 6 3	2,060	24.8	2,312	22.5	252
1 9 6 4	2,967	44.0	3,450	49.2	483
1 9 6 5	3,150	6.2	3,350	△ 2.9	200
1 9 6 6	3,306	5.0	3,900	16.4	594
1 9 6 7	3,590	8.6	4,100	5.1	510
1 9 6 8	4,200	17.0	5,200	26.8	1,000
1 9 6 9	5,150	22.6	5,470	5.2	320
1 9 7 0	7,000	35.9	6,500	18.8	△ 500
1 9 7 1	8,750	25.0	9,500	46.2	750
1 9 7 2	9,888	13.0	9,500	0	△ 388
1 9 7 3	11,377	15.1	11,264	18.6	△ 113
1 9 7 4	15,760	38.5	13,000	15.4	△ 2,760
1 9 7 5	19,500	23.7	16,730	28.7	△ 2,770
1 9 7 6	23,200	19.0	19,500	16.6	△ 3,700
1 9 7 7	26,000	12.1	22,420	15.0	△ 3,580
1 9 7 8	30,000	15.4	26,500	18.2	△ 3,500
1 9 7 9	36,600	22.0	32,000	20.8	△ 4,600
1 9 8 0	45,750	25.0	44,000	37.5	△ 1,750
1 9 8 1	52,160	14.0	53,280	21.1	1,120
1 9 8 2	55,970	7.3	52,280	△ 1.9	△ 3,690
1 9 8 3	55,970	0	52,280	0	△ 3,690

1) 上品基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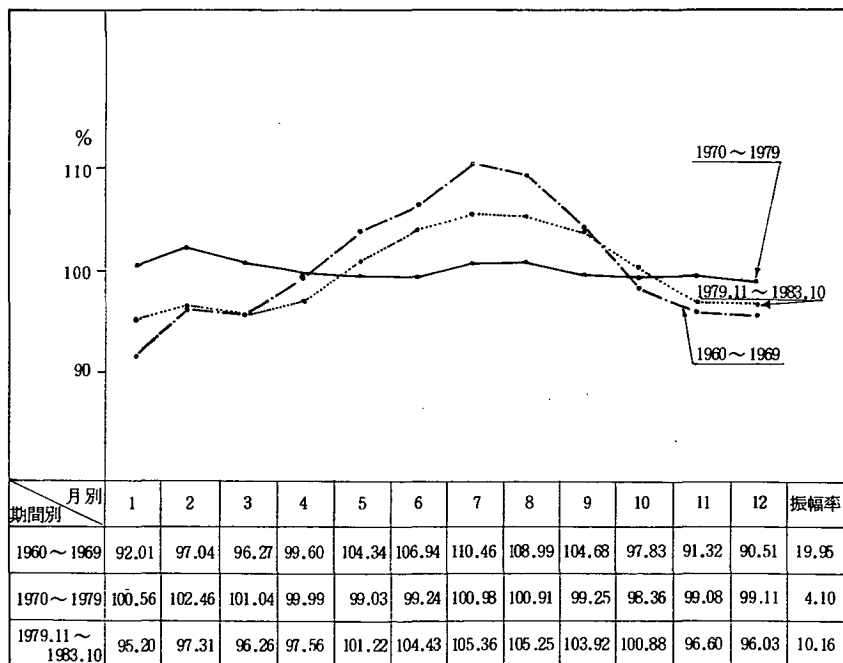
자료 : 農水產部 糧政局.

970 원으로 前年度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 表 3 - 8 >.

米價의 季節價格變動指數를 보면 < 圖 3 - 2 > 와 같이 1960 ~ '69년간에는 19.95 %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1970 ~ '79 년간에는 4.1 %로 크게 안정되었고 1980 ~ '83 년간에는 10.16 %로 1970 年代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다. 1960 ~ '69 년간에 米穀의 季節價格振幅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 기간중에 政府의 쌀收買量이 쌀生産量의 4 ~ 10 %에 불과하여 收穫期는 물론 端境期의 米價安定에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70 ~ '79 년간에 米穀의 季節價格振幅은 불과 4 %로 크게 安定되었는데 이는 이 기간중에 쌀生産量에 대한 收買量의 比率이 9 ~ 27 %

圖 3 - 2 米價(都賣價格)의 季節變動 指數, 1960. 1 ~ 1983. 10. 平均



資料 : 韓國銀行, 「 調査統計月報 」

로 대폭 증가하였고 物價安定을 위해 政府米를 市中價格보다도 낮은 價格으로 大量放出한데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그러나 1981 ~ '83 년간에 쌀收買量의 比率이 약 24 %로서 비교적 높은 데도 불구하고 쌀의 季節價格振幅이 1970 年代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所得向上으로 消費者의 一般米選好傾向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政府米의 一般米에 대한 價格調節機能이 相對적으로 약화된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消費者의 지나친 一般米選好 때문에 政府米와 一般米間의 代替性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 政府米在庫量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一般米價格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政府米만 가지고 一般米價格의 安定을 도모하는데는 限界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米穀流通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一般米의 效率的인 需給 및 價格安定對策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民間流通組織의 育成이 바람직하다.

年度別 一般米 都賣價格의 振幅을 다른 方式 즉 해당년의 最高價格, 最低價格 및 平均價格으로부터 아래의 式에서 계산한 결과를 要約하면 <表 3 - 9>와 같다.

$$\text{즉, 價格振幅} = (\text{最高價格} - \text{最低價格}) / \text{平均價格} \times 100$$

위의 式에서 計算된 1960 年代 米穀의 平均 季節價格振幅은 33.4 %나 되었으며 이는 生産量에 대한 收買量의 比率이 4 ~ 10 %로서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그후 政府의 收買量이 증가함에 따라 1970 年代의 米價振幅은 平均 17 %로서 1960 年代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1980 ~ '83 년간의 平均價格振幅은 24.2 %로 1970 年代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기간에 있어 쌀生産量에 대한 收買量의 비율은 24 %로서 1970 年代와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一般米의 價格振幅이 相對적으로 큰 것은 所得向上에 따라 消費者의 一般米選好도가 증대된데 주로 기인되며, 이는 政府米의 一般米價格調節機能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表 3 - 9 年度別 쌀의 生産, 收買 및 放出量과 一般米 價格振幅 推移, 1960~83

單位: 千石, %

米穀 年度	生産量 (A)	收買量 (B)	B/A (%)	放出量	1) 非農家 1人當 放出量 (C), kg	2) 非農家 1人當 消費量 (D), kg	C/D (%)	3) 年 末 在 庫	4) 平均 價格 振 幅 (%)	最低 月	最高 月
1960	16,602	978	5.9	525	7.2	-	-	-	53.7	12	8
1961	21,157	2,146	10.1	136	1.7	-	-	-	35.5	11	5
1962	24,046	1,932	8.0	652	12.6	-	-	-	28.3	1	9
1963	20,937	1,554	7.4	1,829	21.2	100.5	21.1	-	60.1	11	7
1964	26,098	1,664	6.4	517	5.8	117.2	4.9	-	48.4	12	5
1965	27,462	2,097	7.6	652	7.3	126.7	5.8	-	19.9	11	9
1966	24,313	2,439	10.0	1,509	15.5	131.1	11.8	-	30.8	12	9
1967	27,217	1,940	7.1	1,977	19.9	144.6	13.8	-	23.9	12	7
1968	25,022	919	3.7	3,067	29.1	147.7	19.7	-	23.1	12	10
1969	22,190	2,221	10.0	4,731	42.2	138.9	30.4	-	10.3	12	6
1970	28,406	2,436	8.6	5,199	42.0	147.6	28.5	506	6.8	11	5
1971	27,356	3,418	12.5	8,197	65.0	148.5	43.8	△29	17.8	11	10
1972	27,761	3,520	12.7	4,090	31.3	141.7	22.1	2,385	22.1	11	3
1973	27,481	3,331	12.1	4,211	31.2	131.1	23.8	3,116	2.4	1	5
1974	29,248	5,105	17.5	6,747	45.8	131.3	34.9	934	21.4	11	10
1975	30,867	5,483	17.8	3,838	25.1	120.1	20.9	4,383	30.1	11	10
1976	32,424	7,245	22.3	5,890	36.8	115.7	31.8	4,350	7.7	12	10
1977	36,215	9,742	26.9	4,210	25.2	121.7	20.7	7,133	13.3	1	8
1978	41,706	9,413	22.6	8,215	46.5	129.2	36.0	5,393	17.7	12	10
1979	40,258	9,032	22.4	11,686	63.1	129.4	48.8	2,566	30.4	11	10
1980	35,664	3,790	10.6	12,099	63.8	125.5	50.8	3,070	39.0	12	10
1981	24,655	6,356	25.8	10,868	54.5	125.8	43.3	10,385	19.5	11	8
1982	35,160	7,577	21.6	4,855	23.6	121.8	19.4	9,542	25.9	1	7
1983	35,938	8,468	23.6	6,327	29.9	118.2	25.3	10,493	12.4	12	6

1) 정부방출량은 非農家に 국한함.

2) 歷年基準임.

3) 米穀年度 10 月末 在庫

4) (最高價格 - 最低價格) / 平均價格

4. 米穀의 流通組織 및 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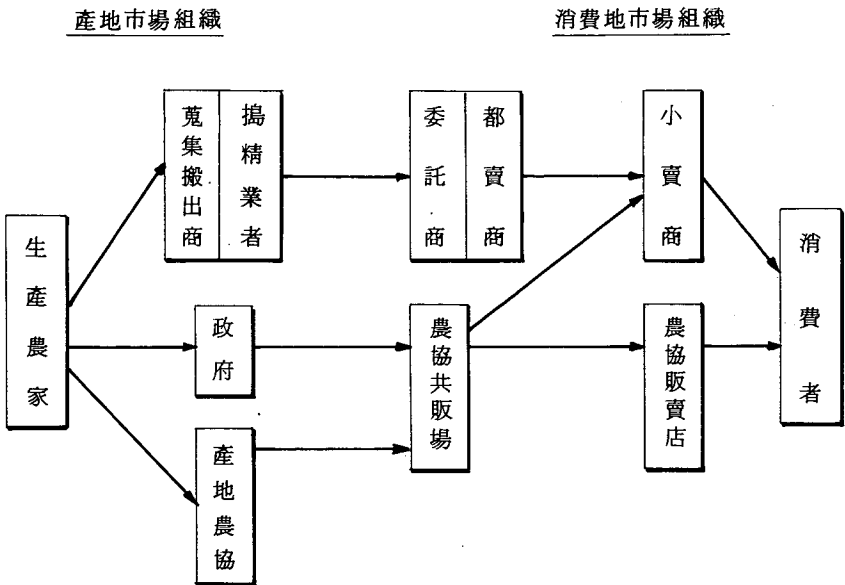
米穀은 主食糧資源으로 多數의 消費者가 散在해 있어 需給組織이 完全競爭下에 놓여 있다. 또한, 米穀은 容積에 비해 重量이 무거우나 長期貯藏이 가능하고 包裝이 쉬워 취급이 편리하지만 品質의 標準化, 等級化가 어려운 物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米穀의 需給構造와 物的特性은 米穀流通組織의 構成要件이 되고 있다.

더욱이 米穀은 需要와 供給이 非彈力的이므로 근소한 需給의 不均衡에도 格심한 價格變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政府는 米穀의 安定供給과 價格安定을 위해 米穀出荷期에 生産者로부터 米穀을 收買하여 적절한 시기에 消費地市場에 放出하는 政府糧穀管理制度를 운영하여 왔다. 農協에서도 適正米價의 維持와 流通費節減 및 流通秩序確立을 위하여 米穀의 系統出荷事業을 實施함으로써 米穀流通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商人組織이 米穀流通의 大宗을 이루었으나 최근 政府米의 流通量이 增大됨에 따라 一般商人組織의 기능은 相對적으로 약화되어 왔으나 아직도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米穀流通組織은 政府管理組織과 自由市場組織으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自由市場組織은 一般商人組織과 農協組織으로 區分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米穀流通은 政府和商人, 農協의 三主體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政府米流通은 生産地와 消費地의 行政組織, 農協組織 및 一般商人組織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農協流通組織은 産地의 單位組合, 農協郡支部, 農産物集荷場 등의 蒐集搬出組織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大消費地의 農協共販場, 農協販賣店의 分散組織을 중심으로 하는 分配組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商人流通組織은 産地의 蒐集搬出商, 搗精業者 등을 중심으로 하는 産地市場組織과 消費地의 委託商, 都賣商과 小賣商을 中心으로 하는 消費地市場組織으로 구성되어 있다(圖 3 - 3).

米穀의 流通過程을 流通機關의 측면에서 보면 都賣商, 小賣商, 委託商, 仲介人과 같은 交換機能을 하는 機關, 搗精業者, 倉庫業者, 輸送業者와 같

圖 3 - 3 米穀 流通組織 및 經路



은 物動機能을 담당하는 機關, 그리고 檢査所, 銀行, 糧穀去來所, 共販場과 같은 補助的 機關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糧穀管理法에 의거 糧穀賣買業을 營爲하려면 各 業種의 구분에 따라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한편, 米穀市場은 米穀의 生産 및 去來가 이루어지고 있는 場所別로 나누어 生産地市場, 集散地市場, 消費地市場으로 區分할 수 있겠다.

첫째, 生産地市場은 米穀의 일반적인 蒐集搬出過程을 담당한다. 이 生産地市場은 크게 自由市場經路와 政府經路로 나누어지고 自由市場은 다시 傳統的인 商人經路와 農協經路로 구분된다<圖 3 - 3>.

集散地市場은 生産地市場에서 蒐集된 米穀을 消費地市場으로 大量搬出하는 仲介機能이 이루어지는 市場이다. 즉, 이 市場은 生産地나 單位組合에서 出荷된 米穀을 消費地市場의 共販場이나 直賣場 또는 委託商이나 都賣商에 輸送하여 販賣하도록 하는 仲介機能을 맡고 있다. 최근 交通手

段의 발달로 消費地市場과 產地市場이 直接 連結돼 集散地市場의 比重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米穀의 流通經路別 流通物量の 構成比를 보면 <表 3 - 10>과 같이 1983년의 경우 商人經路의 比重이 70.7%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政府經路는 28.1% 그리고 農協經路는 1.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米穀의 流通經路는 商人組織을 통한 經路로서 1965년의 경우 이를 통한 流通物量이 米穀商品化量에 차지하는 비율은 83.9%나 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정부의 쌀 수매량이 증대함에 따라 商人經路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는 55.9%까지 下落하였다. 이와 같이 商人經路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米穀流通에 있어 큰 比重을 유지하고 있다. 1979년 이후 쌀收買量이 相對的으로 감소함에 따라 商人經路의 비율은 1982년에 73.5%, 1983년에는 70.7%로서 1970년대 후반에 비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3 - 10 米穀의 流通經路別 流通量

單位：千噸

米 穀 年 度	商 品 化 量 ¹⁾ (A)	政 府 經 路 (B)	農 協 經 路 (C)	商 人 經 路 ²⁾ (D)
1965	1,936 (100.0)	302 (15.6)	9 (0.5)	1,625 (83.9)
1970	1,918 (100.0)	351 (18.3)	54 (2.8)	1,513 (78.9)
1975	2,140 (100.0)	735 (34.3)	94 (4.4)	1,311 (61.3)
1976	2,248 (100.0)	790 (35.2)	84 (3.7)	1,374 (61.1)
1977	2,675 (100.0)	1,043 (40.0)	67 (2.5)	1,565 (58.5)
1978	3,243 (100.0)	1,403 (43.3)	29 (0.9)	1,811 (55.8)
1979	3,154 (100.0)	1,355 (43.0)	36 (1.1)	1,763 (55.9)
1980	1,875 (100.0)	1,301 (69.4)	32 (1.7)	542 (28.9)
1981	3,544 (100.0)	546 (15.4)	36 (1.0)	2,962 (83.6)
1982	3,628 (100.0)	915 (25.2)	45 (1.2)	2,668 (73.5)
1983	3,885 (100.0)	1,091 (28.1)	47 (1.2)	2,747 (70.7)

1) 推定值임 (朱龍宰外, 米穀流通에 관한 研究, 1980. p.16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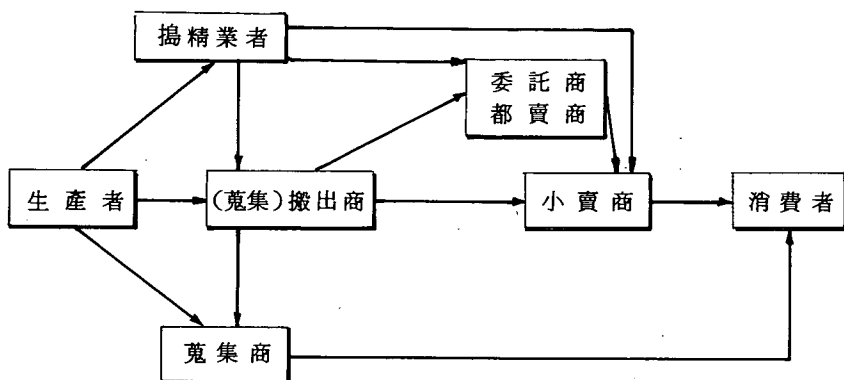
2) $D = A - B - C$

資料：農水産部, 「農林統計年報」, 「韓國糧政史」

農協中央會 共販部.

米穀流通에 있어 商人組織의 米穀流通經路를 生産地市場의 蒐集搬出段階에서 본다면 蒐集商이나 搗精業者 등을 거쳐 搬出商에 의해 消費地市場에 搬出되는 경우와 蒐集搬出商 혹은 搗精業者가 蒐集과 搬出機能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 다 <圖 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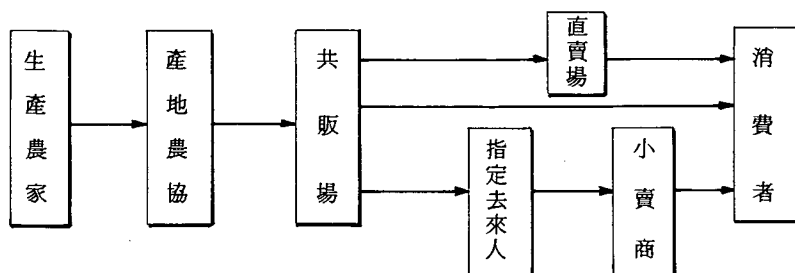
圖 3 - 4 米穀의 商人流通經路



또 消費地市場의 分散段階에서 볼 때 都賣市場을 경유하여 流通되는 경우와 産地市場에서 小賣商으로 직접 流通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生産地市場에서의 米穀의 蒐集 搬出機能은 經濟主體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生産地 商人은 蒐集과 搬出機能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經濟發展으로 交通과 通信手段이 발달됨에 따라 消費地市場의 소매상과 産地의 蒐集 搬出商과의 直結去來가 현저히 증가한 반면 都賣市場을 경유하는 流通經路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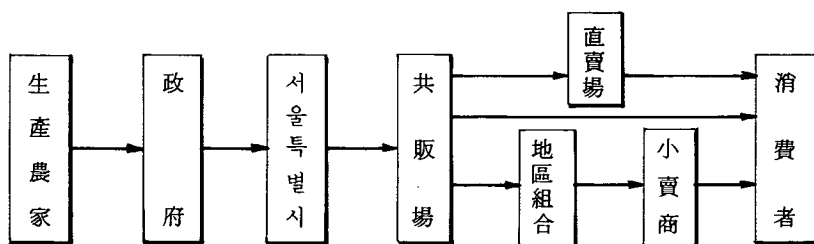
한편 <圖 3 - 5>와 같이 농협을 통한 流通經路를 거친 系統出荷量은 1965년의 0.5%에서 1975년에는 4.4%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1983년 현재 전체유통량의 1.2%로 크게 낮아졌다.

圖 3 - 5 農協組織을 통한 米穀流通經路



政府管理下の流通經路는 政府에서 收買한 米穀을 農協直賣場이나 小賣商을 통해 穀價調節用으로 放出하는 경로이다〈圖 3 - 6〉. 이 경로를 통한 流通物量이 전체유통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의 15.6%에서 1980년에는 69.4%까지 증가하였으나 그후에는 계속 감소하여 1983년에는 28%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政府米流通組織을 통한 流通物量은 전체 流通量의 28%로서 아직도 상당히 큰 比重을 점하고 있다.

圖 3 - 6 政府管理下の 米穀流通經路 (서울市の 경우)



第 4 章

서울市 米穀流通現況 및 當面課題

1. 서울市 米穀流通 現況

가. 商人의 種類 및 分布

서울市에 등록된 糧穀商數는 1983년 2월 현재 委託商이 141명, 都賣商이 42名, 小賣商이 8,054명 그리고 農協販賣店이 881個所가 등록되어 있다〈表 4-1〉.

全國 商人數 중에서 서울시가 점하는 比率을 보면 委託商이 89%, 都賣商이 14.5%, 小賣商이 26.3%, 農協販賣店이 29.8%로서 委託商은 대부분 서울에 分布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시의 都賣商 比率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年度別 서울市內 米穀商數의 推移를 보면 委託商은 1968년의 120명에서 1978년에는 15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후에는 약간 감소추세에 있으며 都賣商은 1968년에 153명이나 되었으나 1983년에는 42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에 小賣商數는 이기간 중에 4,990명에서 8,054명으로 약 61.4% 증가하였다.

한편 農協販賣店은 政府收買物量이 증대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1,384 個所까지 증가하였으나 그후에는 政府收買物量の 감소와 農協系統事業의不振등으로 현저한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市內 도매상의 數가 1968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은 政府米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商人組織이 크게 萎縮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서울시의 위탁상수 역시 최근에 감소추세에 있는 데 이는 產地直結去來의 搬入物量이 크게 增加함에 따라 糧穀都賣市場 經유의 搬入量이 현저히 감소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4년도 1月 30日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 등록된 委託商數는 138명에 달하며, 이들 상인들은 産地의 蒐集, 搬出商들로부터 米穀販賣를 委託받아 주로 小賣商 혹은 大量需要者에게 販賣하고 있다. 성동中央市場內에는 糧穀都賣商 32名, 小賣商 32名이 營業을 하고 있으나, 都賣商중에 米穀을 주로 취급하는 상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콩, 팥, 수수, 조 등 雜穀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米穀을 취급하는 경우는 都小賣機能을 겸하고 있다.

한편, 서울市 6個所의 農協共販場은 産地의 單位組合 또는 郡組合으로부터 系統出荷된 米穀을 買取 혹은 受託하여 農協販賣店을 통하여 販賣하는 米穀의 中斷市場機構로서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나 農協共販事

表 4 - 1 全國 및 서울市 糧穀商 分布

調査時點	委 託 商			都 賣 商			小 賣 商			農協販賣店			蒐 集 商		
	서울 (A)	전국 (B)	A/B %	서울	전국	A/B %	서울	전국	A/B %	서울	전국	A/B %	서울	전국	A/B %
1968.12	120	-	-	153	-	-	4,990	-	-	2	-	-	-	-	-
1975.12	151	179	84.4	43	507	8.5	7,193	23,145	31.1	545	1,210	45.0	-	-	-
1978. 7	157	184	85.3	47	507	9.3	7,367	25,427	29.0	645	1,606	40.2	-	-	-
1980. 6	141	180	78.3	29	467	6.2	6,491	25,279	25.7	1,384	3,759	36.8	9	1,787	0.5
1983. 2	141	157	89.8	42	289	14.5	8,054	30,607	26.3	881	2,954	29.8	0	1,067	-

資料 : 農協中央會 「米穀마켓팅 實態調査報告書」, 1968, 197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米穀流通에 관한 연구」, 1980.

農水産部 「糧政資料」

業의 부진으로 一般米流通에 있어 그 비중이 극히 낮으며, 政府米의 分配業務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消費地市場에서 최종적인 分散機能을 수행하는 것은 一般小賣商과 農協販賣店이다. 小賣商은 一般米과 政府米을, 農協販賣店은 農協系統米과 政府米을 각각 취급하고 있다. 小賣商의 去來實態를 보면 小賣商은 委託商이나 都賣商으로부터 米穀을 직접 구입하여 最終消費者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小賣商은 分散機能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表 4 - 2 서울市 地域別 小賣商 및 農協 販賣店 分布

區 分 區 別	小賣商 ¹⁾ (A)	農協販 ²⁾ 賣店(B)	計 (C)	人口數 ³⁾ (D)	D / A	D / B	D / C
				名	名	名	名
총 로 구	265	24	289	276,934	1,045	11,539	958
중 구	252	20	272	224,533	891	11,227	825
용 산 구	274	27	301	334,811	1,222	12,400	1,112
성 동 구	608	62	670	737,510	1,213	11,895	1,101
동 대 문 구	821	64	885	914,121	1,113	14,283	1,033
성 북 구	456	47	503	589,356	1,292	12,539	1,172
도 봉 구	701	73	774	812,956	1,160	11,136	1,050
은 평 구	359	35	394	422,209	1,176	12,063	1,072
서 대 문 구	347	38	385	422,652	1,218	11,122	1,181
마 포 구	358	26	384	439,174	1,227	16,891	1,143
강 서 구	533	48	581	634,825	1,191	13,226	1,098
구 로 구	533	81	614	629,663	1,181	7,774	1,026
영 등 포 구	417	25	442	446,187	1,070	17,847	1,009
동 작 구	343	27	370	400,336	1,167	14,827	1,082
관 약 구	434	51	485	539,845	1,244	10,585	1,113
강 남 구	414	37	451	651,729	1,574	17,653	1,445
강 동 구	593	40	633	727,538	1,227	18,188	1,149
계	7,708	725	8,433	9,204,344	1,194	12,697	1,091

1) 小賣商分布는 1984년 1월 30일 기준임.

2) 農協販賣店分布는 1983년 12월 기준임.

3) 서울市 常住人口數임 (1983.10.1)

資料 : 서울市 통계과, 全國糧穀商聯合會

규모가 큰 小賣商은 產地에 직접가서 米穀을 蒐集, 搬出하기도 한다.

또한 영세한 小賣商은 大規模商人이 產地에서 수집한 米穀을 공급받거나 몇몇 零細小賣商이 공동으로 產地에서 蒐集하여 分配하는 경우도 있다.

1984년 1월 30일 현재 서울市에는 一般小賣商이 7,708名, 農協販賣店 725個소가 있다. 서울市의 地域別 小賣店舖의 分布를 보면 一般小賣商은 人口 약 1,194명당 1개소, 農協販賣店은 人口 약 12,697명당 1개소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一般小賣商과 農協販賣店을 합한 糧穀小賣店舖는 人口 1,091명당 1개소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表 4-2>.

나. 서울市 米穀消費量 推移 및 展望

서울市の 米穀消費量資料는 米穀流通政策을 수립함에 있어서 重要な 基礎資料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前提下에서 서울市の 쌀消費量を 推定하였다.

前 提 條 件

1) 서울市の 人口는 常住人口를 擇하였다. 즉, 상당수의 人口가 每日 移動하나, 流動人口는 서로 相殺되는 것으로 가정.

2) 서울市の 1人當 쌀消費量은 農水産部統計官室에서 調査한 非農家の 1人當 消費量과 同一한 것으로 가정.

3) 서울市の 쌀所得彈性値는 非農家の 쌀消費量資料로부터 推定한 -0.24를 적용.

4) 1人當 年平均 實質所得增加率은 6%, 實質價格은 1983년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위와 같은 前提下에서 서울市の 쌀消費量を 推定한 결과를 要約하면 <表 4-3>과 같으며 1983년까지의 쌀消費量은 실제의 서울市 人口數에 1人當 年間 非農家 쌀消費量を 곱하여 推定한 것이다.

서울市の 쌀消費量 推移를 보면, 1975년의 827千㎏에서 1983년에는 1,105千㎏로 지난 8년간에 약 34%(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市の 1人當 쌀消費量은 1975년의 120㎏에서 1983년의 118㎏으

表 4 - 3 年度別 서울시 米穀 消費量 推移 및 展望

年 度	人 口 (千名)	1人當消費量 (kg)	總 消 費 量 (千%)
1 9 7 0	5,525	147.6	815
1 9 7 5	6,890	120.1	827
1 9 8 0	8,367	125.5	1,050
1 9 8 1	8,676	125.8	1,091
1 9 8 2	8,916	121.8	1,086
1 9 8 3	9,204	120.1	1,105
1 9 8 4	9,763	118.4	1,156
1 9 8 5	10,112	116.7	1,180
1 9 8 6	10,482	115.0	1,205
1 9 8 7	10,852	113.3	1,230
1 9 8 8	11,222	111.7	1,253
1 9 8 9	11,592	110.1	1,276
1 9 9 0	11,961	108.5	1,298
1 9 9 1	12,330	106.9	1,318

資料：經濟企劃院，人口部門實務計劃，第5次 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期食糧需給에 관한 研究」，1982.

로 약간 감소하였으므로 이 기간중의 쌀消費量增加는 人口增加에 비롯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의 1人當 쌀消費量은 所得向上과 더불어 감소하여 1986년에는 115.0 kg, 1991년에는 106.9 kg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1人當 쌀消費量은 감소하더라도 人口增加로 서울시의 總 쌀消費量은 1986년에 1,205千%, 1991년에는 1,318千%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983년 對比 각각 9%, 19%증가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1991년도 서울시의 쌀消費量은 높은 人口增加에도 불구하고 1人當 쌀消費量의 감소로 현재수준보다 20%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서울시의 流通經路別 米穀搬入量 推定

앞에서 추정된 서울시의 쌀 消費量이 어떠한 經路를 통하여 서울시內에 搬入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에 米穀이 搬入되는 經路는 크게 政府組織, 農協組織 및 商人組織으로 구분된다. 商人經路는 都賣市場經由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형태 즉 直搬入의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위의 경로 중 政府流通組織, 農協組織 및 都賣市場경유의 流通物量은 關係機關 및 團體의 調査資料로부터 推定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총미곡소비량에서, 上記 세가지 경로의 米穀搬入量을 제외하고 남는 物量은 直搬入 즉, 產地直結去來의 형태로 반입된 量으로서,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유통된 상인경로의 유통물량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추정은 서울시에 반입된 물량은 當年에 소비되어 在庫의 증감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추정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추정된 서울시의 流通經路別 米穀搬入量의 비율을 보면〈表 4-4〉와 같이 1983 년도의 경우 政府米의 比重이 29.2%로서 비교적 큰 比重을 점하고 있으며 農協系統 出荷의 比率는 2.5%, 都賣市場경유는 7.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0.9%는 수많은 無許可 都賣商등을 통해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米穀搬入量의 推移를 보면 政府米의 比重은 1978 년에 49.6%에서 1979 년에는 69%로 증가하였고 1980 년에는 62.4%, 1981 년에는 52.7%로 상당히 큰 比重을 점하였다. 이와 같이 政府米의 流通比重이 증가됨에 따라 民間部門 특히 都賣市場經由 流通量과 農協系統 出荷物量이 크게 위축되었다.

1981 년 이후 서울시 쌀 放出量이 크게 減少하여 서울시 總米穀流通量 중에서 政府放出米가 점하는 比率는 1982 년에 25.5% 1983 년에 29.2%로 크게 減少하였으나 아직도 상당히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서울시 米穀搬入量 중 都賣市場을 經由한 物量은 '77 년까지는 20% 水準을 유지하였으나 '78 년에는 5.7%, '79 년에는 3.2%로 激減되었고, 그후에는 약간 증가하여 1983 년에는 7.3%에 머물고 있다.

表 4 - 4 年度別 流通經路別 서울市 米穀搬入量 推移

單位：千噸

年度別	總搬入量 ¹⁾ (A)	政府放出量 (B)	農協系統出荷 ²⁾ (C)	都賣市場經由 ³⁾ (D)	直搬入量 ⁴⁾ (E)
1975	827(100.0)	276(33.4)	50(6.0)	195(23.6)	306(37.0)
1978	1,011(100.0)	501(49.6)	13(1.3)	59(5.7)	438(43.4)
79	1,050(100.0)	725(69.0)	18(1.7)	37(3.2)	270(26.1)
80	1,050(100.0)	655(62.4)	21(2.0)	28(2.7)	346(33.0)
81	1,091(100.0)	575(52.7)	15(1.4)	47(4.3)	454(41.6)
82	1,086(100.0)	277(25.5)	27(2.5)	101(9.3)	681(62.7)
83	1,105(100.0)	323(29.2)	28(2.5)	81(7.3)	673(60.9)

1) 糧穀消費量 調査結果에 의한 非農家 1人1年間 米穀消費量 × 서울市 常住人口數

2) 서울市 農協共販場 販賣實績 (歷年基準임)

3) 서초동 類似都賣市場 搬入量임.

4) $E = A - B - C - D$

農協系統出荷量이 서울市 米穀搬入量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5년의 6.0%에서 一般米에 대한 最高價格制를 實施한 '78년에는 약 1.3%로 더욱 減少하였으며, 1983년에는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서울市 總搬入量 중 直搬入이 점하는 比率은 1978 ~ '81년간에 26 ~ 43%이었으나 1982년에는 62.7%, 1983년에는 60.9%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市 米穀流通에 있어서 都賣市場經由의 比重이 크게 減少한 것은 政府米의 放出量이 增加함에 따라 自由市場經路의 流通量이 相對的으로 減少한데다가 최근에 產地蒐集・搬出商과 消費地 小賣商과의 直結去來가 成行하게 된 데 주로 기인된다.

2. 米穀流通의 當面課題

가. 政府糧穀管理의 當面課題

1) 糧特赤字의 累積

1948년 이후 1960年代初까지는 政府가 低穀價制를 실시함으로써 生産農家의 增産意慾을 감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쌀消費를 助長함으로써 食糧不足을 더욱 深化시켰다. 이러한 食糧不足의 慢性化는 國際收支를 惡化시켰으며, 이는 工業化를 저해하는 要因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低農産物價格政策은 都農間의 所得격차를 더욱 深化시켜 社會不安의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諸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하여 政府는 1969년부터 收穫期穀價安定을 위하여 市中穀價보다 비교적 높은 價格으로 收買하였다가 端境期에는 消費者保護와 物價安定을 위하여 市中價格보다 저렴한 價格으로 放出하는 이른바 二重穀價制를 실시하여 왔다. 二重穀價制와 政府糧穀管理規模의 확대에 따른 糧特赤字의 累積과 收買資金의 집중 방출은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83년末 현재 糧特赤字 累積額은 總 15,835 억원에 달하였으며, 1983년 한해에 발생한 적자만도 3,370 억원에 이르고 있다. <表 4-5>

糧特赤字 累積額의 要因別 內譯을 보면 <表 4-6>에서와 같이 1983年末 현재 總 15,835 億원의 缺損 중 價格逆差로 인한 缺損이 6,691 億원으로 約 42%를 차지하며 利子, 價格補助 등 營業外 費用이 9,845 億원으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營業外 費用을 다시 구분하면 韓銀借入金과 糧穀證券에 대한 利子支拂이 40%인 6,401 億원으로 가장 많고 貸與穀 및 換差損등이 2,164 億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糧特赤字는 糧穀의 收買放出事業 自體보다 利子등 事業外費用

表 4 - 5 年度別 穀種別 糧特赤字 內譯

單位 : 億圓

年 度 別	쌀	보 리 쌀	기 타 잡곡	소 맥 분 가 격 보 조	計
1970 - 80	△ 5,584	△ 3,015	228	△ 1,280	△ 9,719
1981	△ 218	△ 1,268	45	-	△ 1,441
1982	△ 179	△ 1,157	31	-	△ 1,305
1983	△ 2,599	△ 851	80	-	△ 3,370
合 計	△ 8,580 (54.2)	△ 6,291 (39.71)	316 (-)	△ 1,280 (8.1)	△ 15,835 (100.0)

資料 : 農水產部, 糧政局

이 주된 要因임을 알 수 있다. 韓銀借入金에 대한 利子和 管理費 및 操作費 등은 農家所得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 糧特赤字중 약 42 %에 해당하는 價格差에서 발생한 赤字가 農家所得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나 이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比重이 消費者保護의 결과로 판단된다.

表 4 - 6 糧特赤字의 要因別 缺損內譯, 1970~83

單位 : 億圓

要 因 別	1970 ~ 50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果 實
缺 損 計	△ 2,490	△ 508	△ 631	△ 1,591	△ 2,087	△ 2,417	△ 1,441	△ 1,305	△ 3,370	△ 15,835
○ 純糧穀管理缺損	△ 852	△ 208	△ 379	△ 1,133	△ 1,425	△ 1,219	△ 124	62	△ 1,413	△ 6,413
糧穀賣出損益	△ 502	△ 93	△ 234	△ 942	△ 1,136	△ 897	283	469	△ 994	△ 4,469
操 作 費	△ 199	△ 69	△ 65	△ 119	△ 205	△ 226	△ 287	△ 273	△ 264	△ 1,264
管 理 費	△ 151	△ 46	△ 80	△ 72	△ 84	△ 96	△ 120	△ 134	△ 133	△ 1,084
○ 營業外費用	△ 1,681	△ 315	△ 286	△ 481	△ 725	△ 1,219	△ 1,385	△ 1,696	△ 2,107	△ 9,413
利 子	△ 192	△ 211	△ 279	△ 451	△ 569	△ 767	△ 980	△ 1,487	△ 1,465	△ 6,465
價 格 補 助	△ 1,265	△ 15	-	-	-	-	-	-	-	△ 1,265
其 他	△ 224	△ 89	△ 7	△ 30	△ 156	△ 452	△ 405	△ 184	△ 617	△ 2,148
○ 營業外收益	43	20	34	23	63	21	68	329	100	1,000

資料 : 農水產部, 糧政局

이상 언급한 糧特赤字는 韓國銀行으로부터 長期借入과 短期糧穀證券發行이라는 金融의 方法에 의하여 補填되고 있다. 즉, 糧特赤字는 日本이나 臺灣과 같이 一般會計에서 補填하지 못하고 韓銀借入과 糧穀證券發行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한 要因이 되고 있다. 이 같은 財源 調達方法은 財政 및 金融安定의 觀點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糧特赤字는 收穫期穀價安定을 통하여 食糧増産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人口의 큰 比重을 점하는 農民의 所得을 保護하는 동시에 端境期에 米價安定을 통하여 消費者 家計의 安定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現二重穀價制는 制度 그 자체보다 인플레이션적인 方式에 의해 運用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糧特赤字의 解消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穀價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綜合的으로 分析함으로써 全般的인 社會福祉를 最大化하는 方向에서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糧特赤字의 解消方案으로서는 糧特赤字의 規模를 줄이는 방법과 非인플레이션적인 방법으로 糧特赤字를 補填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번째의 方法으로서 收買價格과 放出價格의 差異를 줄이는 방법 즉, 收買價格의 引上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放出價格의 引上幅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米穀은 農家所得의 約 31%, 農業所得의 46%나 차지하므로 收買價格의 下向調整은 새로운 農家所得源이 開發되지 않는 限, 農家所得의 현저한 減少를 초래할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한편 放出價格의 上向調整은 특히 零細民의 家計負擔을 增加시키고 인플레이의 한 要因이 될 수 있으나 米穀이 家計費에 점하는 비율이 약 11%로 상당히 낮아졌으므로 적절한 放出米價의 引上은 家計費에 별로 큰 壓迫要因이 되지 않는다.

또한 1980년도 米穀의 都賣物價 加重値가 46.1/1,000로서 현저히 줄었으므로 적절한 米價上昇은 物價에 미치는 效果도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糧特赤字의 축소를 위해서는 收買價格의 下向調整보다는 放出價格을 市中米價의 변동에 連動시킴으로써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放出米價의 현실화는 政府米의 不正流通을 방지하는데 기

여할 뿐만 아니라 米價의 適正季節價格振幅을 허용함으로써 農民이나 商人의 米穀保管을 촉진시켜 政府糧穀의 操作費節減에도 공헌하리라 본다.

糧特赤字를 줄이기 위한 다른 方法은 收買量을 줄이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收買量의 減少는 收穫期 穀價의 暴落을 초래할 것이며, 農家所得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한 調查結果에 의하면 收穫期 10~12월에 米穀의 出荷量(政府收買分 포함)은 總商品化量の 약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農家規模別로 보면 수확기 즉, 10~12月間의 一般米 出荷比率은 大農이 16.4%, 中農이 28.3%, 小農이 66.9%로서 小農層의 수확기 出荷比率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7>.

表 4-7 月別, 營農規模別 一般米 出荷比率(政府收買分 除外)

단위 : %														
規模	月別	'79 10	11	12	'80 1	2	3	4	5	6	7	8	9	計
小	農	4.3	36.6	26.0	0.9	5.4	4.5	7.3	2.6	0.5	4.2	7.9	0.1	100.0
中	農	4.2	7.6	16.5	3.7	6.9	9.7	16.3	12.6	5.8	9.4	4.7	2.5	100.0
大	農	1.8	8.7	5.9	6.8	8.0	10.9	20.9	8.6	6.9	10.5	7.9	3.2	100.0
平	均	3.3	14.2	14.5	4.3	7.0	9.0	16.1	8.9	5.1	8.7	6.6	2.2	100.0

資料 : 朱龍幸外, 「米穀流通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p.33.

따라서 收穫期에 集中出荷되는 米穀의 過剩供給量을 흡수하여 주지 못하면 收穫期の 米價暴落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零細農에 보다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收穫期에 米價暴落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收穫期 適正收買量의 確保가 절대 필요하다.

반면, 糧特赤字의 해소를 위해서는 政府收買量의 段階的인 감소가 요청된다. 이 같은 二律背反的인 問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政府收買는 新品種에 국한하는 反面에 一般米收買는 農協으로 하여금 專擔토록 하는 方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즉 農協으로 하여금 一般米收買를 專擔토록 지원하고, 農協의 系統出荷事業을 적극 권장하는 한

편 政府收買는 新品種에 국한하되 農協의 一般米收買 및 系統出荷事業의 進展에 따라 段階的으로 縮小하는 方案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이 같은 農協의 一般米 收買擴大는 收穫期 一般米의 適正價格維持와 端境期의 一般米價格安定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農協의 流通物量增大는 糧穀都賣市場에서 商人組織과의 競爭力을 제고시킴으로서 商人의 價格操作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都賣市場의 건전한 育成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2) 政府米의 放出低調와 價格調節機能의 弱화

최근의 政府米 放出實績을 보면 1980년에 12,099千石이던 것이 1983년에는 6,327千石으로 약 48% 감소하였다(表4-8). 이와 같이 최근에 政府米 放出實績이 저조한 理由는 所得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良質米에 대한 選好度가 增大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政府米는 新品種이 大宗 (表4-9)이고 長期保管을 요하는 관계로 一般米에 비하여 米質이 떨어지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때문에 政府米와 一般米 間에는 代替性이 적으므로 政府米만으로 一般米價格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政府糧穀의 放出節次는 〈圖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硬直化되어 있어 급변하는 穀價變動에 즉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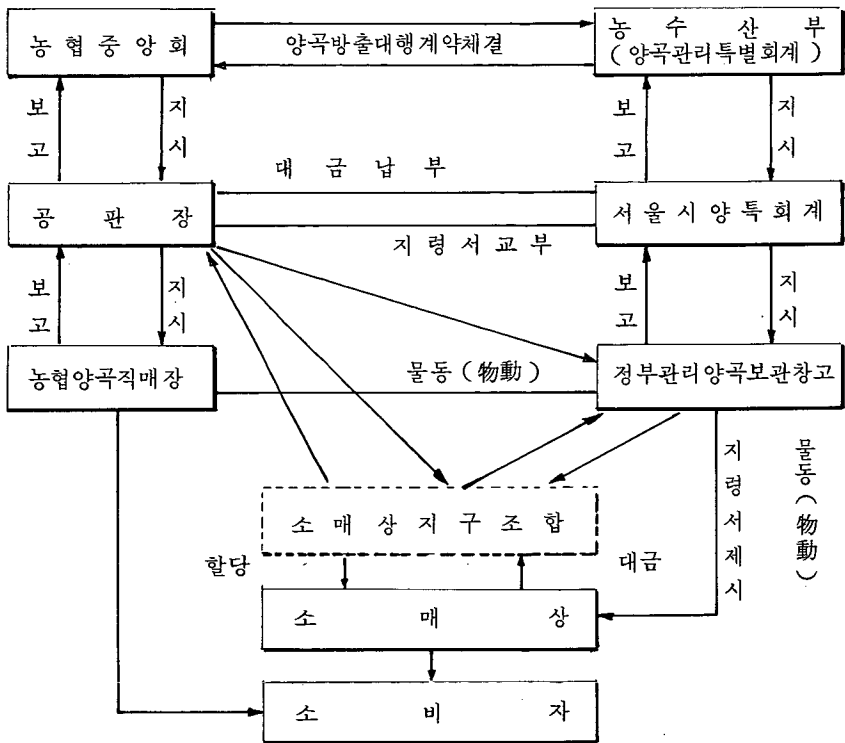
表4-8 年度別 政府糧穀 放出實績, 1978~83

單位:千石

米 穀 年 度	쌀 (混合穀中 쌀 포함)	보리쌀 (混合穀中보리쌀포함)
1978	8,215	1,939
1979	11,686	1,343
1980	12,099	2,867
1981	10,832	2,834
1982	4,855	2,637
1983	6,327	1,992

資料: 農水産部, 糧政局

圖 4 - 1 政府管理 糧穀의 流通經路



자료 : 농수산부

表 4 - 9 年度別 品種別 米穀 收買實績, 1977~83

單位 : 千石

年 度 別	新 品 種 (A)	일 반 벼 (B)	計 (C)	A/C (%)
1 9 7 7	9,566	176	9,742	98.2
1 9 7 8	9,402	11	9,413	99.9
1 9 7 9	8,890	142	9,032	98.4
1 9 8 0	3,775	15	3,790	99.6
1 9 8 1	5,658	698	6,356	89.0
1 9 8 2	7,206	371	7,577	95.1
1 9 8 3	8,056	412	8,468	95.1

資料 : 농수산부 양정국

으로 對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價格昂騰이 이루어진 연후에 政府糧穀이 放出되어 價格安定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一般米價格의 安定을 위해서는 米穀의 民間流通組織을 活性化하여 現在 전적으로 政府가 擔當하고 있는 穀價調節 및 糧穀需給調節機能을 民間組織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公正한 價格形成機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健全的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이 요청된다.

현재와 같이 米穀需給이 不安定하고 民間流通部門이 未發達되어 있는 條件下에서 自由市場機能에 크게 의존할 경우에는 價格變動의 幅을 크게 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安定的인 쌀自給基盤이 확립되고 民間流通組織이 育成된다면 政府의 糧穀市場介入을 段階的으로 줄여도 主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米價의 二重構造와 政府米 放出價格의 年中 平準化

政府米 放出價格은 〈表 4-10〉 같이 市中米價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983년의 경우 政府米 上品의 放出價格은 呎當 52,280원으로 이는 市中米價 59,691원 보다 7,411원이나 낮은 水準이다. 또한 쌀은 保管過程에서 減耗가 發生할 뿐만 아니라 保管費用과 利子負擔등 여러가지 費用이 발생하므로 米價는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上昇하는 것이

表 4-10 年度別 政府米 放出價格과 市中 米價 比較, 1978~83

單位 : 원/8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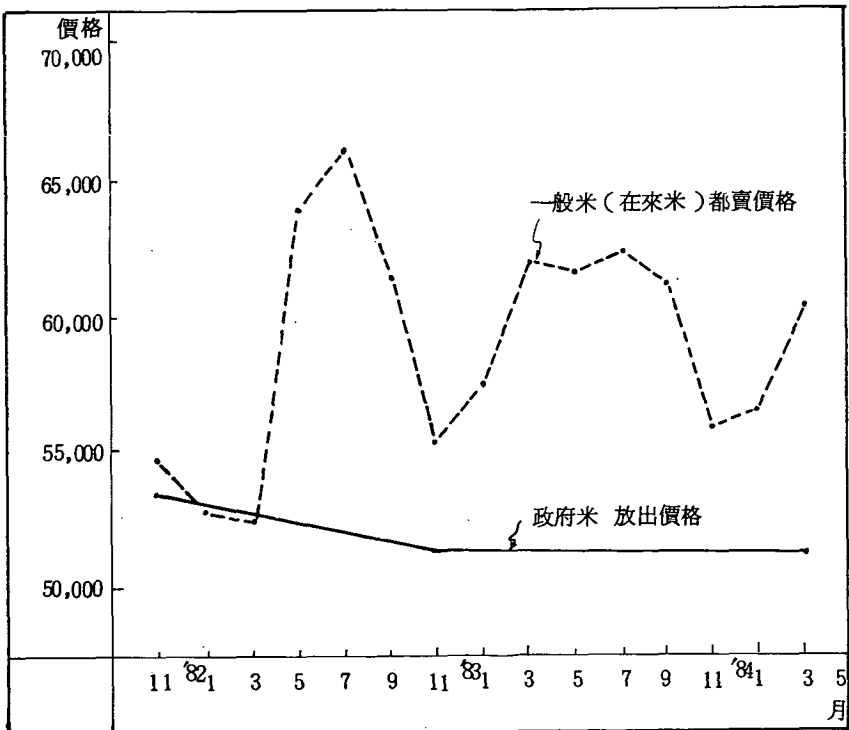
年 度 別	一般米價格 ¹⁾ (A)	放出價格 (B)	A - B
1 9 7 8	26,032	26,500	△ 468
7 9	35,259	32,000	3,259
8 0	43,528	44,000	△ 472
8 1	58,513	53,280	5,233
8 2	59,054	52,280	6,774
8 3	59,691	52,280	7,411

1) 在來米 都賣價格

資料 : 農水產部 糧政局

一般的인 경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米의 放出價格은 〈圖 4-2〉와 같이 '82.11~'84.5 기간중 연중 平準化시킨 결과 同質의 쌀價格이 米穀流通經路에 따라 현저한 價格差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政府米가 流通過程에서 一般米로 위장판매되는 등 不正流通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米穀의 流通秩序를 저해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 경우 二重穀價制는 消費者保護라기 보다는 商人의 不當利潤을 증대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放出價格이 낮은 수준에 年中 고정되어 있는 與件 아래서 農民이나 商人들이 米穀을 貯藏하려는 誘因이 없기때문에 收穫期에 米穀의 集中出荷는 加速化될 것이며 이 경우 收穫期米價를 유지하려면 收買量의 増大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全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획일적인 低放出價施策은 쌀消費의 偏重現象

圖 4 - 2 月別 一般米 都賣價格 및 政府米 放出價格動向, 1982. 11~1984. 5



을 加速化시켜 쌀 導入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糧特赤字의 증대와 政府米流通의 교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糧特赤字를 줄이는 동시에 政府米의 不正流通을 防止하고 主穀의 均衡消費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放出米價를 市中米價의 變動에 따라 連動시킴으로써 市中價格에 접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民間流通部門의 當面課題

1) 糧穀都賣市場의 機能萎縮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서울市內에 유일한 糧穀都賣市場이다. 이 糧穀都賣市場은 서울시의 糧穀都賣市場 移轉計劃에 의하여 1977년 1월 15일에 현재의 서초동에 開設되었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內에 있는 社團法人 韓國糧穀委託商協會에 가입된 委託商數는 138名에 달한다. 이들 商人들은 대부분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으로 移轉하기 전에는 龍山市場과 성동市場에서 委託業을 하였다.

서초동 糧穀委託都賣市場의 米穀搬入量 推移를 보면, <表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년만 하더라도 1日平均 6,133 噸(서울市 總消費量의 약 19.5%)가 搬入되었으나 1979년에는 1日平均 약 1,269 噸, 1980년에는 生産量의 減少 등으로 950 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新品種栽培面積의 감소로 一般系 米穀生産量이 증가됨에 따라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1日平均 쌀 搬入量은 '83년의 경우 2,769 噸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物量은 서울市の 1日 쌀消費量(약 38,000 噸)의 약 7%에 불과한 量이다. 그런데 1970년과 1971년의 米穀流通에 관한 調查結果¹⁾에 의하면 그 당시 서울市로 搬入된 湖南米의 대부분은 서울市內 龍山과 영등포 등지의 委託都賣商을 경유하여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 「米穀市場 流通에 관한 研究:京畿米中心」, 1970, p.39.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 「米穀流通構造에 관한 研究:湖南米中心」, 1971, p.89.

表 4-11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一般米 月別 搬入量 推移, 1977~83

단위 : 噸 (80 kg)

미곡년도 월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1	271,591	162,427	123,396	54,386	76,657	171,229	131,201
12	274,900	141,711	76,292	41,236	63,220	171,514	125,296
1	154,961	101,348	37,299	32,383	35,917	107,069	87,440
2	128,883	40,276	25,286	31,059	23,062	113,068	80,861
3	146,834	48,613	22,775	17,812	36,531	100,730	83,242
4	170,837	45,047	21,002	19,503	43,031	98,023	69,273
5	199,208	53,067	16,599	23,707	39,479	88,094	71,858
6	188,887	20,424	14,011	17,145	25,827	52,516	52,414
7	177,237	8,919	15,185	20,306	26,148	62,416	44,175
8	163,592	11,578	11,202	20,790	25,914	38,794	44,378
9	180,903	31,077	22,468	26,806	50,027	124,210	79,607
10	180,599	76,544	77,622	41,684	139,704	138,906	141,029
計	2,238,432	741,031	463,137	346,817	585,517	1,266,569	1,010,774
1日平均	6,133	2,080	1,269	950	1,604	3,470	2,769

資料 : 한국양곡위탁상협회

또한, 京畿米의 경우에도 商人組織 流通量의 63 % 정도가 委託都賣商을 경유하여 搬入되었고 나머지 37 % 정도는 小賣商으로 직접 搬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委託都賣市場을 경유하는 米穀流通量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主要要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政府의 과다한 糧穀市場介入

政府의 쌀收買物量이 적었던 1975년에는 都賣市場經由 流通物量이 차지하는 比重은 23.6 %나 되었으나 政府收買量이 증가함에 따라 都賣市場이 상대적으로 위축하게 되었다. 즉 政府收買量의 增加는 商人經路의 物量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 大量流通이 어렵게 됨으로써 民間 米穀流通組織이 零細化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産地의 大規模蒐集商들이 거의 사라지고 영세한 資本을 가진 小規模零細蒐集商들 만이 남게 되었다. 또한 政府米의 小賣商에 대한 直接放出로 消

費地の 委託仲介都賣商 역시 取扱物量の 감소로 規模가 零細化되었다. 서울 市內 都賣商數는 1968년에 153명이나 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다 자취를 감추고 1983년 현재 42명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政府米의 流通比重이 增大되고 최근에 產地直結去來가 성행함에 따라 民間流通部門중 都賣段階가 크게 萎縮되었다. 이 결과 糧穀都賣市場은 蒐集, 分散, 需給調節, 價格形成 등의 諸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對策이 요청된다.

나) 適正季節價格振幅을 도의시킨 획일적인 年中低米價施策

米穀은 한해에 한번 생산되어 年中 消費되어야 하므로 長期保管이 불가피하다. 米穀을 보관하는데는 저장비, 감모, 이자부담 등 제비용이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米價는 점차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米穀의 저장비와 감모 그리고 利子負擔 등을 감안한 適正季節價格振幅은 利子率에 따라 최소한 10.14~17.64%는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表 4-12>.

表 4-12 適正季節價格 振幅率 推定

단위 : %

비	목	계절 가격 진폭율		비	고
		I 안	II 안		
저	장 비	2.43	2.43	'83년 미곡수매가 ㄷ當 55,970 원에 대한 정부양곡 보관료 ㄷ當 152원의 비율 : 0.27%(1個月) 서울농대 정창주교수 추정 : 月 0.19%	
저	장 감 모	1.71	1.71		
이	자 ¹⁾	6.0	13.5		
계		10.14	17.64		

- 1) { I안 : 정기예금 금리적용 (年 8%)
 { II안 : 사채이자 적용 (월 15%)

다) 附加價值稅 實施

1977 년도에 附加價值稅 실시 이후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 영업하고 있는 委託商들은 委託手數料 (1984 년 현재 相當 800 원)에 대한 附加價值稅를 納付하고 있다. 附加價值稅率은 附加價值稅法 第25條에 의해 去來規模에 따라 差等率이 適用되고 있다. 즉 年間 手數料收入이 6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3.5 % 그리고 6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10 %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 糧穀이 搬入될 경우에는 附加價值稅가 徵收되며 이에 따른 稅務資料도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商人들은 稅源露出을 우려한 나머지 委託都賣市場 (公開市場)에 出荷를 기피하는 반면 小賣商과의 직거래를 選好하는 것으로 調查結果 나타났다. 이에 따라 委託仲介都賣市場의 取扱物量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都賣市場으로서의 기능은 더욱 弱化되었고 產地와의 直去來를 통한 類似都賣行爲가 상대적으로 성행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糧穀都賣市場의 米穀搬入量을 크게 감소시킨 主源因은 1) 政府의 과다한 糧穀市場介入, 2) 適正季節價格振幅을 감안하지 않은 劃一的인 年中 低米價政策, 3) 糧糧의 委託都賣業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徵收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같은 제요인에 의하여 糧穀都賣市場의 取扱物量이 격감됨에 따라 糧穀都賣市場은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糧穀都賣市場으로부터 價格 및 流通物量에 대한 객관적인 市場情報의 入手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市の 경우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으로 반입되는 米穀이 전체 서울市 搬入量의 약 7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市場에서 형성되는 價格은 서울市 米價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서울市內 糧穀都賣商에 대한 청취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 價格情報를 주로 入手하는 商人은 전체 調查糧穀小賣商 (120 개)의 25 %에 불과하며, 產地와 이웃商人이나 搗精業者 그리고 5日市場 등에서 價格情報를 入手하는 商人의 比率은 64 %로써 大宗을 이루고 있다 <表 4-13> 한편, 農協이나 매스컴에서 價格情報를 入手하는 小賣商의 비율은 5%로서

表 4 - 13 서울市 糧穀小賣商들의 主要 米價情報入手處別 分布

單位：人

區 分	應 答 者 數	構 成 比 (%)
위탁도매시장	30	25.0
이웃상인	24	20.0
산지거래상인	48	40.0
산지도정업자	3	2.5
5日시장	2	1.7
매스컴	1	0.8
지구조합	4	3.3
농협공판장	5	4.2
무응답	3	2.5
계	120	100.0

대단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調査結果는 서울市內 小賣商들이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時勢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이 公正하고 효율적이며, 객관적인 價格形成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크게 위축되어 都賣市場으로서의 主要機能인 價格 및 需給調節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예상되는 問題點으로는 1) 中間商人의 陰性去來와 買占賣惜 등으로 商人의 마진이 과다할 가능성이 있고 2) 中間商人의 價格造作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으며, 3) 不合理한 等級마진이 발생하기 쉬우며, 4) 위와 같은 價格의 不安定性은 나아가서는 農民의 生産意慾을 減退시킬 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家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施設未備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900만이 넘는 서울市民의 主穀流通을 담당하는 서

울시의 代表的인 糧穀都賣市場이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總 6,000 坪 정도의 垓地에 荷置場 1,050 坪과 事務室 276 坪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駐車場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이 施設은 社團法人 韓國糧穀委託商協會가 한국트럭터미날회사로부터 賃貸하여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自體施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委託商들은 한국트럭터미날회사에 荷置場 賃借料로 1 日 77 원을 支拂하고 있으며 이는 1 日 委託手數料 800 원의 9.6 %에 해당되는 金額이다. 이 같은 높은 賃借料는 流通費用의 上昇 要因이 될 것이며, 이는 어떤 形態로든지 生産者나 消費者에게 전가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서초동 糧穀都賣市場內에는 荷置場施設 이외의 시설은 거의 없으며 특히 糧穀保管施設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하루 이틀의 日氣不順으로 인하여 糶搬入量이 조금만 줄어도 糶값은 격심한 變動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米價의 安定을 기하기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內에 적절한 糧穀保管施設을 確保할 必要가 있으며, 또한 일시적인 需給不均衡에 대비하여 適正한 備蓄物量의 確保와 이의 효율적인 運營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場所가 협소한 관계로 시설을 擴張하는 데도 限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去來能力도 상당히 制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1 日去來能力을 정확히 評價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施設與件下에서는 하루에 10,000 噸의 物量을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分野 專門家の 견해이다. 그리하여 政府에서는 가락동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 敷地에 糧穀都賣市場建設을 위하여 垓地 14,470 坪을 이미 확보한 바 있고 糧穀都賣市場의 建設計劃을 추진 중에 있다.

다. 產地 直結去來의 現況 및 當面課題

1) 產地直結去來의 類型 및 取扱物量

產地直結去來란 一般米가 消費地의 委託都賣市場을 經유하지 않고 產地商人(賃搗精業者포함) 또는 產地市場으로부터 消費地의 小賣商이나 消費者에게 直接 流通되는 經路를 말한다. 產地直結搬入은 米穀의 搬入主體와 引渡場所에 따라 消費地小賣商이 產地에 가서 產地商人, 賃搗精業者, 生産農家 그리고 5日市場등으로부터 米穀을 直接 購入, 搬出하는 形態와 產地의 荷主(產地商人, 賃搗精業者등)가 消費地로 가지고 와서 小賣商에 인도하는 形態로 大別된다. 서울市內 小賣商 120個所를 대상으로 조사한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는 <表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 구입한 比率는 16.6%, 農協共販場이 7.3%인 반면 產地直結搬入은 75.9%나 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表 4 - 14 小賣商의 米穀購入處別 購入比率

購 入 處			購 入 比 率 ¹⁾ (%)	
產 地 直 結 搬 入	小 賣 商 產地購入	生 產 農 家	3.6	
		搗 精 業 者	25.3	
		5 日 市 場	7.8	
		產 地 商 人	1.2	
	小 賣 商 門前購入	搗 精 業 者	11.6	
		產 地 商 人	49.1	
		生 產 農 家	0.5	
		地 區 組 合	0.9	
小 計		100.0	75.9	
都 農 其	賣 市 場		16.6	
	協 共 販 場		7.3	
	他		0.2	
	計		100.0	

1) 購入處別 購入比率는 購入量을 加重値로 한 平均임.

本調査에 있어 糧穀都賣市場의 購入比率이 <表 4-4>에서 추정한 流通經路別 서울市 米穀搬入量보다 높게 推定되었는데 이는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으로부터 近距離에 위치한 小賣商의 標本抽出比率이 相對적으로 높은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產地直結搬入의 形態別로 보면 產地荷主가 직접 小賣商에 引渡하는 경우가 약 62%, 小賣商이 產地에 가서 米穀을 購入하여 오는 경우가 약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4>. 특히 前者의 形態는 產地商人(49.1%)이나 質搨精業者(11.6%)가 荷主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後者の 경우는 小賣商들이 產地의 質搨精業者(25.3%)나 5日市場(7.8%)에서 주로 米穀을 購入하여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產地荷主들은 한번에 1.5~4톤 트럭에 30~80㏊정도를 싣고 消費地의 小賣商을 순회하며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단골小賣商을 확보하고 있으며 電話連絡등으로 小賣商이 필요로 하는 物量을 미리 파악하고 그 物量을 小賣商에 직접 배달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小賣商들은 약간명의 產地荷主를 단골로 확보하고, 이들과 外上去來를 더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小賣商이 直接 產地에 가서 產地質搨精業者나 商人 또는 生産農家나 5日市場에서 米穀을 購入할 때는 現金去來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產地直結搬入의 增加要因

서울市の 경우 政府放出米를 제외한 一般米 總搬入量中 產地에서 小賣商으로 直結搬入되는 量이 차지하는 比重은 1960年代末에는 약 20%¹⁾ 정도에 불과했으나 1975년에는 61.1%로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약 89%를 차지함으로써 產地直結搬入이 점차 增加趨勢에 있다 <表 4-15>. 本 小賣商調査의 결과에서도 都賣市場에서 구입한 米穀이 전체 一般米購入量에 점하는 比率이 약 17%이었고, 약 76%는 產地直結搬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4>. 이러한 현상은 서울市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1) 前掲書, p.247.

表 4 - 15 年度別 서울市 一般米 流通經路別 搬入量 推移, 1975~83

단위 : %

미	곡	년	도	도매시장경유 ¹⁾	산지직결반입 ²⁾	계
1	9	7	5	195 (38.9)	306 (61.1)	501 (100.0)
1	9	7	6	158 (36.1)	280 (63.9)	438 (100.0)
1	9	7	7	179 (27.8)	464 (72.2)	643 (100.0)
1	9	7	8	59 (11.9)	438 (88.1)	497 (100.0)
1	9	7	9	37 (12.1)	270 (87.9)	307 (100.0)
1	9	8	0	28 (7.5)	346 (92.5)	374 (100.0)
1	9	8	1	47 (9.4)	454 (90.6)	501 (100.0)
1	9	8	2	101 (12.9)	681 (87.1)	782 (100.0)
1	9	8	3	81 (10.7)	677 (89.3)	758 (100.0)

() 內는 構成比임.

1) 서초동 위탁도매시장의 반입량임.

2) 產地 直結搬入에는 產地商人이 消費家口에게 직접 배달한 量도 포함됨.

大都市에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최근에 產地直結搬入이 增加되고 있는 主原因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交通과 通信手段의 발달로 價格情報의 신속한 입수가 가능하여 지고 輸送時間이 단축됨에 따라 產地商人과 消費地小賣商間에 전화를 이용한 去來와 트럭에 의한 遠距離 輸送도 용이하게 되었다.

둘째, 委託都賣市場經由時 소요되는 委託手数料등 追加流通費用을 節減함으로써 利潤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委託都賣市場을 經유할 경우에는 委託手数料 800 원과 上下車費 등 추가경비가 所要되나, 委託都賣市場을 經유하지 않고 直搬入을 할 경우 이 費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產地直結搬入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 本 研究의 小賣商調査에서는 약 26 %의 小賣商들이 直搬入을 選好하는 이유로서 費用節減에 의한 利潤增大를 꼽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表 4-16>.

셋째, 1977 年 7 월부터 附加價值稅制가 실시되면서, 糧穀의 委託販賣에 대해서도 附加價值稅가 徵收됨에 따라 產地의 搬出商人이나 未登錄

表 4 - 16 小賣商의 產地 直結去來 選好 理由

단위 : 人

구 분	도 정 업 자		산 지 상 인		계	
	응답자 수	구성비 (%)	응답자 수	구성비 (%)	응답자 수	구성비 (%)
비용이 적게 들거나 구입가격이 저렴하므로	12	34.3	15	21.7	27	26.0
구입이 편리하므로	4	11.4	15	21.7	19	18.3
항상 질이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15	42.9	25	36.2	40	38.5
단골로 거래하여 왔기 때문에	1	2.9	7	10.1	8	7.7
외상거래가 용이하므로	2	5.7	2	2.9	4	3.8
미질이 좋을 경우에만 구입한다.			1	1.5	1	1.0
기 타	1	2.9	4	5.8	5	4.8
계	35	100.0	69	100.0	104	100.0

* 소매상에 대한 조사결과임.

商人들이 稅源의 露出을 염려하여 都賣市場에의 出荷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產地直結搬入을 촉진시킨 요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네째, 小賣商들은 良質의 쌀을 구입하기 위하여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消費者의 一般米 選好傾向에 편승하여 良質米(경기미, 충남미 등)를 구입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小賣商調査에서 產地直結搬入을 選好하는 理由를 문의한 결과 「米質이 좋은 쌀(京畿米, 忠淸米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가 전체 小賣商의 약 39%로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表 4-16>.

小賣商들이 直去來를 선호하는 다른 理由로서는 「쌀購入에 있어 直去來가 편리하다」가 18.3% 그리고 「단골로 去來하여 왔기 때문」이 7.7%로 나타났다<表 4-16>.

또한 調査對象小賣商과 서초동 糧穀都賣市場과의 거리를 기준하여 糧穀都賣市場의 利用率을 살펴 보면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으로부터 遠距離에 위치한 小賣商일수록 產地直結搬入의 비율이 높는데 반하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한 地域의 小賣商들은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을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產地直結去來의 當面問題點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米穀의 產地直結去來는 여러가지 類型을 이루고 있으며, 이의 공통적인 특징은 規模가 영세하고 去來가 陰性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4年 6月基準 서울-이천간 米穀의 流通마진은 產地直結去來의 경우 가마당 8,000 원으로 小賣價格을 기준으로 한 流通마진率은 10.4 %로 조사되었다. 이 마진율은 1980년에 韓國產業經濟研究院에서 調査한 18.2 %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 서울-이천간 米穀의 流通마진율이 감소한 것은 交通手段의 발달과 함께 이천지방의 產地蒐集商들은 대부분 2.5 톤트럭을 소유하게 되어 他人所有의 車輛을 이용할 때에 비하여 輸送費를 절감시킬 수 있었고, 商人들 간의 競爭에 의하여 利潤率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產地直結去來의 경우 총유통마진율 10.4 %중 流通費用이 2 %, 利潤이 8.4 %로서 商人利潤이 상대적으로 큰 比重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流通段階別로 마진율을 보면 蒐集段階가 2.6 %, 分散段階가 7.8 %로 조사되었으며, 分散段階中 小賣商의 利潤이 6.5 %로서 아주 큰 比重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小賣商의 利潤率이 높은 것은 小賣商의 1日平均去來量은 불과 4~5 가마로써 規模가 아주 零細한 데 주로 기인된다.

產地直結搬入의 流通費用은 1,550 원으로 委託都賣市場經由에 비하여 1,410 원정도 節減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4-17>. 그러나 이 같은 流通費用의 節減은 大量去來에 의한 流通의 效率化의 結果라기 보다는 中繼 및 都賣段階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委託手數料 800 원과 分散段階에서의 上車費(110 원) 및 輸送費(500 원)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產地直結去來에 의해서 節減된 流通費用이 商人의 利潤에 귀속될 뿐 生産者나 消費者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產地直結去來에 의한 費用節減效果가 모든 流通主體(生産者,

表 4 - 17 米穀의 流通經路別 마진 (이천→서울, 1984. 6. 19)

單位 : 원 / 80 kg

區 分		委 託 商 經 由	產 地 直 結 流 通 1)
農 家 販 賣 價 格		69,000 (89.6)	69,000 (89.6)
蒐 集 搬 出 段 階	輸 送 費	400 (0.5)	400 (0.5)
	上 車 費	80 (0.1)	80 (0.1)
	其 他 費 用	70 (0.1)	70 (0.1)
	利 潤	650 (0.8)	1,450 (1.9)
	小 計	1,350 (1.8)	2,000 (2.6)
中 繼 段 階	委 託 商 手 數 料 2)	800 (1.0)	-
小 賣 商 購 入 價 格		71,000 (92.2)	71,000 (92.2)
分 散 段 階	上 車 費	110 (0.1)	-
	輸 送 費	500 (0.6)	-
	石 拔 費 及 其 地	1,000 (1.3)	1,000 (1.3)
	利 潤	4,390 (5.7)	5,000 (6.5)
	小 計	6,000 (7.8)	6,000 (7.8)
小 賣 價 格		77,000 (100.0)	77,000 (100.0)

() 內는 構成比임 .

1) 搬出商이 自家車輛으로 搬入하는 경우임 .

2) 委託商手數料 800원에는 경비료, 하차료, 임대료, 조합비,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

消費者, 商人)에게 均等하게 配分되려면 商人組織과의 競爭關係를 유지할 수 있도록 農協共販事業 등을 擴大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產地直結去來의 경우에는 產地搬出商人 혹은 未登錄蒐集搬出商人들이 稅源露出을 피함으로써 稅金을 포탈할 可能性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產地直結搬入은 그의 類形이 다양하고 小量流通인 관계로 流通效率이 낮을 뿐만 아니라 物動量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包裝等級, 品質 등의 米穀流通에 관한 諸規定의 이행여부를 確認監督하기도 어렵다는 問題點도 있다. 때문에 특히 小賣段階에서 產地나 等級을 속임으로써 과다한 等級마진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으며, 이는 流通秩序를

교란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產地直結去來는 영세한 類似都賣商과 無許可糧穀商들의 類似都賣行爲로서 糧穀의 積滯量을 增加시키고 糧穀流通의 원활성을 저해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米穀의 產地直結去來를 制度的으로 금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產地直結去來가 增大하게 된 根本的原因이 流通下部構造의 發達에 힘입어 流通費用을 줄여 利潤을 增大시키려는 商人의 基本的인 욕구인 관계로 이를 制度的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小賣商調査에 의하면 63%의 小賣商들이 直搬入의 制度的禁止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18). 따라서 產地直結 搬入物量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統制方式인 制度的인 措置보다는 都賣市場의 效率的인 活性化 施策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產地直結搬入이 차츰 줄어 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表 4-18 米穀의 產地 直結去來에 대한 制度的 禁止에 관한 小賣商의 反應

구 분		응 답 자 수	구 성 비 (%)
찬	성	27	22.5
반	대	76	63.3
상 관	없 다	17	14.2
계		120	100.0

本 小賣商調査에서 直搬入을 制度的으로 금지하는데 대한 反對理由를 문의한 결과 <表 4-19>와 같이 「糧穀都賣市場의 米質을 믿을 수 없다」가 全體 小賣商의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調査結果로 미루어 볼 때 상당수의 小賣商은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 去來되는 쌀의 米質에 대하여 不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糧穀都賣市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良質의 米穀을 購入할 수 없기 때문에 良質의 쌀을 구입하기 위하여 產地直結去來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去來를 活性化하려면 무엇보다도 小賣商들이 원하는 등

表 4 - 19 米穀의 產地直結搬入의 制度的 禁止에 대한 反對事由別
小賣商 分布

반 대 사 유 별	응 답 자 수	구 성 비 (%)
都賣市場의 米質을 믿을 수 없다	17	28.8
商活動의 自律性이 침해된다	14	23.7
人力不足으로 都賣市場出入이 곤란함	3	5.1
流通段階의 多段化	2	3.4
流通費用의 增加로 利潤減少	12	20.3
都賣市場의 米穀流通獨占化가 우려됨	7	11.9
零細小賣商의 米穀確保가 어려워짐	2	3.4
其 他	2	3.4
計	59	100.0

級의 米穀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都賣段階에서 객관적인 米穀의 等級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產地直去來에 대한 制度的인 금지를 반대하는 또 다른 理由로서는「商活動의 自律性이 침해된다」가 23.7%, 「都賣市場을 거침으로써 委託手數料, 上車費, 運送費 등의 流通費用 增加로 小賣商의 利潤이 감소되기 때문」이 20.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小賣商들이 直搬入의 制度的 禁止를 反對하는 理由는 良質米의 購入, 商活動의 自律性, 利潤追求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產地直結搬入에 대한 制度的 禁止措置는 現實性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을 增加시키기 위해서는 產地直搬入에 대한 制度的인 禁止措置 보다는 糧穀都賣市場에 대한 적극적인 育成方案을 통하여 產地直結搬入量이 都賣市場經由로 誘導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對策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라. 流通下部構造의 脆弱性

糧穀流通의 效率化와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는 流通下部構造의 改善이 필요하다. 그러나 現在 米穀流通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效率的인 對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 糧穀流通機關의 零細性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糧穀流通의 中樞的인 역할을 하는 糧穀都賣市場은 前近代의 施設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시설을 포함한 基本施設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糧穀流通을 擔當하는 各 流通段階의 商人들은 그 規模가 零細하여 效率的인 流通機能을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政府管理糧穀의 取扱規模가 增大되고 產地直結去來가 盛行함에 따라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이 相對的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商機能의 低下를 초래하였다. 이 結果 糧穀都賣市場에서 大規模委託商과 都賣商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반면에 零細한 小賣商의 數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小賣商들은 規模가 너무 零細하여 事業이라기 보다는 대개가 生計의 수단으로 營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小賣商의 規模가 零細한 結果 小賣商段階의 流通마진이 總流通마진의 約 75 %나 된다 <表 4-17>. 따라서 米穀의 流通費用節減을 통한 消費者價格의 安定과 生産者價格의 保護를 위해서는 大規模 糧穀小賣商을 地域特性에 따라 選別的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客觀的인 等級 및 規格基準 未備

가) 等級基準

米穀의 等級化는 直觀的인 目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客觀的인 等級基準이 設定되어 있지 않다. 즉 商人들은 米穀의 等級化에 대한 客觀적인 기준이 없이 等級을 매기기 때문에 等級의 決定이 不合理하여 부당한 等級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米穀의 等級은 品種, 產地, 搗精程度, 米質, 碎米程度, 搗精時期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客觀적인 尺度를 確定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米穀流通의 效率化를 위해서는 科學的인 等級規程이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瑞草洞 糧穀都賣市場의 경우 米穀의 等級은 크게 在來種과 新品種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品種間的 80 kg 以當 價格差異는 品種內的 等級에 따라 1984 年 8 月 現在 약 15,000 ~ 20,000 원이나 되었다. 現在 瑞草洞 糧穀都賣市場에서는 在來種의 경우 경기미, 충청미, 영호남미, 강원미로 等級化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同一產地의 在來種은 다시 品質, 米質, 碎米程度, 着色, 異物質含量 등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으로 구분됨으로써 在來種의 等級은 12 等級으로 細分化되어 있다.

한편 新品種은 在來種과는 달리 產地別 等級區分없이 米質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으로 區分되는 경향이 있다. 本 調査時點인 1984 年 8 月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等級間的 價格差를 보면, 在來種의 경우 產地에 따라 가마당 약 5,000 ~ 7,000 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同一產地의 경우 在來種은 等級間에 가마당 약 1,000 ~ 3,000 원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產地의 區分이 없는 新品種의 경우 等級間的 가마당 價格差는 약 2,000 ~ 3,000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細分化된 米穀의 等級決定은 客觀的이며, 公正한 基準이 없이 委託商人들의 目測과 經驗에 의하여 恣意的으로 결정되고 있다. 또한 小賣商들은 米穀購入時 等級確認을 위하여 샅대질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米穀의 減耗가 발생하기도 한다.

本 小賣商 調査에서 等級區分基準을 문의한 결과 產地를 基準으로 구분한다는 小賣商이 全體小賣商의 54%로 가장 높았으며, 米質 또는 品種을 基準으로 구분한다는 소매상의 비율은 38%, 經驗과 目測으로 한다는 小賣商은 8%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 4-20>. 즉, 產地는 小賣段階에 있어서 米穀의 等級決定에 重要な 要因임을 알 수 있다.

本 小賣商調査에서 소매상이 취급하고 있는 米穀의 等級區分을 보면 上品과 中品만 취급하는 경우가 全體 小賣商의 42.9%, 上品만 취급하는 경우가 23.8%, 上, 中, 下品을 취급할 경우는 20.6%, 上品만 취급하는 경우는 7.9%, 特, 上, 中, 下品 취급함이 4.8%로 나타났다 <表 4-21>

表 4 - 20 小賣商의 等級 區分 基準別 分布

等 級 區 分 基 準	應 答 者 數	構 成 比 (%)
產 地	27	54
米 質 · 品 種	19	38
目 測 및 經 驗	4	8
計	50	100

이와 같이 小賣段階에서의 等級區分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대개 消費者의 生活水準, 嗜好 등에 맞추어 한두가지 等級만을 取扱하고 있다.

表 4 - 21 小賣商의 取扱等級別 分布

區 分	應 答 者 數	構 成 比 (%)
上品만 取扱함	15	23.8
上品, 中品만 取扱함	27	42.9
上品, 中品, 下品 取扱함	13	20.6
中品만 取扱함	5	7.9
特 · 上 · 中 · 下品 取扱함	3	4.8
計	63	100.0

小賣商이 年中 取扱한 一般米의 產地別 構成比를 보면 <表 4-22> 와 같이 京畿米가 61.6%, 忠淸米가 30.3%, 湖南米가 6.7%로 調査되었다. 그러나 京畿道 쌀生産量이 全體 쌀生産量의 불과 13.3%¹⁾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湖南米 또는 忠淸米가 京畿米로 둔갑되어 販賣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現狀은 消費者의 맹목적인 京畿米 選好傾向과 客觀的인 等級基準이 設定되지 않은 데 있는 것이다.

1) 農水産部, 「作物統計」, 1983 年産.

表 4 - 22 小賣商이 年中 取扱하는 一般米의 主要 產地別 分布

產 地 別	構 成 比 (%)	產 地 別	構 成 比 (%)
경 기 미	61.6	강 원 미	1.1
충 청 미	30.0	영 남 미	0.5
호 남 미	6.7	계	100.0

따라서 米穀流通의 效率化를 期하기 위해서는 米穀의 客觀的인 等級規程의 設定과 이의 定着化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客觀적이고 科學的인 等級基準에 관한 調查研究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生産者, 商人, 消費者를 對象으로 等級基準에 관한 弘報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나) 包裝 및 規格

1980 年度에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調查結果에 의하면 米穀의 包裝資材 利用實態는 粗穀 貯藏時 가마니 포장인 66.4%, P·P袋이 23.9%이었고, 精穀 貯藏時에는 가마니가 38.1%, P·P袋 51.3%로서 P·P袋의 利用率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마니 포장은 包裝材料의 重量이 일정치 않아 판매시 實量의 차이가 있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먼지 티끌이 많아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는 다시 精製를 해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米穀의 包裝資材는 가마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고, 包裝材의 무게가 일정하여, 減耗量이 적은 P·P袋이 一般化되어 있다.

米穀의 去來單位規格은 消費地都賣市場에서는 일반적으로 80 kg으로 統一되어 있으나, 產地에 따라 一部地域에서 85 kg, 87 kg, 90 kg 등의 規格으로 消費地 都賣市場에 반입되고 있다. 이 같은 去來單位의 多樣化는 오랫동안 商慣習에 기인되므로 規格의 統一化를 期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서울시 瑞草洞 糧穀都賣市場에 上場되는 米穀은 거의 전량이 80 kg單位의 P·P袋로 포장되어 있다. 한편, 小賣商段階에서 小賣商들은 80 kg들이 P·P袋를 解包하여 石拔한 후 消費者의 購入量에 따라 再包裝하여 販賣하고 있다. 때문에 小賣商段階에서는 商人들에 의한 物量마

진 또는 等級마진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다고 하겠다.

米穀의 包裝規格單位에 대한 消費者 選好度を 調査한 結果 〈表4-23〉과 같이 20 kg 包裝規格單位가 적당하다고 應答한 家口가 33.9%, 10 kg 包裝單位는 24.2%, 8 kg 包裝單位가 10.9%, 5 kg이 16.1%로 20 kg 以下の 包裝規格單位를 選好하는 家口가 전체 調査家口의 8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消費者들이 小包裝에 대한 選好도가 높은 것은 所得向上과 社會構造의 變遷에 따른 食生活樣式的 變化에 기인된다.

表 4-23 米穀 包裝單位에 대한 消費者 選好度

區 分	5 kg	8 kg	10 kg	20 kg	24 kg	30 kg	40 kg	60 kg	80 kg	計
應答者數	110	74	165	231	22	28	25	16	11	682
構成比%	16.1	10.9	24.2	33.9	3.2	4.1	3.7	2.3	1.6	100.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一般米는 小賣商 以前段階에서는 一般的으로 80 kg가마單位로 去來되는 반면에 小賣商段階에서 解包되어 小賣單位로 판매되고 있다. 이 경우 小賣段階에서 物量마진과 等級마진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으며, 이는 결국 生産者나 消費者에게 어떠한 形態로든지 전가될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物量 및 價格마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一般米도 搗精工場에서부터 消費者가 選好하는 規格으로 包裝하여 消費者에게 流通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消費家口의 米穀消費量を 감안하여 包裝規格單位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搗精工場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함으로써 포장의 규격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즉, 搗精工場에서 加工된 米穀에 대해 品種, 産地名, 米質, 等級 등을 包裝材에 正確히 表示토록 함으로써 公正去來를 誘導하고 流通過程에서의 等級 및 物量마진이 發生하지 않도록 一般米에 대해서도 規格包裝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米穀流通改善面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 市場情報

米穀의 流通情報란 去來에 必要한 價格情報, 去來物量, 生産量,

需要量, 流通費用 등 各種 情報을 말한다. 이상의 流通情報중에서 生産者, 商人 및 消費者가 直接的으로 필요한 정보는 주로 價格과 去來量에 관한 것이다. 특히 價格과 去來量에 대한 流通情報는 生産者와 出荷者에 있어서 生産과 出荷에 관한 意思決定에, 그리고 消費者에 대해서는 購入量決定에 대단히 중요한 기초자료로 活用될 수 있다.

또한, 價格은 需要와 供給에 의해 決定되므로 이와 관련된 市場情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一般米의 市場搬入量과 去來量은 물론 政府米 放出量도 파악되어야 하며, 市場內의 米穀 在庫量과 함께 農家, 商人, 搗精業者의 쌀在庫量, 地域間 物量移動에 관한 情報도 正確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流通에 따른 不確實性和 危險負擔을 減少시키고 農民의 去來交渉力을 增進시키고, 商人間의 公正한 競爭을 유도시킴으로써 流通效率을 增進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米穀에 관한 情報 특히 價格 및 流通物量에 관한 情報에 있어서는 客觀적인 市場情報의 提供者가 없는 실정이며, 商人들간의 口傳 또는 전화연락에 의하여 불확실한 市場情報가 交換되고 있을 뿐이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한 調查結果에 의하면 農民들이 一般米를 販賣할 때의 市勢에 대한 情報入手處는 產地商人(搗精業者 포함)이나 5日市場이 84.4%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農協이나 農協刊行物은 12.8%에 불과하다.¹⁾ 이와 같이 農民들은 市場情報를 주로 產地商人(貨搗精業者포함)이나 5日市場등에서 입수하고 있으며, 여기서 입수한 市場情報는 일반적으로 客觀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市場情報의 客觀性を 높이기 위해서는 市場情報 專擔機關에서 각종 市場情報를 신속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한 調查結果에 의하면 대부분의 農民들은 市場情報專擔機關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는 調查農家の 56.9%가 「適正價格의 保障으로 商人에게 속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時勢를 알고 營農計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

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米穀流通에 관한 研究, 1980.12., p. 39.

났다.

本 小賣商調査에서 小賣商의 市場情報入手處別 比率을 보면 產地商人이 約 44 %로 제일 높으며, 都賣市場이 25 % 이웃小賣商 20 % 順으로 나타났다 <表 4-13>. 즉, 產地直結搬入의 增大에 따라, 小賣商의 產地 市場情報에 관한 觀心度가 높아진 반면, 都賣市場은 小賣商에 대한 市場 情報提供機能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機能을 正常化하여 都賣市場을 중심으로 形成된 物量 및 價格情報가 產地 또는 小賣段階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流通 情報體系의 確立이 시급히 要請된다. 또한 流通情報의 改善對策으로는 產地生産農家에서 消費地의 最終 消費段階까지 流通段階와 經路를 따라 流通情報가 統一되고 體系의 收集되도록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流通情報源 즉 產地集・出荷機構, 中斷機構, 分散機構別로 定期的으로 市場情報를 迅速히 蒐集하여 正確하게 傳達할 수 있는 綜合的인 糧穀流通情報體系의 確立이 要請된다.

第 5 章

糧穀都賣市場 育成方案

1. 糧穀都賣市場 育成的 必要性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在 米穀流通의 경우 政府米流通은 물론 民間流通部門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政府糧穀管理의 규모가 擴大됨에 따라 民間流通機構가 크게 위축되어 都賣市場이 需給調節 및 價格形成機能을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二重穀價制에 의한 米價의 年中 平準化施策은 米穀의 貯藏, 保管 등 流通過程에서 발생하는 費用이 價格形成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民間流通機關 특히 大規模 都賣商과 委託商이 糧穀市場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民間流通機關이 擔當해 오던 分散, 貯藏, 保管機能을 정부가 떠맡게 됨으로써 民間流通部門의 위축은 더욱 加速化되었다. 또한 政府米를 비교적 낮은 價格으로 小賣段階에 직접 放出한 관계로 政府米와 一般米間에 二重價格이 형성되어 값이 싼 政府米가 값이 비싼 一般米로 둔갑되어 販賣되거나 또는 이를 混合하여 一般米로 販賣되는 등 流通秩序를 교란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一般米 選好傾向과 政府糧穀管理의 硬直性으로 政府米放出에 의한 一般米價格의 調節機能은 점차 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諸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市場介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民間流通部門을 점차적으로 育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中繼段階의 중추적인 역할을 擔當하는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이 절실히 요청된다.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은 市場組織의 整備는 물론 產地出荷組織과 消費地分散組織의 整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價格形成 및 金融決濟機能을 강화시킴으로써 生産者와 消費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政府管理糧穀의 規模擴大와 二重價格制는 막대한 糧穀赤字를 발생시켰으며, 이 赤字는 韓銀借入으로 充當되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한 要因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政府는 糧特赤字를 減縮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收買量을 점차 줄이고 放出價格은 점차 현실화시켜 나갈 計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民間流通部門이 零細하고 未發達되어 있는 與件下에서 政府收買物量을 대폭 줄이고 自由市場에 크게 依存한다면 商人의 物量操作 등으로 격심한 價格變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流通經路의 中心部에 競爭體制를 갖춘 法定中央都賣市場을 설립하여 이 機構를 통하여 市場變數에 따라 市場에 自動적으로 介入토록 함으로써 需給調節과 價格安定機能을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自律市場機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糧穀의 需給調節과 公正價格形成機能을 갖춘 都賣市場의 育成이 필요하다.

農產物은 多數의 農民에 의하여 生産되고 多數의 消費者에 의해서 消費된다. 그러므로 農產物은 蒐集, 中繼, 分散機能이 調和있게 수행될 때 需給調節과 公正한 價格形成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產地直結去來가 급격한 增加趨勢에 있으며, 이 역시 都賣市場의 搬入量을 감소시켜 都賣市場의 育成을 阻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產地直結去來는 都賣市場經由에 비하여 流通費用을 節減시킬 수 있다는 利點은 있으나 절감된 流通費用이 中間商人의 利潤에 귀속될 뿐 生産者나

消費者에게 하등의 利益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產地直結去來가 流通費用을 절감시키고 消費者價格을 下落시킨다면 바람직하겠으나 流通費用과 관계없이 消費者價格은 일정하므로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產地直結去來는 流通改善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都賣市場의 機能을 弱化시켜 公正한 價格形成을 저해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產地直結去來는 規模가 영세한 관계로 流通의 效率化에 의한 流通費用節減의 效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直搬入의 流通費用이 相對적으로 적은 것은 流通의 效率化의 結果라기 보다는 都賣市場 經由時 所要되는 委託商手數料과 下車費 등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產地直結去來는 大部分 稅源捕捉이 어려운 陰性去來로서 과다한 유통마진을 취득하는 등 流通秩序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 出荷할 경우에는 委託商은 委託手數料에 대하여 附加價值稅를 納付하고 있으며 이 경우 出荷者에 대한 稅源이 露出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直去來가 成행하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產地直結去來가 계속 成行한다면 流通體系와 公正去來秩序는 점차적으로 파괴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全國의 糧穀需給狀態를 반영하는 公正한 價格形成이 不可能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全國을 代表하는 公正한 價格이 形成되지 않는 與件下에서는 中間商人들에 의한 임의적인 價格形成이 成행할 것이며, 中間商人들의 買占賣惜에 의한 不合理한 유통마진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다.

위와 같은 諸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穀價의 適正價格形成과 需給調節機能을 수행하는 동시에 全國의 米價를 대표할 수 있는 中央都賣市場의 育成이 絶실히 요청된다.

2. 糧穀都賣市場 建設의 妥當性 檢討

政府에서는 가락동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內에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할

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政府의 糧穀都賣市場建設計劃을 中心으로 糧穀都賣市場의 立地條件과 規模, 그리고 建設의 期待效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糧穀都賣市場의 立地條件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은 〈圖 5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市中心業務地區 (Central Business District)로부터 半徑 15km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新都賣市場은 서울市 最大 糧穀搬入路인 京釜高速道路의 서울 出入口(院趾洞位置)와 인접해 있어 순환도로의 연결이 가능하며, 서울 出入口로부터 約 2 km 南쪽에 위치한 판교인터체인지로부터 可樂洞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까지의 直線道路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貨物車輛의 進入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즉 可樂洞 都賣市場은 京釜高速道路와 直結이 가능하고 또 성남大路邊과 連接해 있음으로써 交通의 混亂, 停滯 등에 의한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을 可樂洞에 建設할 計劃을 樹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可樂洞 都賣市場內 糧穀都賣市場의 立地條件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서울市의 主要搬入路別, 米穀搬入現況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市의 主要搬入路別 米穀搬入量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서울市의 쌀搬入量에 대한 現地調査가 바람직하겠으나 이 調査는 매우 廣範圍하기 때문에 本分析에서는 아래의 前提下에서 既存資料 (Secondary data)로부터 推定하였다.

前 提 條 件

1) 서울市의 主要搬入路는 〈圖 5 -1〉과 같이 8個 搬入路를 設定하였고, 이 經路를 통하여 반입된 米穀이 서울市의 米穀消費量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江原道는 全體의으로 볼 때 쌀이 不足하고, 서울로 出荷되는

량이 극히 적으므로 江原道로부터의 서울시內 쌀搬入量은 없는 것으로 前提하였다. 反面에, 忠淸道, 慶尙道 및 全羅道로부터의 米穀搬入은 京釜高速道路를 통하여 全量 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實際로 이들 地域의 쌀은 대부분 京釜高速道路를 통하여 서울시에 반입되고 있음).

3) 京畿道는 道自體의 쌀需要를 充足시키고 남은 剩餘分을 全量 서울로 搬出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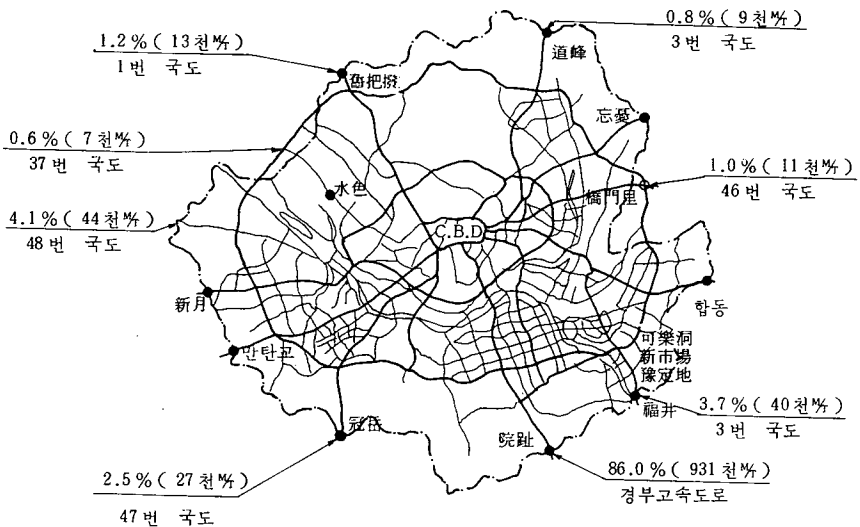
4) 京畿道の 各郡은 <表5-1>과 인접한 搬入路를 통하여 서울시에 米穀을 搬出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京畿道の 郡別 쌀供給可能量은 1983년의 郡別 쌀生産量, 消費量(食用, 非食用), 收買量, 放出量의 推定値로부터 산출하였다(쌀供給可能量 = 生産量 + 政府放出量 - 消費量 - 감모량 - 종자량 - 收買量).

위와 같은 前提下에서 추정된 1983년도 京畿米의 米穀供給可能量은 172千%로 서울시 쌀消費量의 約 15.9%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추정된 京畿道の 地域別 供給可能量과 其他 地域의 搬入量을 搬入路別로 배분하면 <圖5-1>과 같다. 즉 京釜高速道路를 經由하여 서울에 반입되는 米穀은 전체 米穀搬入量의 86%나 되며 나머지 14%는 其他搬入路를 經由하여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表 5 - 1 京畿道の 地域別 서울시 쌀 搬入路

地 域 別	搬 入 路	搬 入 地 點
용인군, 안성군	경 부 고 속 도 로	院 趾
화성군, 평택군, 시흥군	47 번 국 도	冠 岳
광주군, 여주군, 이천군	3 번 국 도	福 井
양평군, 가평군	46 번 국 도	橋 門 里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3 번 국 도	道 峰
파주군	1 번 국 도	舊 把 撥
고양군	39 번 국 도	水 色
강화군, 김포군	48 번 국 도	開 花 洞

圖 5 - 1 서울市 主要搬入路別 米穀 搬入量 推定 結果



위의 推定結果는 서울市內에 糧穀都賣市場을 건설할 경우 가능한 한 京釜高速道路와 連結이 용이한 地域을 選定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位置를 各各동 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으로 選定한 것은 立地面에서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糧穀都賣市場의 規模 및 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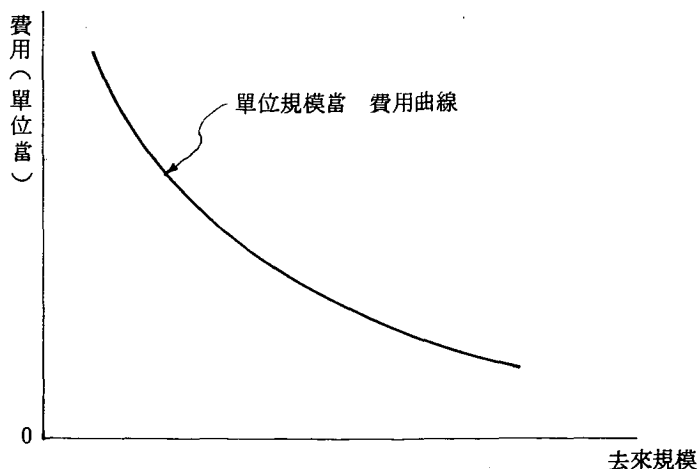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함에 있어서 適正規模의 決定은 대단히 중요한 課題의 하나이다. 糧穀都賣市場의 規模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우선 糧穀都賣市場의 適正取扱物量에 대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糧穀都賣市場建設의 根本的인 목적은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의 機能을 제대로 遂行하려면 適正物量の 確保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 搬入되는 쌀은 서울市 全體 쌀消費量의 불과 10% 정도 (農協共販場 포함) 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都賣市場으로써 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여러가지 問題點을 야기시키고 있

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取扱物量은 현재의 서초동 糧穀市場의 그것보다는 증가되어야 한다는 데는 異見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糧穀都賣市場의 適正規模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事項은 規模의 經濟性과 物量確保의 可能性이다. 糧穀都賣市場의 長期平均費用曲線 (long run average cost curve)은 去來規模 즉, 取扱物量이 增加함에 따라 規模의 經濟性 (economy of scale)에 의하여 〈圖 5-2〉와 같이 下降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糧穀都賣市場의 基本施設은 주로 建物, 下置場施設 등으로써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規模의 非經濟性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리라 본다. 다시 말하면 糧穀都賣市場의 建設費 중에서 事務室과 電氣 및 機械室 등 去來規模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固定費가 상당히 큰 比重을 점하므로 糧穀都賣市場의 單位物量當 總運營費 (固定費와 流動費의 合計)는 去來物量이 增加함에 따라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規模는 物量確保의 可能性과 市場敷地 등의 制約要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즉, 糧穀都賣市場의 規模는 物量確保의 可能性이 있고 그 物量을 취급할 수 있는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할 수 있는 限, 클수록 經

圖 5-2 糧穀都賣市場의 長期 平均 費用 曲線



濟的인 面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政府는 1978 년 12 월에 가락동 綜合農水產物都賣市場內에 糧穀都賣市場 建設敷地로 垵地 14,470 坪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 敷地에 서울시 쌀消費量의 約 30 % 정도(1日平均去來物量 약 13,000 噸)를 取扱할 수 있는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할 計劃이다. 糧穀都賣市場의 取扱物量이 單一市場으로써 서울시 消費量의 약 30 %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서울시의 쌀값을 主導할 수 있으리라 보며, 大量去來에 의한 流通의 效率化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쌀搬入量이 서울시 쌀消費量의 7 % 밖에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한다고 하더라도 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이 30 % 이상 대폭 증가한다는 保障도 없으며, 이 水準이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上限線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糧穀都賣市場의 쌀搬入量이 서울시 쌀消費量의 30 %가 된다면 이 規模가 糧穀都賣市場의 機能面과 費用面에서 볼 때 적절한 水準으로 판단된다.

長期的으로 볼 때 서울시에 上記規模의 糧穀都賣市場以外에 糧穀都賣市場이 더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 년도 서울시의 쌀消費量은 1983 年에 비하여 약 20 % 增加에 머무를 展望이다. 또한, 政府의 米穀市場介入은 段階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政府米의 比重은 상당기간동안 큰 比重을 점할 것으로 보이며, 劃期的인 產地直結去來에 대한 抑制策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產地直結去來의 比重 역시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上記規模의 糧穀都賣市場 하나로서 충분하리라 생각되며, 새로운 都賣市場의 建設計劃은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따라 檢討되어야 할 課題라 하겠다. 현재의 當面課題는 可樂洞에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할 경우에 都賣市場으로써의 機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適正한 去來物量의 確保가 可能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建設과 함께 效率的인 物量確保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可樂洞 糧穀都賣市場의 建設計劃에 의하면 市

表 5 - 2 可樂洞 糧穀都賣市場의 規模 및 施設內譯

	層 別	室 名	面積: m^2 (坪)	備 考
糧穀市場棟 12,954 m^2 (3,919 坪)	地 下 層 450 m^2 (136 坪)	電 氣 室	180 (54)	
		機 械 室	222 (67)	
		通 路 및 其 他	48 (15)	
	1 層 11,484 m^2 (3,474 坪)	販賣市場及倉庫 (72 個)	6,480 (1,960)	
		競 賣 場	2,100 (635)	
		荷 役 場	2,088 (632)	
		事 務 室	135 (41)	
		關聯商品店舖 (38 個)	513 (155)	
		化 粧 室 (8 個)	144 (44)	
		通 路 및 其 他	2,112 (639)	
	2 層 1,020 m^2 (309 坪)	事 務 室	504 (153)	
		食 堂 및 廚 房	216 (65)	
		化 粧 室	36 (11)	
		通 路 및 其 他	264 (80)	

資料: 서울特別市,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 基本計劃, 基本設計」, 1980. 9.

表 5 - 3 可樂洞 糧穀都賣市場 建設工事費 內譯

單位: 千圓 (%)

工 種 別	80 年 總 工 事 費 推 定 額		
	資 材 費	人 件 費	計
建 築 工 事	1,727,249	776,011	2,503,260 (56.9)
機 械 設 備 工 事	87,147	39,153	126,300 (2.9)
電 氣 設 備 工 事	171,120	76,880	248,000 (5.6)
土 木 工 事	1,048,110	470,890	1,519,000 (34.6)
行 政 費	-	-	
計	3,033,626	1,362,934	4,396,560 (100.0)

資料: 서울特別市,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基本計劃, 基本設計」 1980. 9.

場規模는 서울시 쌀消費量の 약 30%로 設定되어 있다. 이 市場의 施設內譯을 보면 <表5-2>와 같이 사무실 194평, 競賣場 635평, 荷役場 632평, 販賣市場 및 倉庫 1,960평, 其他 498평으로 構成되어 있다. 1979년에 한양엔지니어링會社에서 上記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하는데 소요되는 建設費는 1980年度 價格으로 約 44억원이 될 것으로 推定한 바 있다 <表5-3>.

다. 糧穀都賣市場建設의 期待效果

農水産部に 제출된 서울시 可樂洞 糧穀都賣市場建設計劃에 의하면 同市場의 總建設費로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推定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糧穀都賣市場建設의 經濟的인 妥當性이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糧穀都賣市場建設의 經濟性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 建設에 따른 利益(benefit)과 費用(cost)의 推定이 必要하다. 그러나 糧穀都賣市場의 여러가지 經濟的 效果를 計量化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하였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效果의 種類와 重要性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糧穀의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의 活性化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搬入量이 激減되어 都賣市場의 需給調節 및 價格形成機能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市場이 협소하고 施設이 부족한 관계로 糧穀流通의 效率化를 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下置場以外에 貯藏施設이 전혀 없으며, 場所가 협소한 관계로 增設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氣候不順 등으로 일시적인 需給의 차질이 발생하여도 격심한 價格變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은 競賣制度가 導入되지 못한 채 前近代의인 去來方法에 의하여 去來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公正한 價格形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現代施設을 구비하고 競爭體制를 갖춘 糧穀都賣市場의 建設은

糧穀의 원활한 需給調節과 公正한 價格形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쌀은 主穀으로써 國民經濟에 접하는 比重이 크므로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은 農家所得 增大는 물론 消費者家計保護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쌀은 都賣物價의 加重値에 접하는 比重이 크므로 米價의 安定은 物價安定은 國民의 食糧安保面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통하여 民間流通部門이 活性化된다면 政府의 市場介入을 段階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 問題가 되고 있는 政府糧穀管理의 改善과 糧特赤字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糧穀都賣市場의 建設과 적절한 支援對策으로 都賣市場 搬入量이 증가한다면 米穀流通의 效率性 提高는 물론 都賣市場을 통한 等級 및 規格化도 용이해지리라 생각된다.

1983 년 현재 서울市의 年間 政府米放出量은 323,000 噸으로 서울市 全體 米消費量의 약 30 % 정도에 해당된다. 만약에 民間流通部門의 活性化를 통하여 政府米의 放出比率이 현재의 30 %에서 20 %로 10%포인트가 減少한다면 糧特赤字는 1983 년도 基準(가마당 13,048 원)으로 볼 때 約 165 億원이나 減少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金額은 현재 가락동 糧穀都賣市場의 豫想建設費 약 50 億원의 3 배나 되는 金額이다.

政府는 糧穀赤字의 解消 등을 위하여 쌀의 收買物量을 段階的으로 줄일 計劃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民間流通部門이 零細하고 多岐化되어 있는 與件下에서 自由市場에 크게 의존할 경우에는 商人의 物量操作 등으로 激甚한 價格變動을 초래할 可能性이 높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民間流通部門을 育成시켜가면서 段階的으로 縮小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都賣市場 建設을 통한 民間流通部門의 活性化는 現在 政府의 지나친 市場介入으로 야기되고 있는 二重價格構造로 인한 쌀의 不正流通 등이 줄어들음으로써 米穀流通改善에도 크게 공헌하리라 본다.

2) 陰性去來의 最少化와 稅收增大

1983 年度 서울市の 米穀流通現況을 보면 全體 流通物量の 約 32%가 政府機構 및 農協機構를 經由하였고 都賣市場을 經由한 것은 약 7%에 불과하며 나머지 61%는 直搬入 즉 陰性的인 去來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產地直結去來가 盛行하는 主原因의 하나는 都賣市場이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새로운 糧穀都賣市場이 建設되고 적절한 都賣市場의 育成方案이 樹立된다면 都賣市場의 搬入量이 增加할 것이며, 이는 현재 問題가 되고 있는 陰性去來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都賣市場의 育成은 產地 및 消費地市場의 整備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에 따라 糧穀流通에 대한 各種稅金의 稅源發掘 및 捕捉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搬入되는 米穀 중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을 經由하는 米穀에 대해서는 委託手數料收入에 대해서 附加價格稅를 비롯한 稅金을 賦課하고 있다. 그러나 產地直結去來로 米穀을 購入해서 販賣하는 小賣商들은 零細業體에 속하기 때문에 附加價值稅가 免稅되고 있는 반면, 綜合所得稅만을 徵收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零細小賣商에게 米穀을 販賣하는 產地 蒐集商 및 搗精業者들은 稅源이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稅金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糧穀都賣市場의 建設을 계기로 糧穀都賣市場의 實搬入量이 증가한다면, 지금까지 實質적으로 稅金을 賦課할 수 없었던 直結搬入量이 상대적으로 減少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稅源確保와 稅收增大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糧穀都賣市場의 育成方案

앞에서 糧穀都賣市場育成的 必要성과 糧穀都賣市場建設의 妥當性 등을 살펴 보았다. 본절에서는 糧穀都賣市場의 效率的인 育成을 위한 先行條

件과 對策 등에 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가. 政府糧穀管理制度的 改善

糧穀都賣市場의 機能은 政府의 糧穀政策에 의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政府糧穀管理規模가 지나치게 擴大될 경우에는 商人의 取扱比率이 크게 減少되어 大量流通이 어렵게 됨으로써 商人의 去來規模가 零細化되고, 전통적인 商人經路가 붕괴될 可能性이 높다. 즉, 현재와 같이 政府가 지나치게 市場에 介入되어 있는 여건하에서는 都賣市場의 育成을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서는 政府의 직접적인 市場介入을 段階의 으로 줄이는 동시에 自律的인 市場機能의 促進과 活性化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糧穀流通을 전적으로 民間流通部門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政府의 收買量을 減縮시킬 경우에는 收穫期 價格下落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收買量 減少를 보완할 수 있는 收穫期 價格安定對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또한 政府는 米穀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해 自律市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收買, 備蓄 및 放出操作을 遂行해야 할 것이다.

收穫期에 一般米價格安定을 위해서는 農協으로 하여금 一般米를 收買토록 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課題의 하나라 하겠다. 즉, 政府는 新品種에 국한하여 收買하는 반면에 一般米收買는 農協이 專擔함으로써 현재 米穀流通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一般米의 需給 및 價格安定對策을 樹立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糧穀流通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物的基盤의 擴充과 制度의 改善 등도 重要하지만 商的機能도看過할 수 없다. 商人이 商的機能을 잘 발휘하려면 適正한 利潤이 保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適正季節價格振幅을 도의시한 年中 平準化價格施策을 推進할 경우에는 商人들은 適正한 利潤이 保障되지 않는 관계로 正常的인 商行爲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大規模 都賣商이나 委託商들은 米穀을 保管하려는 誘引이 없을 것이며 零細한 商人들에 의한 陰性的이고 不法的인

去來가 성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商人들의 正常的인 商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適正價格振幅이 許用되어야 하며 政府米의 放出價格은 適正價格振幅을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市場價格에 따라 彈力的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附加價值稅의 免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最近에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激減한 반면에 產地直結去來가 盛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附加價值稅에 있다. 즉, 產地의 蒐集・搬出商人이나 未登錄商人들은 都賣市場에 出荷시 稅源露出을 우려한 나머지 產地直結去來를 選好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稅制上の 不均衡이 지속되는 限 새로운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을 增加시키는 데는 限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稅制上の 不均衡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產地直結去來의 減縮에 의한 都賣市場의 物量確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稅制上の 不均衡의 問題點을 解消하기 위한 한 方案으로써 產地直結去來에 대해서도 都賣市場經由에 상응되는 附加價值稅를 徵收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 많은 零細商人들은 稅源露出을 피하기 위하여 產地直結去來를 하는 이상 이들 商人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賦課는 사실상 不可能하리라 생각된다.

產地直結搬入을 줄이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써 產地直結搬入을 制度的으로 금지하는 方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商人들이 產地直結去來를 選好하는 근본적인 原因이 流通費用을 줄여 收益을 增大시키려는 商人의 기본적인 慾求인 관계로 이를 制度的으로 금지하는 데도 限界가 있으며, 制度的으로 直搬入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實效를 거두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더우기 產地直結去來를 團束하는 데는 수많은 公務員이 動員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역시 人的資源의 效率的인 活用面에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消費者들은 價格이 상당히 비싸더라도 米質이 좋은 特米를 選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產地直結去來를 制度的으로 금지할 경우에는 暗去

來가 盛行할 可能性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8 년에 一般米에 대한 最高價格을 실시하였을 때 暗去來가 盛行한 事實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서울市內 小賣商調査에서도 全體商人의 76 %에 該當되는 小賣商들은 產地直結去來에 대한 制度的인 禁止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制度的인 禁止措置를 반대하는 理由로서는 「都賣市場에서는 원하는 良質의 米穀을 購入하기 어렵다」가 全體商人의 28.8 %, 「자유로운 商行爲는 保障되어야 한다」가 23.7 %, 그리고 「都賣市場에서 쌀을 購入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流通費用이 더 많이 所要된다」가 20.3 %로 나타났다.

따라서 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을 増大시키기 위해서는 產地直結去來를 制度的으로 禁止하는 것보다는 都賣市場의 糧穀搬入을 沮害하는 要因을 제거함으로써 都賣市場의 搬入을 促進하는 間接的인 方法이 보다 效率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現在 糧穀都賣市場의 搬入을 沮害하는 근본적인 原因의 하나는 附加價值稅에 있으므로 가락동에 새로 設立되는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附加價值稅가 全面 免稅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1980 年 12 月 13 日 字로 改正된 附加價值稅法 第 12 條에 의하면 이 條項에 해당되는 財貨와 用役(水道물, 연탄, 의료용역 등)의 供給에 대해서는 附加價值稅를 免稅토록 規定하고 있다. 同法 12 條 1 項의 내용은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共하는 農產物, 畜產物, 水產物과 林產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生産된 食用에 共하지 아니하는 農產物, 畜產物, 水產物과 林產物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糧穀은 國民의 基本食糧으로서 同法 第 12 條 第 1 項의 食料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規定에 의거 糧穀賣買業 또는 委託業에 대해서는 附加價值稅가 免稅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 委託手數料에 대하여 附加價值稅를 賦課하고 있는데 이는 同法 12 條의 附加價值稅 免稅條項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結論의으로 糧穀流通段階에 附加價值稅賦課는 主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中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沮해하는 要因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競爭體制를 갖춘 健全한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

서는 糧穀都賣市場에서의 附加價值稅는 免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糧穀都賣市場의 物量確保를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 經由時 所要되는 上場手數料, 荷役手數料, 雜賦金徵收 등의 流通費用的 節減對策은 물론 關聯商人에 대한 金融支援對策이 樹立되어야 實效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다. 政府米의 糧穀都賣市場 放出

현재 政府糧穀의 管理流通體制는 막대한 政府糧穀을 小賣商에 직접 放出함으로써 政府米과 一般米間에 二重價格이 形成되어 政府米가 一般米로 둔갑되어 販賣되는 등 流通秩序가 교란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政府糧穀의 放出節次가 복잡하고 硬直化되어 需給不均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對應하지 못함으로써 價格昂騰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政府米가 放出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諸問題點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政府米의 放出組織을 市場의 與件變化에 즉각적으로 對應할 수 있도록 改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方案으로써 政府米를 都賣市場에 방출하여 一般米와 함께 競賣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政府米의 米質에 對應하는 公正한 價格이 市場에서 형성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二重價格構造와 不正流通의 問題가 解消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政府米의 都賣市場放出은 그 만큼 都賣市場의 去來物量を 增大시킴으로써 都賣市場의 活性化에도 기여할 것이며, 政府米放出價格의 現實化는 현재 問題가 되고 있는 쌀의 糧特赤字 解消面에서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라. 農協의 系統出荷 強化 및 一般米 收買擴大

農協을 통한 糧穀流通은 生産農家로부터 受託, 買取한 一般米流通과 農協共販場을 통한 政府糧穀流通으로 구분된다. 農協의 系統出荷量이 全體市場出荷量에 占하는 比率은 1983년에 2.5%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農協이 共販場을 통해서 取扱한 糧穀은 <表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에는 1,646千%이었으나 1982년에

는 662 千%으로 크게 줄었다가 1983년에는 802 千%으로 약간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農協自體의 系統出荷는 全體 取扱物量の 5 %内外에 머물고 있는 反面, 政府糧穀의 取扱物量は 95 %内外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農協系統出荷의 比率이 크게 감소한 것은 政府의 收買量이 증대함에 따라 農協系統出荷의 重要性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農協組織의 硬直性으로 商人組織과의 競争力이 약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米穀이 國民經濟에 점하는 比重과 米穀生産의 特殊性 등을 고려할 때 國家的 次元에서 米穀生産農家와 消費者를 다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農協의 糧穀流通上の 役割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表 5 - 4 農協共販場의 年度別 糧穀取扱物量

단위 : 千 %

年度別	總 取 扱 量	系 統 出 荷 量	政府糧穀販賣代行實績
1979	1,646 (100.0)	36 (2.2)	1,610 (97.8)
1980	1,559 (100.0)	32 (2.1)	1,527 (97.9)
1981	733 (100.0)	36 (4.9)	697 (95.1)
1982	662 (100.0)	45 (6.8)	617 (93.2)
1983	802 (100.0)	47 (5.9)	755 (94.1)

() 內는 構成比임.

資料 : 農協中央會

農協系統出荷의 強化를 위해서는 우선 產地出荷組織이 強化되어야 하며 小賣組織과도 效率의인 連繫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農協이 一般商人과 대등한 立場에서 競争力을 갖출 수 있도록 業務體系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農協共販事業의 利益은 協同組合에 귀속되지만 損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擔當者가 지도록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與件下에서는 共販場의 任職員은 商人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農協共販場의 共販事業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政府의 직접적인 價格統制는 가급적 止揚하고 備蓄物量으로 價格을 調整함으로써 農協共販機能을 正常化시켜야 할 것이다. 農協系統出荷가 強化되어 農協을 통한 流通物

量이 糧穀都賣市場에 搬入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糧穀都賣市場의 活性化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糧穀都賣市場에서 공정한 價格形成을 기하기 위해서는 競爭體制를 갖춘 都賣市場의 育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糧穀都賣市場이 商人組織에 의하여 주도될 경우에는 商人의 物量操作 등에 의하여 격심한 價格變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政府의 賚收買量이 적었을 때 商人의 壟斷에 의한 격심한 穀價波動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때문에 糧穀都賣市場에서 商人組織을 견제할 수 있도록 農協共販場의 都賣機能을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農協의 系統出荷事業을 活性化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현재 政府에서 專擔하고 있는 價格安定 및 需給調節機能의 일부를 農協에 移管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하리라 본다. 즉, 政府는 新品種의 收買·放出事業을 전담하는 반면에 農協으로 하여금 一般米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一般米을 收買토록 지원하고 수매한 일반미는 自律市場에서 형성되는 價格으로 販賣토록 한다면 糧特赤字의 縮小는 물론 一般米의 價格 및 需給安定面에서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農協에서 收買한 一般米을 糧穀都賣市場에 上場시킨다면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이 증대되어 糧穀都賣市場의 活性化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糧穀都賣市場 下部構造 改善

糧穀都賣市場이 需給調節 및 價格形成機能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糧穀都賣市場下部構造에 대한 改善이 필요하다. 즉 都賣市場施設의 擴充과 流通環境의 改善은 물론 去來標準化, 規格化, 包裝化 그리고 流通情報改善 및 金融上的 支援 등을 포함한 流通造成機能의 強化가 요청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糧穀都賣市場은 기능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價格 및 需給調節機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施設面에 있어서도 脆弱性を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糧穀都賣市場은 育成될 필요가 있으며, 가락동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內에 糧穀都賣市場建設의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糧穀都賣市場이 아무리 現代施設을 갖춘다 하더라도 流通造成機能이 強化되지 못한다면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을 위해서는 糧穀流通造成機能의 強化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民間部門이 擔當할 수 없는 固定施設投資는 政府가 投資해야 할 것이다.

本節에서는 糧穀流通造成機能 중 米穀의 等級, 包裝 및 規格 그리고 市場情報의 改善方向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米穀은 객관적인 等級과 規格基準이 없이 商人들에 의해 目測에 의한恣意的인 分類가 이루어져 差等販賣가 되고 있기 때문에 不公正한 去來의 소지가 많고 生産者와 消費者가 다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米穀流通의 效率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米穀의 객관적인 等級의 決定과 이의 定着化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等級基準에 관한 調査研究가 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生産者, 商人, 消費者를 대상으로 등급기준에 관한 弘報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米穀의 包裝單位는 地域의 習慣과 搗精工場의 習慣에 따라 다양하다. 즉, 消費地市場에서는 一般的으로 80 kg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產地에 따라 一部地域에서는 85 kg, 87 kg, 90 kg 등의 規格으로 消費地都賣市場에 搬入되고 있다.

한편, 小賣段階에서 小賣商들은 80 kg들이 P.P袋를 解包하여 石拔한 후 消費者의 購入量에 따라 再包裝하여 販賣하고 있다. 이 결과 小賣段階에서 物量마진과 等級마진이 발생할 可能性이 높으며, 이는 결국 生産者나 消費者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가될 것이다. 더우기 所得水準의 向上과 社會與件의 變化에 따라 최근에 消費者들은 小包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볼 때 一般米도 政府米과 같이 搗精工場에서부터 消費者가 選好하는 規格으로 包裝하여 消費者에게 流通시키는 것이 米穀流通의 效率化面에서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消費家口의 米穀消費量을 감안하여 包裝規格單位를 現實化하는 동시에 產地單位農協이나 大規模 貨搗精工場에 대한 指導・啓蒙과 支援을 強化함으로써 規格化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米穀에 관한 情報, 價格 및 流通物量에 관한 客觀的인 市場情報의 效率的인 提供資料도 없고, 商人들 간의 口傳 또는 전화연락에 의하여 不確實한 市場情報가 교환되고 있으며, 產地農民들은 주로 商人들의 情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公式的인 價格決定「메카니즘」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客觀的인 流通情報를 提供해 줄 수 있는 健全한 中央都賣市場의 育成이 질실히 요청되고 있다. 즉, 糧穀都賣市場의 機能을 정상화하여 都賣市場을 중심으로 形成된 物量·및 價格情報가 產地 또는 小賣段階까지 傳達될 수 있도록 流通情報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

流通情報에 대한 現行 法規上의 規定을 보면 農安法 第 31 條에서는 指定都賣人은 그가 去來하는 主要品目の 入荷物量 및 去來價格 등을 매일 當해시장안의 보기 쉬운 곳에 揭示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에 따라 指定都賣人이 去來物量이나 去來價格을 잘 보이는 곳에 揭示만 한다면 귀중한 市場情報가 效率的으로 活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市場情報의 蓄積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市場情報가 效率的으로 活用되려면 市場情報의 蒐集 및 傳達體系를 確立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指定都賣人으로 하여금 매일의 去來物量과 去來價格을 市場管理公社에 報告토록 義務化하는 동시에 市場管理公社는 수집된 市場情報를 整理 分析하여 利用者가 손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流通情報體系의 確立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蓄積된 市場情報는 政策對立은 물론 關聯研究에 귀중한 基礎資料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指定都賣人은 競賣에 참여하는 仲買人과 都賣參加人들에게 產地別, 等級別 販賣豫定物量과 競賣에 참여하게 되는 商人數 등 競賣에 필요한 情報를 늦어도 競賣直前까지는 提供하도록 하는 것이 公正한 競賣制度의 유도를 위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바. 產地 都賣·小賣組織과의 連繫對策

糧穀都賣市場의 育成은 都賣市場 자체만을 국한하여 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糧穀都賣市場이 育成되려면 糧穀의 蒐集 및 分散機能이 都賣市場을 軸으로 하여 원활히 수행되도록 產地 都賣·小賣段階의 效率的

인 連繫對策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產地出荷組織은 물론 消費地の 分散組織이 잘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都賣段階의 機能도 正常化되어야 한다.

米穀이 生産農家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流通經路는 크게 都賣市場經由에 의한 연결과 都賣市場 未經由에 의한 연결로 구분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都賣市場經由의 米穀流通이 점하는 比重이 7%에 불과하여 都賣市場機能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糧穀都賣市場이 育成되려면 都賣市場經由의 流通物量이 增大되도록 米穀流通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產地 및 消費地市場의 育成 및 連繫對策이 검토될 수 있다.

1) 產地市場에 있어서 수집·반출상이 米穀流通過程에 차지하는 比重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育成對策이 필요하리라 본다. 產地 蒐集搬出商은 蒐集商, 搬出商, 蒐集行商, 장터蒐集商, 仲買商, 搗精業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產地를 돌면서 수집하거나 仲買人을 통해 蒐集, 消費地市場의 委託都賣商 또는 小賣商에 搬出한다. 이같은 產地商人에 대한 合理的인 育成은 米穀의 效率的인 流通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產地의 米穀蒐集 및 搬出機能을 擔當하는 商人들에 대한 流通金融의 支援擴大와 稅制上的 支援이 검토되어야 한다.

2) 產地市場에 있어 搗精業者들은 米穀流通에 重要な 比重을 점하고 있다. 원래 搗精業者들은 法的으로는 搗精業만 許容되어 있으며, 糧穀의 買取販賣 또는 委託業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의 搗精業者들은 生産農家에게 先給金을 支給하고 生産農家로부터 物量을 委託받아 搗精하여 商人에게 넘겨주거나 직접 買取하여 搗精한 후 出荷하는 商機能도 擔當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調査結果에서 밝혀졌다. 이와 같이 賃搗精業者는 法的으로는 搗精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搗精業만으로는 收支打算이 맞지 않기 때문에 買取販賣 등 商行爲까지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경우 都賣市場 搬入物量の 약 70%가 湖南米이며, 總搬入量の 약 30%를 賃搗精業者가 出荷하고 있다는 調査結

果도 있다!」 이와 같이 搗精工場은 陰性的으로 商行爲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產地米穀市場에 있어 아주 큰 比重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農家에서 生産된 米穀은 搗精을 위하여 일단 搗精工場을 거쳐야 하므로 產地搗精工場과 消費地 糧穀都賣商과의 效率的인 連繫는 搗精工場을 중심으로 한 產地 米穀流通의 改善은 물론 都賣市場의 育成面에서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搗精工場이 음성적으로 商行爲를 하고 있는 與件下에서는 搗精工場을 중심으로 한 產地 米穀市場의 育成은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또한, 搗精工場의 商行爲를 制度的으로 금지하는 데는 限界가 있으며, 이는 現實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搗精工場의 음성적인 商行爲를 방지하는 것 보다는 이를 陽性化하여 米穀流通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方向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質搗精業者들도 米穀流通에 合法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法的根據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적절한 指導・監督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質搗精工場의 規模擴大와 施設改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質搗精工場의 規模의 零細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質搗精工場의 段階的인 整備는 물론 이들 工場의 자발적인 統合을 통하여 質搗精工場의 施設現代化計劃도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3) 糧穀都賣市場이 育成되려면 小賣商들이 주로 糧穀都賣市場에서 米穀을 購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都賣段階의 流通費用節減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며, 小賣商들이 원하는 良質의 米穀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去來秩序가 確立되어야 한다. 또한, 都賣市場에서 米穀의 競賣制를 導入하여 價格形成機能을 正常化시키고 小賣商들도 糧穀都賣市場에서 米穀을 購入할 수 있는 制度的裝置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와 함께 小賣段階의 流通費用節減을 통하여 消費者價格을 低下시키고 生産價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地域特性에 따라 選別的으로 大規模小賣商을 育成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양곡유통시장 육성방안연구」, 1981. 12.15. p.181.

사. 糧穀都賣市場의 運營體系 및 去來秩序의 確立

糧穀都賣市場이 育成되고 去來가 正常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都賣市場의 運營體系와 去來秩序가 確立되어야 한다. 糧穀都賣市場의 運營體系에 대해서는 다음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公正去來秩序의 確立을 위한 競賣制度의 導入과 穀價調節機能의 強化方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競賣制의 導入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의 糧穀去來는 競賣에 의하지 않고 주로 相對賣買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多數의 競爭에 의한 公正한 價格形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米穀은 他農産物에 비하여 비교적 貯藏性이 강하고 規格化와 包裝化가 容易하기 때문에 都賣市場에서 競賣를 통하여 價格을 형성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競賣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糧穀都賣市場의 主要機能인 價格形成機能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競賣制의 導入은 절대 필요하리라 본다. 米穀의 競賣制 導入을 위해서는 아래의 몇가지 事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糧穀都賣市場의 기능이 우선 正常化되어야 한다. 都賣市場의 機能이 正常化되지 않는 條件下에서는 競賣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競賣에 필요한 施設의 確保는 물론 競賣士에 대한 충분한 教育과 訓練이 필요하다.

둘째, 糧穀의 競賣體系를 發展시키려면 객관적인 等級制가 定着化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等級區分의 기본적인 要素인 品種, 產地, 碎米의 정도, 밥맛, 색깔, 充實度, 水分含量, 異物質의 정도 등을 최대한도로 객관화시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研究를 거쳐 等級制가 定着化되려면 상당기간이 所要될 것이므로 短期的으로는 관행의 等級方法을 '가능한 보완하여 競賣制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 等級에 併行하여 規格化, 包裝化도 統一되어야 한다. 等級化와 包裝化는 都賣市場에 上場되기 以前에 產地段階 특히 搗精工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農協搗精工場과 質搗精工場이 糧穀의 規格化와 包裝化를 實施하도록 指導하는 동시에 적절한 支援策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糧穀都賣市場의 穀價調節機能 強化

糧穀都賣市場의 機能 중 가장 重要한 것은 糧穀의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이다. 그러므로 가락동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하는 主目的의 하나는 急變하는 市場與件에 신속히 能率的으로 대처함으로써 糧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機能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糧穀都賣市場의 活性化對策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制度的인 穀價調節裝置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政府에서는 穀價安定을 위하여 糧穀市場에 적극 介入하여 왔다. 그러나 糧穀都賣市場機能의 正常化를 위해서는 政府의 直接的인 價格統制는 가급적 피하고 市場의 自律機能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基本食糧인 主穀의 需給 및 價格調節機能을 商人組織에만 全的으로 맡길 경우 需給 및 價格安定目標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穀價의 季節價格振幅 등을 감안하여 價格安定帶를 설정하고 이 範圍內에서 穀價가 安定될 수 있도록 制度的인 裝置가 필요하리라 본다. 즉, 穀價가 이미 設定된 價格安定帶를 下廻할 경우에 한하여 農協이나 指定都賣人으로 하여금 糧穀을 買取하여 糧穀都賣市場內의 保管倉庫에 備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穀價가 價格安定帶를 上廻할 경우에는 備蓄한 糧穀을 競賣를 통하여 仲買人에게 販賣토록 制度化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한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氣候不順 등으로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일시적으로 激減한 경우 價格이 暴騰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격심한 價格變動을 緩和시키기 위해서도 糧穀都賣市場內에 穀價調節用 糧穀을 備蓄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락동 糧穀都賣市場의 建設計劃에 의

하면 糧穀保管施設の 規模는 서울시의 3日間 쌀消費量에 해당되는 9,700여톤으로 되어 있다. 이 物量이 항상 備蓄되어 있다면 일시적인 需給不均衡에 의한 격심한 價格變動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糧穀都賣市場內의 穀價調節用 糧穀을 保管할 수 있는 主體로서는 糧穀都賣市場의 運營主體인 指定都賣人과 農協共販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農安法 第28條에 의하면 指定都賣人은 受託販賣를 原則으로 하도록 許容되어 있을 뿐 糧穀의 買取販賣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農協의 系統出荷가 低調한 與件下에서 農協만이 서울시의 穀價調節用 一般米를 항상 보관하는 데는 限界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穀價調節用 糧穀의 確保를 위해서는 指定都賣人に 의한 糧穀保管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收穫期에 指定都賣人に 의한 穀價調節用 糧穀의 購入은 收穫期 價格安定을 통한 農家所得 增大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의 穀價調節用 糧穀을 항상 備蓄함으로서 穀價安定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指定都賣人也 穀價調節用 糧穀에 한하여 購入이 許容되도록 制度的인 對策이 필요하다. 또한 穀價調節用 糧穀을 保管하는 데는 상당한 費用이 所要되므로 融資支援 등을 포함한 적절한 支援對策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第 6 章

糧穀都賣市場의 管理 및 運營體系

1. 可樂洞 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의 管理體系 概要

政府는 糧穀都賣市場을 가락동 都賣市場內에 設立할 計劃이므로 우선 가락동 農水産物綜合都賣市場의 管理體系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가락동 新都賣市場의 管理 및 運營을 어느 機關이 擔當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檢討結果 開設者인 서울特別市의 業務를 代理執行할 수 있는 市場管理公社를 設立하도록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서울市는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되며, 都賣市場의 運營管理는 市場管理公社가 主體가 되어 擔當하게 되어 있다.

都賣市場의 開設者와 市場管理公社의 主要業務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¹⁾

開 設 者(서울市)

- 農水産物都賣市場 條例 및 條例施行規則의 改正 및 制定

1) 鄭燦吉外, 「가락동 農水産物綜合都賣市場 運營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p.117 ~ 118.

- 會社業務의 委任에 관한 規定의 制定
- 効率的인 都賣市場 運營을 위한 監督
- IBRD 借款資金의 償還責任

市場管理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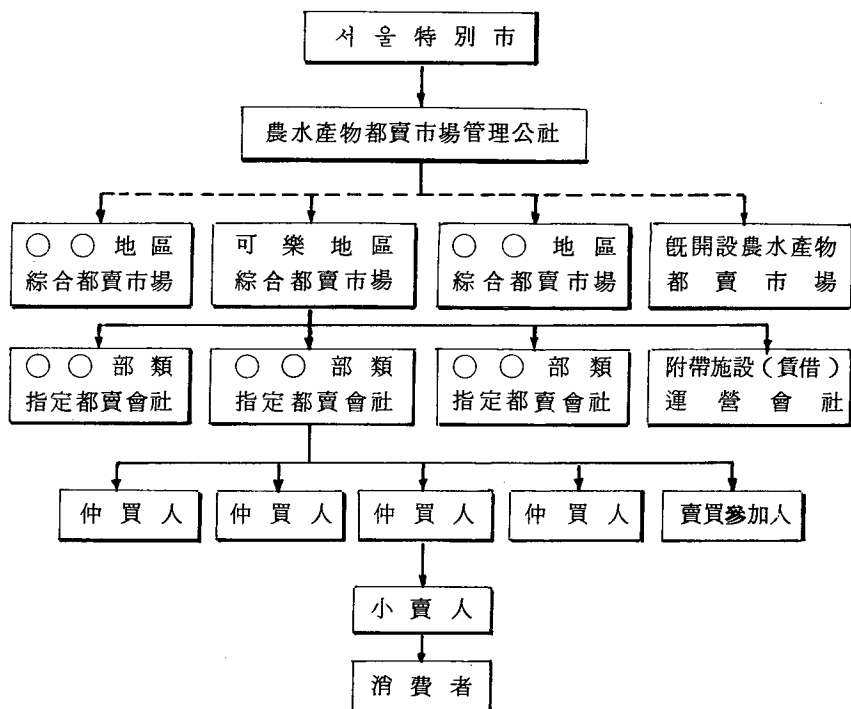
- 市場內 施設物 및 裝備의 維持, 管理
- 施設物의 賃借 및 賃貸料 徵收
- 市場 參加機關 및 市場利用에 관한 指導 및 監督
- 流通量 增加에 따른 施設의 擴張 및 改善
- 市場情報機能의 維持 및 統制
- 清掃, 警備 등의 各種 서비스機能
- 共同施設物의 運營, 市場利用者에 대한 便宜提供
- 商品의 質과 衛生에 관한 監督
- 商人에 대한 教育 및 訓練
- 市場利用者에 대한 各種 서비스 提供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市場 管理公社는 都賣市場 機能을 直接的으로 수행하는 流通機構가 아니며, 단순히 都賣市場 建物, 施設物의 管理와 運用만을 맡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市場管理公社가 流通業務 내지 流通改善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市場과 관련한 諸規定을 樹立統制, 管理, 監督機能을 원활히 遂行해야 하는 막중한 使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가락동 農水產物都賣市場의 開設者인 서울特別市가 마련 중에 있는 農水產物都賣市場의 管理 및 運營體系는 <圖 6-1>과 같다. 즉, 서울特別市는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로 하여금 서울特別市가 이미 開設・運營하고 있는 農水產物都賣市場과 현재 開設豫定인 「가락地區 綜合都賣市場」을 비롯한 서울特別市內의 모든 農水產物都賣市場을 綜合 管理運營토록 할 計劃을 檢討中에 있다.

원래, 가락地區 綜合都賣市場計劃에는 靑果, 畜產, 水產部門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各 部類別로 一定數의 指定都賣會社를 指定토록 되어 있다.

圖 6 - 1 可樂地區 綜合都賣市場 管理·運營體系圖



註)실선의 화살표가 可樂地區·農水産物 綜合都賣市場의 管理·運營體系를 表示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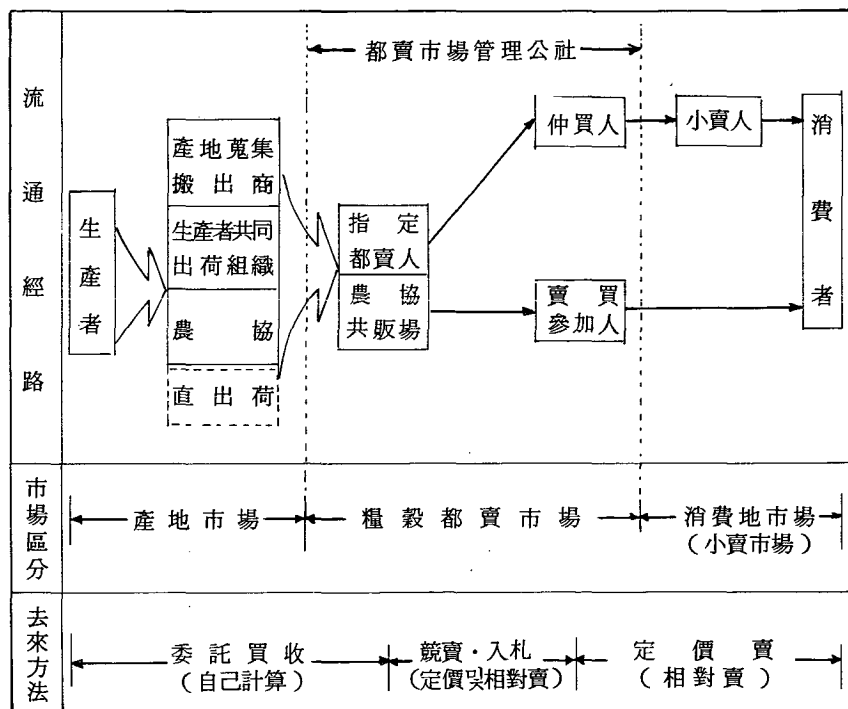
만약에 가락동 都賣市場內에 糧穀都賣市場이 新設된다면 <圖 6-1>에서 본 바와 같이 市場管理公社는 糧穀都賣市場의 管理運營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各 部類의 都賣市場은 指定都賣人이 出荷者로부터 農産物의 販賣를 委託받아 仲買人と 賣買參加人을 통하여 小賣人에게 販賣하게 된다. 즉,多數의 出荷者로부터 販賣委託를 받은 都賣會社와多數의 購買者(仲買人, 賣買參加人)간에 公開的, 統一的 運營原則을 바탕으로 去來가 行하여진다. 이같은 都賣市場의 機能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流通體制, 稅制, 金融 등 各種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2. 糧穀都賣市場의 運營主體 및 役割

먼저 糧穀都賣市場의 流通體系를 살펴 보면 <圖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指定都賣人은 糧穀을 蒐集하고 蒐集된 糧穀은 指定都賣人이 고용하고 있는 競賣士들에 의해 仲買人들에게 競賣를 통해서 分配되며, 仲買人들은 이 糧穀을 小賣人에게 定價販賣에 의해서 分配된다.

圖 6-2 糧穀都賣市場 流通體系圖



都賣市場의 運營主體라 함은 都賣市場에 있어 一切의 都賣機能을 遂行하는 機關으로서 指定都賣人, 仲買人, 賣買參加人, 競賣人 등이 包含된다. 본절에서는 이들의 機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指定都賣人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第 12 條 2 項에 의하면 都賣市場 開設者는 都賣市場에 指定都賣人을 두어 運營・管理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때 최종승인자는 農水産部長官이 된다.

糧穀都賣市場에 있어 指定都賣人은 販賣를 委託받은 糧穀에 대해 上場手 數料를 받고 競賣를 통하여 仲買人에게 販賣함으로써 公정한 價格形成과 需給調節機能을 遂行하는 機關이다. 즉 指定都賣人은 糧穀의 効率的인 出荷, 生産者와 消費者 쌍방이 납득하는 去來價格形成 및 신속한 代金決済 등 중추적인 都賣機能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指定都賣人은 都賣市場에 있어 가장 重要な 機能을 수행하는 機關이므로 指定都賣人에 대해서는 엄격한 資格條件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農安法 제 17 조에서는 指定都賣人은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이들이 法規와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市場管理公社는 항상 指導, 監督하여야 할 것이다.

나. 競賣士

指定都賣人은 農安法 第 26 條 1 項에 의거 競賣士를 두도록 되어 있다. 競賣士는 指定都賣人 會社에 소속되며, 都賣市場에 出荷된 上場物品의 品名, 產地, 等級 등을 소개하여 呼價를 物品의 需給에 부합되도록 競爭시킴으로써 公정한 價格이 形成되도록 競落者를 결정하는 重要な 機能을 수행한다. 따라서 競賣士는 農水産物の 需給狀況을 迅速히 판단할 수 있는 專門인 知識과 經驗은 물론 出荷者, 仲買人, 賣買參加人에게 信賴를 줄 수 있는 者이어야 할 것이다.

競賣士는 아래의 資格要件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의 施行令 第 19 條에 해당하는 자.

- 該當部類都賣市場에서 競賣士에 從事한 經歷이 있거나 補助業務에 1 年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

- 競賣士 教育過程을 履修한 者
 - 破産宣告를 받은 후 復權된 者
 - 禁錮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었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相當期間(3年)以上이 經過한 者
 - 承認이 取消된 날로부터 相當期間(2年)以上이 經過한 者
- 2) 仲買人, 賣買參加人 혹은 이들의 雇傭員이나 利用者가 아닌 者

다. 仲買人

仲買人은 指定都賣人으로부터 農水産物을 購入하여 市場內의 仲買市場에서 小賣商 또는 大量需要者에게 分配・販賣하는 市場內의 業者이다.

糧穀都賣市場의 仲買人은 同市場內의 指定都賣人에 의해 上場된 糧穀을 購買하여 小賣人들에게 分配하는 經營主體로서 仲買人은 指定都賣인과 더불어 價格形成에 직접 參與한다.

仲買人の 機能 중 重要な 것의 하나는 評價機能 즉 商品의 效率과 需給狀態를 신속히 파악하고 價格을 결정하는 機能이다. 특히 競賣人에 의한 價格決定은 빠른 時間內에 이루어지므로 많은 經驗이 要求된다.

賣買參加人은 都賣市場에서 仲買인과 같이 農産物을 정기적 또는 大量으로 購入하는 者로서 賣買參加인이 될 수 있는 者는 아래와 같다.¹⁾

- 1) 都賣市場 去來品目の 去來를 業으로 하는 者
- 2) 都賣市場 去來品目を 加工하거나 調理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삼는 자

- 3) 大量需要者로서 都賣市場 去來品目を 정기적으로 購入하는 者이다.

糧穀都賣市場에 있어서 賣買參加者는 수퍼, 체인스토어의 大型小賣業體, 糧穀을 조리하여 販賣하는 料食業體나 加工業體 그리고 構內食堂 등의 大量實需要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賣買參加者의 都賣市場參與는 중간 流通段階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들

1) 農安法 第24條 1項 및 同施行規則 第7條

의 市場參與은 적극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市場開設者는 賣買參加者에 대한 기준을 설정, 이 기준을 갖춘 자에 대하여 開設者로부터 賣買參加의 承認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都賣市場 去來의 參與度를 擴大함으로써 都賣市場機能을 活性化 하기 위해서는 賣買參加者에 대하여는 許可制보다 承認制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다양한 商品에 대하여 一律적으로 適用하는 데는 限界가 있으리라 보며 取扱品目の 部類에 따라 取扱規模와 信用狀態 등을 綜合적으로 고려하여 承認하여야 할 것이다.

3. 糧穀都賣市場의 入住業體 選定

本節에서는 糧穀都賣市場의 중추적인 役割을 하게 될 指定都賣人과 仲買人의 選定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指定都賣人

1) 基本方向

農水產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에 의하면 都賣市場을 開設한 者는 都賣市場에 指定都賣人을 두어 이를 運營・管理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指定都賣人數를 單數로 할 것인가 또는 複數로 할 것인가는 市場運營에 있어서 基本이 되는 課題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學界는 물론 關聯業界나 關聯機關에서 오래전부터 論議되어 온 바 있다. 指定都賣人의 數를 單數로 할 경우에는 蒐集能力이 強化되어 大量集中去來가 가능하며 건전한 財務構造의 維持가 가능하다는 등의 長點이 있으나 獨占의 가능성이 높아 自由競爭에 의한 公正去來가 어렵다는 短點이 있다.

한편, 多數의 指定都賣人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規模의 零細性과 蒐集能力의 分散 등으로 都賣會社의 財務構造가 惡化되어 도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都賣流通秩序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指定都賣人의 數는 對象商品의 流通實態, 既存市場組織, 商人의 意思, 會社의

規模 등 經濟社會的 要因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米穀은 主食으로서 國民經濟的 比重이 크기 때문에 商人의 獨占力 즉 市場操作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單數制 보다는 複數制가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商人組織으로서는 현재 서울市內 유일한 糧穀都賣市場인 서초동 糧穀都賣市場內의 委託仲介商組織인 韓國糧穀委託商協會를 우선적으로 法定都賣會社의 형태로 育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들 委託商들은 대부분 이 分野에 오랜 經驗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部 委託商은 상당한 資本能力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商人組織을 牽制하기 위한 方案으로서는 우선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既存 農協組織을 競爭的인 都賣會社形態로 育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農協共販場機能의 強化는 都賣市場育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農協의 系統出荷事業育成을 통하여 農協組織의 活性化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糧穀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數는 최소한 2인이 되어야 하며 適正指定都賣人數는 都賣市場의 豫想搬入量, 手數料率 및 運營費 등 諸要因을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2) 資格要件

農安法 第 17 條에서는 指定都賣人은 法人이어야 하며, 指定都賣人의 資格要件과 그 指針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農安法 施行令 第 16 條에서는 指定都賣人의 資格要件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法人

- 法 第 21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基準以上の 保證金과 運轉資金을 自己資金으로 確保하고 있을 것 (保證金 : 1 日 平均 豫想去來金額의 20 % 以上, 運轉資金 : 年間去來額의 1 % 以上)

- 該當部類의 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를 效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知識과 經驗이 있는 業務執行擔當任員이 2 人以上 있을 것.

- 任員중 禁錮以上の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었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않은 者가 없을 것.

-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가 없을 것
- 任員중 그 都賣市場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을 하는 者가 없을 것
- 任員중 法 第 63 條 第 2 項 後端의 規定에 의한 指定都賣人 指定承認(取消 또는 開設許可取消處分)의 原因이 되는 事項에 關聯된 者가 없을 것

② 指定都賣人이 第 1 項 第 1 號 및 第 2 號의 要件에 結하게 된 때에는 3 個月內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指定都賣인은 그 任員이 第 1 項 第 3 號 내지 第 6 號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該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해야 한다.

위의 資格要件은 糧穀都賣市場의 指定都賣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指定都賣人の 資格要件으로서 아래의 事項이 追加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 ① 糧穀 및 이와 類似한 商品의 流通活動에 經驗이 있는 法人
- ② 購買者와 出荷者 쌍방의 납득이 가는 公正한 業務를 精確하게 수행하기 위한 組織과 經驗이 있는 法人
- ③ 構成員은 仲買人 또는 賣買參加人이나 이들의 僱傭人이 아닌 者

3) 指定都賣人數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糧穀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數는 單數 보다는 複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러나 問題는 구체적으로 指定都賣人數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 경우 都賣市場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는 우리의 主要 관심사라 하겠다.

따라서 本分析에서는 適正指定人數를 결정하는데 參考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水準과 都賣市場上場 手數料水準別로 指定都賣人の 上場料 收入에서 運營費를 제외한 純收入을 概略的으로 推定하여 보고자 한다.

本分析에서는 糧穀都賣市場의 쌀搬入量 水準을 4個水準으로 設定하였다.

즉, 서울시 總쌀消費量중 都賣市場 搬入量이 차지하는 比率이 7%, 10%, 20%, 30%인 4個水準을 擇하였다.

1983년에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 搬入된 쌀이 서울시의 전체 쌀消費量에 占하는 比率이 약 7%이었으므로 이 수준을 最低水準으로 하여 搬入量增加에 따른 效果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의의 3個水準을 추가하였다.

한편 指定都賣人의 上場手數料率은 0.7%, 1%와 2%의 3個水準을 設定하였는데 이는 현재 서초동 糧穀委託商手數料率을 기준으로 設定하였다. 현재 서초동 委託商의 手數料는 1畝당 800 원으로 이는 1983년도 서울시 年平均 都賣價格인 가마당 61,078 원의 1.3%에 해당된다. 만약에 新糧穀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 手數料率과 仲買人의 手數料率을 현재 委託商 手數料率 水準 1.3%로 하려면 指定都賣人의 手數料率은 이의 절반인 0.7%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0.7%를 下限으로 하여 1%, 2%의 수준을 設定하였다(農安法 施行規則 第12條에 의하면, 法定手數料率의 最高限度는 2%임).

表 6 - 1 代案別 指定都賣人의 年間 經營收支 推定 結果

單位: 千원

都賣市場經由比率 (年間經由量)	上 場 手數料率	粗 收 益	運 營 費	純 收 益	純收益率 ¹⁾
	(%)				(%)
7 % (966,875 畝) ²⁾	0.7	413,384	552,992	△139,608	△33.8
	1	590,548	596,574	△6,026	△1.0
	2	1,181,096	741,848	439,248	37.2
10 % (1,381,250 畝)	0.7	590,548	596,574	△6,026	△1.0
	1	843,640	658,834	184,806	21.9
	2	1,687,280	866,370	820,910	48.7
20 % (2,762,500 畝)	0.7	1,181,096	741,848	439,248	37.2
	1	1,687,280	866,370	820,910	48.7
	2	3,374,560	1,281,441	2,093,119	62.0
30 % (4,143,750 畝)	0.7	1,771,644	887,124	884,520	49.9
	1	2,530,920	1,073,905	1,457,015	57.6
	2	5,061,839	1,696,512	3,365,327	66.5

1) 純收益 / 粗收益

2) 1983 年 서울시 쌀소비량 기준

이와 같이 設定된 12個代案에 대하여 推定된 指定都賣人의 上場手數料收入은 <表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搬入量과 上場手數料率에 따라 最低 4억 1천만원에서 最高 50억 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推定된다. 즉, 糧穀都賣市場의 糧穀搬入量比率이 현재의 수준인 7%이고 上場手數料率이 0.7%일 경우에 指定都賣人의 年間 手數料收入은 약 4억 1천만원, 1%일 경우에는 5억 9천만원으로 推定되며,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比率이 30%로 증가한다고 본다면 上場手數料率이 0.7%일 경우에 약 18억원, 1%일 경우에는 25억원이나 될 것으로 推定된다.

糧穀都賣市場에 있어 指定都賣人의 經營收支를 살펴 보려면 糧穀都賣市場의 運營費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다. 그러나 都賣會社의 運營費는 市場의 規模, 取扱物量, 立地條件 등 여러 要因에 의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사실상 推定이 곤란하다. 더우기 앞으로 建設豫定인 糧穀都賣市場과 規模가 비슷한 糧穀都賣市場도 현재 存在하지 않으므로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本 分析에서 糧穀都賣市場 運營費중 市場使用料, 集荷獎勵金 등의 費用은 아래와 같이 직접 推定하였다. 즉 <表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市場使用料는 上場手數料의 9.6%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荷置場賃借料가 가마당 77원으로 委託手數料收入(가마당 800원)에 접하는 比率을 적용한 것이다. 이 比率은 靑果物都賣市場의 上場手數料收入에 대한 支給賃借料比率 7%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集荷獎勵金은 서울特別市 農水產物都賣市場 條例 第3條 2項의 規定에 의거 委託上場手數料收入의 $\frac{150}{1,000}$ 을 적용하였다. 이 規定에 의하면 都賣市場의 건전한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出荷者 또는 仲買人에게 委託上場手數料 收入의 $\frac{150}{1,000}$ 범위內에서 獎勵金を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人件費, 여비교통비, 通信費, 水道光熱費, 消耗品費, 車輛費, 支給手數料, 保險料 등의 費目은 靑果物市場의 1982년도 損益計算書의 資料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982년도 靑果物都賣市場의 人員은 57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앞으로 建設豫定인 糧穀都賣市場을 운영하려면 人員이 64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分野 專門家の 견해이다. 이와 같이 人員數가 비슷하다면 人件

表 6 - 2 指定都賣人の年間 運營費用 推定內譯

費 目		金 額	備 考
固 定 費 用	人 件 費	(千圓) 323,084	固定費用은 서울靑果株式會社の 1982 년도 運營費用임.
	旅 費 交 通 費	18,519	
	通 信 費	25,604	
	水 道 光 熱 費	18,251	
	消 耗 品 費	4,621	
	車 輛 經 費	35,840	
	支 給 手 數 料	14,647	
	保 險 料	10,733	
	小 計	451,299	
流 動 費 用 ¹⁾	市 場 使 用 料 ²⁾	56,693	委託上場手數料收入의 96/1,000
	集 荷 獎 勵 金	88,582	委託上場手數料收入의 150/1,000
	小 計	145,275	
總 計		596,574	

1) 都賣市場經由率 7%, 上場手數料率 1%의 경우임.

2)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委託手數料收入 (800 원/㏖)에 대한 하치장 임차료 (77 원/㏖)比率 9.6% 적용

費의 경우 靑果物都賣市場의 資料를 사용하는 데는 별로 問題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消耗品費, 車輛費, 支給手數料 및 保險料의 경우 靑果物都賣市場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限界가 있으나 이들 費目이 總運營費에 차지하는 比重이 약 20%로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전체 運營費推定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리라 생각된다. 이밖에 接待費, 雜費, 修理費 등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들 費目은 매우 可變的이고 推定이 어려운 관계로 本 分析에서는 제외시켰다. 또한, 指定都賣人の 手數料收入에 대해서는 附加價值稅가 없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이와 같은 假定下에서 推定된 糧穀都賣會社의 運營費는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比率이 7%이고 上場手數料率 (去來金額에 대한 比率)이 0.7%일 경우 약 5억 5천만원으로 推定된다 <表 6 - 1 참조>. 糧穀都賣市場의

運營費는 都賣市場의 去來物量과 上場手數料率에 따라 약 5.5 ~ 17.0억원이 될 것으로 계산되었다 <表 6-1>. 都賣市場의 運營費는 都賣市場의 搬入量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며, 이는 去來量에 따라 流通費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上場手數料率이 높을수록 都賣市場의 運營費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市場使用料, 集荷獎勵金 등이 去來金額의 一定率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比率이 서울시 糶消費量의 7% (1984년 현재 수준)일 경우 糧穀都賣市場의 運營費는 上場手數料率에 따라 약 5.5 ~ 7.4억원이 될 것으로 計算되었다. 만약에 都賣市場의 搬入量の 비율이 10%로 증가한다면 糧穀都賣市場의 運營費는 市場使用料, 集荷獎勵金 등의 증가에 의하여 上場手數料率에 따라 약 6.0 ~ 8.7억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上記 2個費用을 제외한 모든 費用은 取扱物量에 따라 변하지 않는 固定費로 가정하였다.

앞에서 推定된 糧穀都賣市場의 手數料 收入에서 上記費用을 뺀 純收入의 結果는 <表 6-1>과 같다. 즉,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現在水準 (서울市 消費量の 7%)에 머문다면 上場手數料率이 0.7%일 경우에 약 1억 4천만원의 赤字가 발생하며, 上場手數料率이 2%로 대폭 인상된다면 純收益이 약 4억 4천만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즉,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現水準 (7%)일 경우 현재의 上場手數料 水準下에서 糧穀都賣市場의 經營收支는 赤字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分析結果는 한 指定都賣人이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을 全量 取扱한 경우이며, 이 物量이 指定都賣人과 農協간에 配分되어야 하기 때문에 指定都賣人の 經營收支는 더욱 惡化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이 現水準을 유지한다면 都賣市場上場手數料率을 대폭 올리지 않는 限, 指定都賣人の 運營은 상당히 制約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指定都賣人の 取扱物量이 서울시 消費量の 20%이고 上場手數料率이 0.7%일 경우 糧穀都賣市場의 純收益은 약 4억원이 될 것으로 推定되며, 이 경우 指定都賣人の 經營收支는 비교적 良好하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指定都賣人과 農協의 取扱比率이 50:50 으로 볼 경우 指定都賣人の 年間 純收益이 약 2 억원 정도가 되려면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은 서울시 全體 糶消費量의 20 %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糧穀都賣市場에 있어 指定都賣人 2 人(指定都賣人 1 人和 農協)을 두려면 經營收支面에서 볼 때 糧穀都賣市場의 糶搬入量比率은 최소한 20 %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糧穀都賣市場의 糶搬入量比率이 30 %로 증가된다면 都賣人の 數를 3 人정도로 增加시켜도 運營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搬入物量이 7%밖에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糧穀都賣市場을 設立한다고 하여 都賣市場의 糶搬入量比率이 30 %로 급격히 증가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現段階로서는 指定都賣人 1 人和 農協의 複數制를 우선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指定都賣人數를 늘리는 문제는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 推移를 보아 추후에 檢討되어야 할 課題라 생각된다.

또한, 糧穀都賣市場의 正常的인 運營을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의 糧穀搬入量 比率이 적어도 20 %정도(현재의 약 2 배)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糧穀都賣市場의 효율적인 物量確保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나. 仲 買 人

1) 基本方向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令 23 條에 따라 都賣市場에서는 仲買人の 商活動이 허용되어 있다. 仲買人은 都賣市場에서 評價 및 決定機能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원만하고 能率의인 去來를 도모하고 危險負擔을 最少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仲買人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關係分野에서 多年間 經驗이 있는 者를 대상으로 選別的으로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는 138 명의 委託商이 委託業을 수행하고 있

을 뿐 仲買人은 없으며, 競賣도 實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委託商의 大部分은 糧穀流通業에 오랜 기간동안 從事한 경험이 있으므로 仲買人 選定の 對象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서울시內 各市場에서 糧穀都賣業에 多年間 종사한 經驗이 있는 者도 仲買人 對象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仲買人의 選定은 資格要件을 갖춘 者중에서 去來實績과 納稅實績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仲買人의 適正去來規模를 維持하기 위하여 仲買人의 數는 糧穀都賣市場의 去來物量에 따라 彈力的으로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2) 資格要件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第23條와 同 施行令 第18條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그 基準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法律 第23條(仲買業의 許可)

- 都賣市場에서는 部類別로 開設者의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農水產物의 仲買業을 하지 못한다.

- 第1項의 許可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買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賣買參加人의 去來參加를 방해하는 行爲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施行令 第18條(仲買業의 許可基準)

-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基準以上の 保證金(100만원)을 納付할 수 있거나 擔保를 提供할 수 있는 者

- 다음에 해당하는 者는 仲買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않은 者

- 仲買業의 許可가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위의 資格要件에 아래의 條件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 申請者가 指定都賣會社의 構成員이 아닌 者

- 仲買業을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풍부한 知識, 經驗, 資本力

및 信用을 保有한 者

○ 現行 糧穀管理法 第 15 條의 3에 의거 糧穀賣買仲介業 또는 都賣業許可를 받아 一定期間 以上 許可業種에 從事한 者

3) 仲買人數

앞에서 仲買人의 選定基準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특히, 糧穀都賣市場의 糶搬入量이 상당히 制約되어 있으므로 仲買人의 적정한 收益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仲買人의 適正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仲買人數가 去來物量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去來規模가 零細하게 되어 流通의 効率化를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仲買人의 適正收益이 保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商行爲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糧穀都賣市場에서 仲買業에 從事하게 될 適正仲買人數는 糧穀都賣市場의 去來物量과 仲買人의 仲買手數料率, 去來能力 및 適正收益 등을 綜合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本分析에서는 糧穀都賣市場의 仲買人數를 결정하는데 參考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주어진 都賣市場의 搬入量과 仲買人의 手數料 水準下에서 仲買人의 一定所得을 보장하기 위한 仲買人의 去來物量과 適正數를 計算하여 보았다.

本分析에서 糧穀都賣市場의 搬入比率는 7%, 10%, 20%, 30%의 4個水準, 仲買手數料率은 0.7%, 1%, 2%의 3個水準 그리고 仲買人의 月평균 純收益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의 3個水準을 택하였다. 이로부터 형성되는 36個의 代案에 대한 仲買人當 去來物量과 仲買人의 適正數의 結果를 요약하면 <表 6-3>과 같다. 여기서 適正仲買人數는 주어진 條件下에서 一定所得水準을 保障하기 위한 仲買人數를 의미한다.

仲買人의 所得을 推定하기 위해서는 仲買人의 去來物量, 手數料率 및 運營費의 資料가 필요하다. 本分析에서 仲買人의 運營費는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에서 營業을 하고 있는 委託商 3명의 調査結果를 인용하였다.

현재 서울시 糧穀都賣市場에는 엄밀한 의미의 仲買人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仲賣人과 機能面에서나 去來規模面에서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 委

託商의 運營費를 택하였다.

表 6 - 3 代案別 仲買人の 適正取扱物量 및 適正數 推定結果

單位 : 噸, 명

都 賣 市 場 經 由 比 率 (年間搬入量)	仲 買 手數料率	仲 買 人 月 平 均 純 收 益 水 準 別					
		50 萬 圓		100 萬 圓		150 萬 圓	
		¹⁾ 取扱物量	仲買人數	¹⁾ 取扱物量	仲買人數	¹⁾ 取扱物量	仲買人數
7 % (966,875噸)	0.7 %	45,787	21	81,386	11	116,985	8
	1 %	21,938	44	38,994	24	56,050	17
	2 %	8,017	120	14,251	67	20,484	47
10 % (1,381,250噸)	0.7 %	45,787	30	81,386	16	116,985	11
	1 %	21,938	62	38,994	35	56,050	24
	2 %	8,017	172	14,251	96	20,484	67
20 % (2,762,500噸)	0.7 %	45,787	60	81,386	33	116,985	23
	1 %	21,938	125	38,994	70	56,050	49
	2 %	8,017	344	14,251	193	20,484	134
30 % (4,143,750噸)	0.7 %	45,787	90	81,386	50	116,985	35
	1 %	21,938	188	38,994	106	56,050	73
	2 %	8,017	516	14,251	290	20,484	202

1)年間 取扱物量임.

2) 1983 年 서울시 娯소비량 기준

本委託商調査 結果에 의하면 <表 6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委託商의 月平均 取扱物量은 912 가마로 나타났고, 이에 委託手數料 800원을 적용하면 委託商의 月粗收入은 729,600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委託商의 月平均 運營費는 379,334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費目別로 보면 下車費 100,293원(26.4 %)과 荷置場使用料가 70,205원(18.5 %), 事務室賃借料가 67,667 원(17.8%)으로 이 3 個費目이 全體 運營費의 62.8 %를 점하였다. 이 委託商의 運營費중 固定費는 143,106 원으로 全體 運營費의 37.7 %를 점하며, 나머지 62.3 %는 하차비, 하차장사용료 등 流動費로 조사되었다<表 6 - 4>.

上記 36 個代案에 대한 適正仲買人數를 계산하려면 우선 特定所得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去來物量を 알아야 하며 이는 아래의 式으로부터

表 6 - 4 瑞草洞 糧穀都賣市場의 委託商 經營收支 分析 結果(月間)

項 目		金 額	備 考
粗 收 入		(千 元) 729,600	月平均去來物量 : 912 噸
運 營 費 用	사 무 실 임 차 료	67,667	月坪當임차료 : 9,667 원
	固 定 기 료	4,603	
	전 화 료	39,579	
	상 · 하 수도 료	14,313	
	연 료 비	16,944	
	小 計	143,106	
	하 치 장 사 용 료	70,205	77 원 / 噸
	협 회 비	36,470	40 원 / 噸
	하 차 비	100,293	110 원 / 噸
	검 근 료	6,382	7 원 / 噸
營 費 用	경 비 료	2,735	去來物量 × 0.5 × 6 원 / 噸
	부 가 가 치 세	15,945	去來物量 × 0.035 × 500 원 / 噸
	소 득 세	3,816	(去來物量 × 0.315 × 500 원 / 噸 - 기초공제액) × 0.06
	방 위 세	382	所得稅 × 0.1
	小 計	236,228	
計		379,334	
純 收 入		350,266	

1) 서초동 糧穀都賣市場內의 3 個 委託商의 平均經營收支임.

計算될 수 있다.

$$Q = \frac{Y + \bar{C}_1}{P \cdot r - \bar{C}_2}$$

여기서

Q : 仲買人 1 人當 特定所得을 얻기 위한 年間 取扱物量 (가마)

Y : 仲買人當 年間純收益

P : 가마당 쌀價格 ('83 年 서울시 年平均 中品 가마당 都賣價格 61,078 원 기준)

r : 仲買手數料率

$\bar{C}_1$: 仲買人當 年間 固定費 (1,717,272 원)

$\bar{C}_2$: 仲買人當 噸當 流動費用 (259 원)

위 式에서 Q 를 計算한 후 都賣市場 搬入量을 Q 로 나누면 適正仲買人數가 計算된다. 이와 같이 計算된 代案別 仲買人當 取扱物量과 適正仲買人數를 要約하면 <表 6-3>과 같다.

糧穀都賣市場의 搬入比率이 7%이고 仲買人의 手數料가 0.7%(현재 서초동 委託商 手數料 1.3%의 $\frac{1}{2}$ 수준)일 경우 仲買人의 月純收益을 100만원정도 保障하려면 仲買人의 數는 11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경우 仲買人數가 11명이상이 된다면 仲買人의 月純收益은 100만원이하로 下落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比率이 7%일 경우 仲買人의 數를 11명 이상 確保하면서 月純收益 100만원을 保障하려면 仲買人 手數料率을 0.7%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한편,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30%로 증가한다면 仲買手數料率이 0.7%일 경우 仲買人의 數는 50명이 되어도 仲買人의 月純收益은 100만원이 된다는 計算이 된다. 따라서 仲買人의 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搬入量이 적을 때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초동 糧穀都賣市場의 搬入量이 서울시 米穀流通量の 약 7%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仲買人數는 都賣市場開設 初期에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都賣市場의 搬入量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아 段階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상 주어진 條件下에서 仲買人의 一定所得을 保障하기 위한 仲買人數를 推定하여 보았었다. 仲買人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商人이므로 이들의 所得水準은 仲買人의 數를 決定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仲買人數는 仲買人의 所得水準은 물론 仲買人의 去來能力 등을 綜合적으로 考慮하여 都賣市場의 價格 및 需給調節機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成勳, “流通構造 및 政策의 變遷,” 「韓國農業의 近代化過程」,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叢書 3, 1980.10.
- 農協中央會調查部, IMF 合同市場調查團, 「米穀마켓팅 調查報告書」, 韓美市場資料 - II, 1968.
- 農協中央會, 「米穀마켓팅 實態調查報告書」, 1978.
- 大韓商工會議所, 「流通關係法令集」, 1982.
- 民正黨中央委員會, 「糧穀流通近代化方案」, 1984.
- 法典出版社, 「稅法通覽」, 1981.1.
- 서울特別市, 「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基本計劃, 基本設計」, 1980.9.
- 成培永, 金正堪, 「農水產物流通關聯租稅制度研究」, 研究報告 2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9.
- 成培永外, 「서울市地域 農水產物都賣市場活動과 流通改善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 鄭燦吉外, 「可樂洞農水產物綜合都賣市場運營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10.
- 朱龍宰, 劉南植, 尹錫元外, 「米穀流通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2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12.
- 朱龍宰, 金辰洙外, 「長期食糧需給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 韓國貿易協會, 「附加價值稅法解說」무역실무가이드 제 20 집, 1981.10.
- 韓國產業經濟研究院, 「糧穀流通市場育成方案研究」, 政策研究第 10 號, 1981.12.

Edward V.Jesse,Aaron C.Johnson and Allen B.Paul , “ User Fees, De-regulation, and Marketing Efficiency,” A. J. A. E. Vol.64, No.5. 1982.12.

Gail,L,Cramer,Walter G.Heid,Jr.Ed,Grain Marketing Economics, John Willey & Sons,1983.

M.Hüttner, Grundzüge der Marktforschung,Wiesbaden, 1977.

R.Plate, Agrarmarktpolitik,Bd,2. BLV-München.1970.

Nieschlag, Dichtl,Hörschgen, Marketing,Berlin,1981.

빈

면

서울市米穀流通改善方案

1984년 11월 3일 발행

발행인 金 榮 鎭

발행처 韓國農村經濟研究院

①③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 - 102

등록 1979년 5월25일 제 5 - 10호

전화 962 - 7312 ~ 5

인쇄처 株式會社 文 苑 社